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분석과 정책방향

2014. 12.

박명호 · 정재호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 언

최근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 이에 따른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통일에 따른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세수확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은 국내외 자본의 유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협소한 과세기반으로 인한 특정 계층의 세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경제학적 경험을 볼 때,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매우 어렵지만, 학문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세부담의 추이 분석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면세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면세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가 부가가치세의 부담 및 평균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이상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분석은 명목세율이 아닌 1990년 이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출된 유효 부가가치세율을 기준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유효 세부담 실태 및 그 변화 추이는 향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개선, 인구 고령화 관련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박명호 연구위원과 정재호 선임연구위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작성되었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중간 보고 세미나에서 많은 도움 말씀을 주신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 홍익대학교 성명재 교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최종 보고 세미나에서 도움을 주신 서강대학교 곽태원 교수, 홍익대학교 김유

찬 교수, 가천대학교 윤태화 교수, 원내 동료 박사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또한 최종단계에서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도 함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 단계별로 저자들을 도와준 조재현 연구원, 김평강 연구원, 안승연 연구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고서 제작에 애쓴 본원 출판팀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요약 및 정책시사점

최근 복지재정 수요의 급증과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비과세·감면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대와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다른 세목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인 조세경쟁 아래에서 국내외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소득세는 과세기반이 협소하여 충분한 세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층에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과세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통일이라는 잠재적인 재정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북한 경제의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남북통일은 막대한 재정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파급효과는 상당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통한 준비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부가가치세율 인상 논의 시 반드시 언급되는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는 그 실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세부담의 역진적인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사전에 모색해 놓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실태와 그 변화요인을 유효 부가가치세율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부 산업부문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를 통해 추정하고, 그 결과를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구조, 산업구조 및 소비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기본분류 기준 투입산출표가 발표되는 연도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유효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분석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현행 면세제도 중 비중이 큰 4가지 면세 유형(미가공식료품, 교육용역, 의료 · 보건용역, 금융 · 보험용역)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후 부가가치세 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분석할 때 왜 유효세율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를 예제를 통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재분배 등 경제적 · 사회적 정책목적으로 인해 특정 경제활동 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면세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누적효과와 환수효과가 함께 발생하여 모든 거래가 정상 과세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면세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세부담 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목세율이 아닌 유효세율을 통해 세부담을 산출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를 활용하는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세율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연관표상 산업구분이 가장 세세한 기본부문을 대상으로 유효세율을 산출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동 방법론의 한계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을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

사의 소비지출 항목들과 산업연관표상의 기본부문을 연계하여 각 품목별 유효세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산출한 유효세율을 각 가구의 소비항목별 지출액에 적용하여 소비항목별 유효 세부담을 도출한 후 모든 소비항목에 대하여 합산함으로써 가구별 유효 세부담을 추산하였다. 이런 작업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및 2012년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추이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를 분석한 결과, 세부담의 역진성은 경제적 능력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능력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은 낮은 소득분위에서 높고, 높은 소득분위에서 낮은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세부담 비율을 과세베이스에 해당하는 소비지출 대비로 산출하면 이러한 역진적인 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소득구간에서는 누진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능력을 소비를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세부담의 역진적인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에서도 드러났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논쟁은 경제적 능력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소비 모두 경제적 능력의 대리변수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세부담의 분포를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소득 1분위에 속한 고령가구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간 소득보다는 소비가 생애주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향후 특정 시점에서의 경제적 능력 및 생활수준을 더욱 잘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유효 세부담 분포는 특정 연도에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석 기간에 걸쳐 관찰되었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모든 소득분위 및 소비분위에서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의 명목세율이 10%로 고정되어 왔고, 면세제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비중이 낮아지는 전반적인 소비구조 변화와 더불어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고령가구 비중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고령가구의 비중이 저소득 및 저소비 분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옴에 따라 저분위의 유효 세부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소득 및 소비 1분위에서 소득 대비 유효 세부담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은 낮지만 평균소비성향은 높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면세유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바 미가공식료품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는 세부담 비율뿐만 아니라 세부담 경감 규모 측면에서도 저소득 및 저소비 계층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교육용역이나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 허용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교육용역의 경우 소득분위 및 소비분위가 올라갈수록 세부담 경감액 규모는 커지면서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액 비율의 감소폭도 대체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면세제도를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정비해 나간다면 미가공식료품이나 의료·보건용역보다는 교육용역이나 금융·보험용역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세수증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금융·보험용역보다는 교육용역의 정상 과세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ONTENTS

목 차

Ⅰ. 서 론 ····· 15

Ⅱ. 부가가치세 현황 및 면세제도 ····· 20

1. 부가가치세제 현황 ····· 20

가. 부가가치세제 개요 ····· 20

나. 부가가치세 수입 ····· 21

2. 부가가치세 면세 ····· 24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 24

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면세 ····· 27

다. 부가가치세 면세 변천 ····· 29

Ⅲ.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이 분석 ····· 33

1. 유효세율 분석의 필요성 ····· 33

2. 유효세율 산출 방법론 ····· 41

가.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과면세 구분 ····· 41

나. 유효세율 산출 방법론 ····· 42

3. 유효세율 추이 분석 ····· 47

가. 2012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 47

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이 분석 ····· 50

Ⅳ.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석 ····· 58

1. 분석 자료 ····· 58

2. 유효 세부담 산출 방법 ····· 64

CONTENTS

3. 유효 세부담 분석 결과 ····· 65
가. 소득계층별 및 소비계층별 유효 세부담 추이 분석 ····· 65
나. 유효 세부담 변화요인 분석 ····· 89
다. 주요 면세유형의 유효 세부담 및 과세전환 효과 분석 ····· 94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 111

참고문헌 ····· 115

부 록

1. 산업연관표 기본부문별 유효 부가가치세율 ····· 117
2.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별 유효 부가가치세율 ····· 157

표목차

〈표 Ⅱ-1〉 부가가치세 수입 추이 ····· 22
〈표 Ⅱ-2〉 부가가치세 세수입 ····· 23
〈표 Ⅱ-3〉 부가가치세 과면세 변화 내역 ····· 29

〈표 Ⅲ-1〉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간의 괴리 예제 ····· 39
〈표 Ⅲ-2〉 2012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 49
〈표 Ⅲ-3〉 2000년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 ····· 52
〈표 Ⅲ-4〉 1990~2012년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 ····· 54
〈표 Ⅲ-5〉 2000년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 ····· 56

〈표 Ⅳ-1〉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수입 분류 ····· 60
〈표 Ⅳ-2〉 가계동향조사 가구 지출 분류 ····· 61
〈표 Ⅳ-3〉 가계동향조사 가구의 요약 통계량 ····· 63
〈표 Ⅳ-4〉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2년 ····· 72
〈표 Ⅳ-5〉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0년 ····· 73
〈표 Ⅳ-6〉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05년 ····· 74
〈표 Ⅳ-7〉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00년 ····· 75
〈표 Ⅳ-8〉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1995년 ····· 76
〈표 Ⅳ-9〉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1990년 ····· 77
〈표 Ⅳ-10〉 소비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2년 ····· 81
〈표 Ⅳ-11〉 소비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0년 ····· 82
〈표 Ⅳ-12〉 소비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05년 ····· 83
〈표 Ⅳ-13〉 소비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00년 ····· 84

CONTENTS

〈표 Ⅳ-14〉 소비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1995년 ····· 85
〈표 Ⅳ-15〉 소비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1990년 ····· 86
〈표 Ⅳ-16〉 고령가구와 비고령가구의 평균소비성향 비교 ····· 92
〈표 Ⅳ-17〉 면세 재화 및 용역의 소비비중: 고령가구 대 비고령가구 ····· 93
〈표 Ⅳ-18〉 주요 면세유형의 과세전환에 따른 세수효과 ····· 110

〈부표 1〉 기본부문별 유효 부가가치세율(2010~2012년, 384개) ····· 117
〈부표 2〉 기본부문별 유효 부가가치세율(2005~2009년, 404개) ····· 128
〈부표 3〉 기본부문별 유효 부가가치세율(2000년, 2003년, 404개) ····· 139
〈부표 4〉 기본부문별 유효 부가가치세율(1995년, 1998년, 402개) ····· 145
〈부표 5〉 기본부문별 유효 부가가치세율(1990년, 405개) ····· 151
〈부표 6〉 소비지출 항목별 유효 부가가치세율 추이 ····· 157

그림목차

[그림 Ⅱ-1] 부가가치세 수입 추이 ····· 22

[그림 Ⅳ-1] 소득분위별 고령가구의 비중 추이 ····· 67
[그림 Ⅳ-2] 소비분위별 고령가구의 비중 추이 ····· 67
[그림 Ⅳ-3]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2년 ····· 72
[그림 Ⅳ-4]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0년 ····· 73
[그림 Ⅳ-5]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05년 ····· 74
[그림 Ⅳ-6]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00년 ····· 75
[그림 Ⅳ-7]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1995년 ····· 76
[그림 Ⅳ-8]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1990년 ····· 77
[그림 Ⅳ-9]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 추이 ····· 78
[그림 Ⅳ-10] 소득분위별 소비 대비 세부담 비율 추이 ····· 78
[그림 Ⅳ-11] 소비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2년 ····· 80
[그림 Ⅳ-12] 소비지출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0년 ····· 82
[그림 Ⅳ-13] 소비지출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05년 ····· 83
[그림 Ⅳ-14] 소비지출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00년 ····· 84
[그림 Ⅳ-15] 소비지출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1995년 ····· 85
[그림 Ⅳ-16] 소비지출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1990년 ····· 86
[그림 Ⅳ-17] 소비분위별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 추이 ····· 87
[그림 Ⅳ-18] 소비분위별 소비 대비 세부담 비율 추이 ····· 87
[그림 Ⅳ-19] 미가공식료품의 면세효과 ····· 98
[그림 Ⅳ-20] 교육용역 면세효과 ····· 101
[그림 Ⅳ-21] 금융 · 보험용역의 면세효과 ····· 104
[그림 Ⅳ-22] 의료 · 보건용역의 면세효과 ····· 107

Ⅰ. 서 론

최근 복지재정 수요의 급증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비과세·감면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대와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새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논쟁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 다른 세목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조달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인 조세경쟁 아래에서 국내외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소득세는 과세기반이 협소하여 충분한 세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층에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과세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통일이라는 잠재적인 재정위험에 대한 하나의 대응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북한 경제의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남북통일은 막대한 재정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파급력 때문에 현시점에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보일지 모르지만, 향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논문을 통한 준비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부가가치세율 인상 논의 시 반드시 언급되는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는 그 실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세부담의 역

진적인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사전에 모색해 놓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부가가치세 부담분포를 분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연구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운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호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실태와 그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부 산업부문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를 통해 추정하고, 그 결과를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 추이를 추정하고자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업구조 및 소비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기본분류 기준 투입산출표가 발표되는 연도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효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분석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서 현행 면세제도 중 비중이 큰 4가지 면세유형(미가공식료품, 교육용역, 의료 · 보건용역, 금융 · 보험용역)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후 부가가치세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논문으로는 우선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에 대해 박명호(2008), 김유찬(2013), 성명재(2013) 등이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제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다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성명재 · 박명호 · 이성식 · 박종수(2012), 홍성훈 · 성명재(2013) 등의 논문이 있다. 박명호(2008)[1]에서는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사이의 부가가치세 부담결과가 상이함을 제시하면서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목세율이 아닌 유효세율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김유찬(2013)[2]에서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유효 부가

1) 박명호(2008) pp. 64~65를 참조함.

2) 김유찬(2013) pp. 200~201을 참조함.

가치세율을 추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와 독일은 공통적으로 면세 해당품목들의 유효 부가가치세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감세율 적용품목은 유효세율과 명목세율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품목들의 유효세율이 추후에 본 연구에서 제시할 유효세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인해 김유찬(2013)[3]에서는 면세로 인한 간접효과, 즉 누적 및 환수 등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면세제도로 인해 부가가치세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재(2013)[4]는 부가가치세율의 부문별 실효세율과 면세의 누적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에서는 2009년도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여 실질 세부담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면세품목들을 분석하였으며, 지니계수 등의 분석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출판, 교육용역, 의료용역 등을 과세로 전환하면 세수증대와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성명재(2013)에서는 2009년에 한해서만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분석하여 장기간의 시계열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과 연관성이 높은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관련해서 성명재 · 박명호 · 이성식 · 박종수(2012)[5]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주요 쟁점들, 예를 들면, 면세 및 영세율의 범위, 중고품 등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연결 부가가치세제도, 신탁거래 관련 과세제도 등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홍성훈 · 성명재(2013)[6]에서는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인상 배경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면세 범위 비교, 명목세율을 이용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부담분석 및 면세 범위 조정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1990년부터 2012년까지 20여 년 동안의

3) 김유찬(2013) pp. 200~201을 참조함.

4) 성명재(2013), p. 214를 참조함.

5) 명재 · 박명호 · 이성식 · 박종수(2012), pp. 1~5를 참조함.

6) 홍성훈 · 성명재(2013) pp. 15~18을 참조함.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세부담 추이와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산업연관표의 가장 세부 분류인 기본분류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산출하고, 이를 가지고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에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논의하는 한편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소비지출 분위별 부가가치세 세부담도 함께 분석하여 이러한 기준 변화가 세부담 추이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세부담을 논의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단기 변동성이 상당한 소득보다는 소비지출을 통해 세부담을 보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두 기준을 모두 분석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현황을 요약하며 유효세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 그리고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인 면세제도의 변화 추이 등에 대해 기술한다. 제Ⅲ장에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본분류 기준에 따라 연도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산출한다. 199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관표 자료를 발표한 모든 연도에 대해 유효세율을 분석한다. 유효세율 분석에 앞서 Gottfried and Wiegard(1991)[7]가 제시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산출방법론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산업연관표 기본분류 기준 산업부문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산출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제Ⅳ장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유효세율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추이 및 변화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연관표의 산업부문과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을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별 소비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을 산출하고 소득계층별 및 소비계층

7) Gottfried and Wiegard(1991) pp. 309~313을 참조함.

별로 분석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 유형별로 소득계층별 및 소비계층별 유효 세부담도 분석한다. 또한 시간에 걸친 소비패턴 변화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의 유효 세부담 변화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며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부가가치세 현황 및 면세제도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한다. 부가가치세 세율, 세수입 규모 등을 소개하고, 본 연구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대해, 특히 부가가치세 면세분야에 대해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면세 대상 품목에 대해 기술한다.

1. 부가가치세제 현황

가. 부가가치세제 개요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율은 10% 단일 세율로 부과하고 있다. 10% 단일 세율은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로 지난 37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명목적으로는 10% 단일 세율로 부과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유효세율이 존재한다. 이는 일부 품목 및 경제적 활용에 대해서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기 때문이다.[8] 본 연구에서는 면세제도로 인해 개별 품목 또는 경제활동별로 10%인 명목세율과 상이한 유효세율이 발생하게 됨에 주목하여 실질적인 세부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있다. 전

8) 영세율 제도는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허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는 반면, 면세제도에서는 매입세액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분 면제되는 차이가 존재한다.

단계 세액공제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만약 중간 투입물로 과세 재화가 사용될 경우 중간 투입물을 매입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최종재를 판매하고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그렇지만 만약 중간 투입물이 과세되는 재화가 아니고 면세되는 재화인 경우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으므로, 매출세액이 그대로 부가가치세액이 된다. 그리고 면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중간 사업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키게 된다. 이처럼 중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면세되고 다음 생산·유통단계에서 과세되는 경우 최종재의 유효세율이 명목세율인 10%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Ⅲ장 제1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나. 부가가치세 수입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세수입 및 납세인원을 고려할 때, 법인세 및 소득세와 더불어 3대 주요 세목에 해당한다. 1990년부터 최근까지의 부가가치세 세수입 규모 추이를 보면, 우선 1990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수입 규모는 약 7조원으로 총국세의 26.1%를 차지하였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수입 규모는 약 58.9조원(지방소비세 포함)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수입 규모가 약 8.4배가 증가하였고 총국세의 29.2%를 차지하여 총국세 대비 비중은 분석기간 동안 3.1%p 증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수입 규모를 우리나라 GDP 규모와 비교해 보면, 1990년 GDP 대비 3.7%에서 계속 상승하여 2013년 GDP 대비 4.1%로 상승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세수입이 우리나라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2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 현재 국세 수입의 29.2%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1〉 부가가치세 수입 추이

(단위: 조원,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부가가치세[1)]	7.0	14.6	23.2	36.1	51.7	58.9
부가가치세/GDP[2)]	3.7	3.6	3.7	3.9	4.1	4.1
부가가치세/국세	26.1	25.7	25.0	28.3	29.1	29.2

주: 1) 지방소비세분(부가가치세의 5%)을 포함한 수치
2) 2000년 이전은 2005년 GDP 기준 비중이고 2000년 이후는 2010년 GDP 기준이다.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4),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074Y002&conn_path=I3, 2014. 7. 8. 접속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그림 Ⅱ-1] 부가가치세 수입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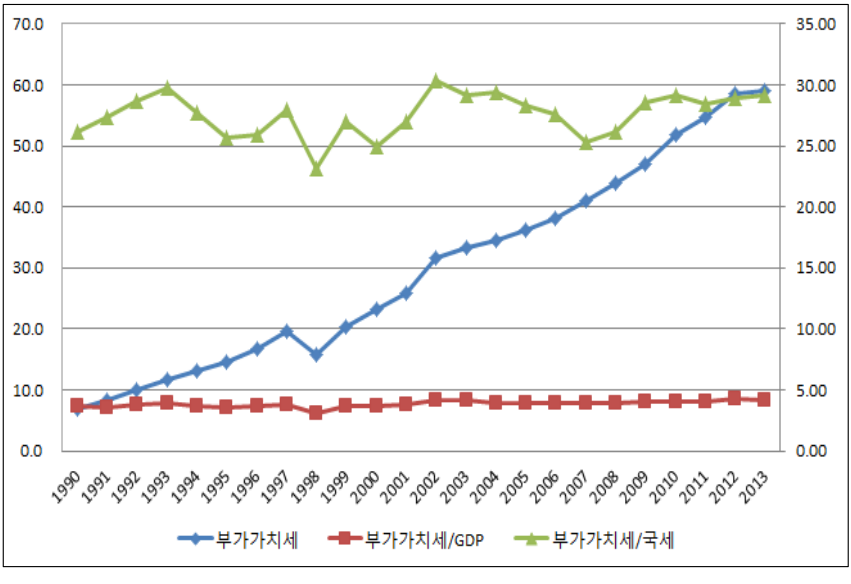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4),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074Y002&conn_path=I3, 2014. 7. 8. 접속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표 II-2〉 부가가치세 세수입

(단위: 조원, %)

	부가가치세[1]	부가가치세/GDP[2]	부가가치세/국세
1990	7.0	3.66	26.12
1991	8.3	3.59	27.39
1992	10.1	3.83	28.69
1993	11.7	3.92	29.77
1994	13.1	3.74	27.70
1995	14.6	3.56	25.70
1996	16.8	3.64	25.85
1997	19.5	3.85	27.90
1998	15.7	3.13	23.16
1999	20.4	3.72	26.95
2000	23.2	3.65	24.97
2001	25.8	3.75	26.93
2002	31.6	4.15	30.38
2003	33.4	4.12	29.12
2004	34.6	3.95	29.37
2005	36.1	3.92	28.31
2006	38.1	3.94	27.61
2007	40.9	3.92	25.33
2008	43.8	3.97	26.18
2009	47.0	4.08	28.57
2010	51.7	4.09	29.10
2011	54.6	4.10	28.40
2012	58.6	4.25	28.87
2013	58.9	4.12	29.18
평균		3.79	27.56

주: 1) 2010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지방소비세가 포함된 부가가치세 수입액이다.

2) 2000년 이전은 2005년 GDP 기준 비중이고 2000년 이후는 2010년 GDP 기준이다.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4),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074Y002&conn_path=I3, 2014. 7. 8. 접속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2. 부가가치세 면세

우리나라는 1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이유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미가공 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교역, 의료, 문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국민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 인해 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 용역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일정 금액이하의 저가 담배 및 특수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 · 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 ·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도 원래의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서는 수입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재화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 · 교육용 · 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 · 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4. 일정 금액이하의 저가 담배 및 특수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이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주: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아래와 같이 열거한 재화들을 말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 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대한민국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8. 항공기의 출발 · 도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 · 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 · 기구
9. 항공기의 제작 · 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10.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
12.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3.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4.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면세

「부가가치세법」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정기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까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한이 한정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1.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도서(島嶼)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학교의 구내 식당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4.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을 포함)

   4의 2.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4의 3.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 4.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 5.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6.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8.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 체결된 것만 적용)
9.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9의 2.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버스(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9의 3.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10. 희귀병 치료 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12. 임산물 중 목재펠릿(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입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특정한 국제 행사에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는

일정 시한을 두고 운용되고 있다. 즉, 일정 기간까지 수입 신고를 한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재화는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2항

1. 무연탄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4. 보세건설물품
9.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1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 ·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13.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에 개최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시설 제작 ·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16.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라 개최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기시설 제작 ·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1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 ·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에 개최되는 2015세계물포럼 관련 시설 제작 · 건설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1.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에 따라 2015년에 개최되는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경기시설 제작 ·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그리고 이 밖에도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 2에 의해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적용).

다. 부가가치세 면세 변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의 부가가치세가 과면세가 변화된 내역을 정리하였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큰 틀에서 큰 변화는 없었으며, 다만 세세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과면세 범위를 조정하였다. 예를 들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교육분야, 의료분야 자체를 과세로 전환하지는 않았지만, 세세한 미가공식료품 범위를 조정하거나, 성형수술에 대해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고, 무용학원에 대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는 등의 미세 조정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표 II-3〉 부가가치세 과면세 변화 내역

1990	○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대전세계박람회의 기념주화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제조에 대한 면세기간을 1년 연장 ○ 적출물처리업을 면세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추가 ○ 식용이 곤란한 일부 특용작물 종자, 면실 · 피마자 · 양귀비 등, 경주말, 승용말, 종마, 관상용의 활어는 면세되는 미가공식표품에서 제외 ○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임대용역에 면세 범위 축소(도시계획구역 내: 주택바닥면적의 5배)
1991	○ 한국어선협회, 한국무선관리사업단, 한국산업안정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 ·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992년 말까지 1년 연장 ○ 전화사업경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전화세가 과세되는 전화사업에만 면세 ○ 서적, 음반 등의 외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상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92	○ 지역축협이 생산 ·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993년 말까지 1년 연장
1993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과 공무원연금매점 및 농 · 수 · 축 · 임업협동조합의 시지역 이상 슈퍼 · 연쇄점사업을 과세로 전환 ○ 관세가 무세인 수입재화에 대한 면세 범위 조정 ○ 국가원수 및 그 가족이 사용할 수입품 면세 범위를 축소하여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면세 ○ 지역축협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994년 말까지 연장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기타 통신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3년간 연장 ○ 수입채소종자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추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추가 ○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을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추가 ○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과 같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1994	○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와 2002년 월드컵유치위원회의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면세 ○ 골동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 지역축협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995년 말까지 연장 ○ 도시편입지역소재 농 · 수 · 축협 연쇄점의 소매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1995	○ 종합유선방송수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경영 · 기술자문용역 면세 ○ 지역축협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996년 말까지 연장 ○ 신용카드업과 할부금융업에 대한 면세 ○ 수입콘테이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에서 지정해소 ○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용역을 면세 의료 · 보건용역의 범위에 추가
1996	○ 축협조합의 사료제조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을 1997년 6월 30일까지 연장 ○ 한국통신의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997년 말까지 연장 ○ 과학관이 수입하는 과학시설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98	○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97무주 · 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해 면세
1999	○ 제조담배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증권투자회사업 · 선물거래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전문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차관자금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일정 범위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2001	○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명확화 ○ 응급환자이송업 등을 면세되는 의료 · 보건용역에 포함 ○ 방송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 조정

	○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의 범위 명확화 – 금융보험사가 담보권 행사 등 금융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는 과세 – 증권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신탁재산회계처리용역을 일반 사무수탁업에 포함하여 면세 ○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전환 ○ 공익단체의 범위 명확화
2003	○ '기능성 쌀' 부가가치세 면세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면세적용 ○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2006	○ 채권추심업 면세일몰 시한연장(2008년 12월 31일까지) ○ 창업투자회사 등의 자산관리 · 운용용역 면세 ○ 산합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및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200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 용산국제학교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공업용 소금(천일염)의 과세전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확대
2008	○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 ○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 ○ 과학용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
2009	○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명확화 ○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장애인용품 범위 명확화
2010	○ 면세소금의 범위 조정
2011	○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전기버스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면세 ○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식품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저작권 신탁관리용역 확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 범위 명확화 ○ 군 골프연습장 등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공동배달사업 면세 종료

2012	○ 채권추심업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종료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에 산학협력단 추가 ○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용역 등 부가세 면제 ○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 ○ 개인택시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 추가 ○ 지방공기업의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 조정 ○ 구내식당(공장·학교 등)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 BTO 방식으로 건설한 학교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 연장 ○ 천연가스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2013	○ 산학협력단 학술·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 미용·성형 의료용역 과세범위 확대 ○ 판매사업용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실물 인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등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용역 추가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범위 조정 ○ 농협 명칭사용료·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자료: 김승래 외(2007), pp. 35~38에 있는 표를 재구성하였고, 2007년 이후는 『간추린 세법개정』, 각연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하였다.

Ⅲ.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이 분석

본 장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유효세율을 산출하는 방법을 조사하며, 동 방법론을 통해 도출한 유효세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1. 유효세율 분석의 필요성

소비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9]로서의 속성을 지닌 부가가치세는 모든 생산·유통단계마다 과세·징수되는 다단계 구조를 갖는다. 부가가치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액산출방식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전단계매입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동 방식에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산출한다. 즉 각 생산·유통 단계에서의 공급자는 공급자가격에다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거래상대방인 수요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그리고 동 공급자는 생산을 위해 중간 투입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반 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는 생산자 간의 중간단계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환급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가격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닌다. 즉, 일반 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생산에 대한 의사결정의 왜곡을 야기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만약 중간단계의 거래에 있어서 매

9) 통상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반세(a general tax)이며,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 사이에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에서 소비세(a tax on consumption)로 불린다.

입세액의 완전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산자가 사고팔 때 직면하는 생산자가격이 변하게 되며, 중간 투입물에 대한 선택이 바뀌게 됨에 따라 생산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계속해서 10%의 단일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10]. 또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체계는 면세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11] 중간 투입물의 구입 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완전히 환급해 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형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하며, 수입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아래에서 모든 면세제도를 없앤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는 '순수한 소비세(pure consumption tax)'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도입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우려, 부가가치세 행정절차의 간소화, 과세 기술에서의 한계, 경제·사회 정책적인 배려[12] 등의 이유로 특정 경제활동 및 상품에 대하여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면세 사업자들은 자신의 산출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면세 사업자는 중간 투입물의 구입 시에 징수당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권이 없다. 이상과 같은 면세제도 아래에서는 중간 투입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부담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생산의 왜곡을 발생하지 않는 일반소비세라는 장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13]

---

10) 면세제도와 영세율제도를 제외하더라도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간주하여 일종의 특례세율을 허용하고 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단일세율 체계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11) 면세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경우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중간 투입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시장경제에서 민간 자율의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예: 의료용역), 도서와 같이 소비를 권장하여야 할 재화(meritorious goods)가 이에 해당된다.

13) 면세제도의 존재 시 생산의 왜곡은 두 가지 경우에서 일어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는 중간 투입물을 다른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투입물 선택의 왜곡이 가능하다. 두 번째 경우는 매입세액

일반적으로 면세제도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명목세율은 그 유효세율과 동일하다. 그러나 면세제도가 도입되면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은 서로 상이해진다. 특히 생산·유통의 중간단계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생산·유통단계에서는 정상 과세를 하는 경우 환수효과(catching-up effect)와 더불어서 누적효과(cascading effect)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환수효과는 생산과정 중 특정 중간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정상 과세되는 경우 면세제도로 비과세되었던 특정 중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비과세 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누적효과는 면세가 적용되기 이전의 생산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면세 이후의 정상 과세단계에서 다시 중복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로 인해 면세 이후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높게 된다. 한편 최종 생산단계에서 면세된 재화의 경우에도 환급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최종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종소비자는 전가된 매입세액만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14]

이상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가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간에 괴리를 유발하는 현상을 박명호(2008)에서 제시한 예제와 유사한 예제를 통해 살펴보자. 동 예제에서는 설명의 단순화를 위하여 가구판매와 관련한 3단계의 생산·유통단계를 상정한다. 먼저, 생산·유통의 1단계에서는 원목회사가 원목을 채취하여 목재회사에 제공한다. 2단계에서는 목재회사가 원목회사로부터 구입한 원목을 가공하여 만든 목재를 가구회사에 제공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가구회사가 목재회사로부터 구입한 목재를 통해 가구를 만들고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여기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원목회사는

공제를 받기 원하는 일반사업자는 중간 투입물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투입물 선택의 왜곡이 가능하다.

14) 반면, 영세율제도에서는 매출에 대해서는 면세제도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여전히 중간 투입물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종소비자는 최종 생산·유통단계에서 영세율이 허용되면 동 생산단계와 연관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목을 채취할 때 아무런 중간 투입물 없이 노동만을 통해 100만원의 원목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목재회사는 원목을 구입하여 목재를 생산하면서 200만원어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하자. 마지막으로 가구회사는 목재를 이용하여 가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300만원어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하자.

한편 각각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10% 단일 명목세율을 지닌 부가가치세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유효 부가가치세율의 산출방법은 Gottfried and Wiegard(1991)[15]의 개념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한다. 다음 절에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 부가가치세율 개념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본 절에서는 간단하게 그 개념을 살펴본다. Gottfried and Wiegard(1991)는 특정 재화에 대한 유효 부가가치세율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격 간의 차이로 설명한다. 첫 번째 가격은 면세제도를 지닌, 현재 과세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아래에서의 판매가격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즉 공급대가이다. 두 번째 가격은 생산요소의 가격들과 중간 투입물 사용량은 부가가치세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에서 면세제도가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 아래에서의 균형 수량(equilibrium quantities)을 부가가치세 제도가 없는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판매가격이다. 이때 현행 균형 수량을 부가가치세 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달성하는 판매가격이란 바로 그 재화의 누적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첫 번째 경우의 판매가격에서 두 번째 경우의 판매가격을 차감하면 유효 부가가치세 부담이 도출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부가가치세 제도가 없는 경우의 판매가격으로 나눠주면 유효 부가가치세율을 도출할 수 있다.

아래의 〈표 Ⅲ-1〉은 모든 생산·유통단계에서 정상 과세되는 사례와 중간 생산단계 또는 최종 생산단계에서 면세를 적용받는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면세제도로 인한 각 생산단계별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서 부가가치세의 명목세율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라는 단일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

15) Gottfried and Wiegard(1991) pp. 309~313, 326~327을 참조함

먼저, 모든 생산·유통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정상 과세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예제에서는 면세제도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중간 투입물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를 완전히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생산·유통단계에서 매입액은 매입세액 환급을 감안하여 이전단계의 사업자가 부과하는 생산자가격이 된다. 예를 들면, 목재회사는 부가가치세 포함 110만원 어치의 원목을 구입했지만 10만원의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때문에 매입액은 100만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가구회사는 비록 부가가치세 포함 330만원을 지불하고 목재를 구입했지만 30만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매입액은 300만원이 된다. 또한 따라서 각 생산·유통단계의 생산자가격은 그 생산·유통단계까지의 누적 부가가치와 동일해진다. 예를 들면, 가구의 생산자가격은 매입액 300만원과 부가가치 300만원을 더한 600만원이다. 이 금액은 모든 생산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합계액(=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과 동일하다. 따라서 모든 생산·유통단계에서 정상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제도 아래서는 생산자가격이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의 생산자가격과 동일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첫 번째 사례에서 각 생산·유통단계의 유효세율은 모두 10%로 명목세율과 동일하다. 예를 들면, 가구의 최종소비자가격(판매가격)은 생산자가격 600만원에 부가가치세 60만원을 더한 660만원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의 판매가격인 600만원을 차감한 유효 세부담액은 60만원이다. 유효 세부담액 60만원을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의 판매가격 600만원으로 나눠주면 유효세율 10%가 도출된다.

다음에는 중간 생산단계인 목재에 대해서만 면세제도가 적용되는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본다. 정상 과세되는 원목 생산단계를 보자. 원목에 대한 유효 부가가치세 부담은 판매가격(공급대가) 110만원에서 누적 부가가치인 100만원을 차감한 10만원이며, 이를 누적 부가가치 100만원으로 나누면 유효세율로 10%가 산출된다. 이는 10%의 명목세율과 동일하다.

한편 목재회사는 가정상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원목 구입 시 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목재회사는 매입액에 자신이 부담한 매

입세액을 포함시켜서 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인 가구회사에 전가시킨다. 즉, 목재회사의 매입액은 매입세액 10만원이 포함된 110만원이 된다. 그리고 목재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 200만원을 매입액에 합산하여 310만원을 생산자가격(매출액)으로 책정한다. 이때 판매가격(공급대가)은 목재가 면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 생산자가격과 동일한 310만원이 된다. 이상의 거래단계에서 유효 세부담액은 판매가격 310만원에서 누적 부가가치 300만원을 차감한 10만원이다. 그리고 유효세율은 유효 세부담액 10만원을 누적 부가가치 300만원으로 나눈 결과인 3.3%가 된다. 이처럼 목재 생산단계에서 면세를 허용함에 따라 동 생산단계에 적용되는 명목세율(0%)과 유효세율(3.3%) 간에 괴리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최종 생산·유통단계인 가구회사의 경우를 보자. 가구회사는 면세된 중간투입물인 목재를 310만원에 구입하고 부가가치 300만원을 창출하여 가구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가구회사의 매입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목재를 구입한 가격인 310만원이며, 이에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 300만원을 더한 610만원이 생산자가격(매출액)이 된다. 최종소비자가격(판매가격)은 매출액에 10%의 명목세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을 합산한 671만원이 된다. 이때 유효 세부담액은 판매가격(최종소비자가격) 671만원에서 누적 부가가치 600만원을 제외한 71만원이고, 이를 누적 부가가치 600만원으로 나눠주면 유효세율은 11.8%(71만원/600만원*100)로 계산된다.

동 사례와 같이 중간 생산·유통단계에서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그 이후의 생산·유통단계에서는 정상 과세되는 경우 누적효과와 환수효과가 함께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가구회사가 최종소비자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총 61만원이다. 그 구성을 보면, 가구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30만원, 목재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20만원, 원목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10만원 및 원목회사의 부가가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0만원에 대한 세금 1만원이다. 따라서 중간 생산단계에서는 비록 면세되었지만 그 다음 생산단계에서 정상 과세됨에 따라 비과세되었던 중간 생산단계의 부가가치 200만원에 대한 세금 20만원이 환수되었다. 즉

비과세된 부가가치세 20만원에 대한 환수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면세 이전의 생산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100만원) 및 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1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11만원의 누적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런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로 인해 최종소비자가격에 반영된 부가가치세는 총 71만원된다. 즉, 모든 생산·유통단계에서 정상 과세되는 사례에서 최종소비자가격에 반영된 부가가치세 60만원보다 누적효과 금액(11만원)만큼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허용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정상 과세의 경우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1〉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간의 괴리 예제

(단위: 만원, %)

거래 단계	매입액 ①	부가가치 ②	매출액 ③=①+②	명목세율 ④	매출세액 ⑤=③+④	매입세액 ⑥	납부세액 ⑦=⑤-⑥	공급대가 ⑧=③+⑤	유효세율 ⑨=(⑧-Σ②)/③
〈사례 1: 모든 거래단계에서 정상 과세되는 경우〉									
원목회사	0	100	100	10%	10	0	10	110	10%
목재회사	100	200	300	10%	30	10	20	330	10%
가구회사	300	300	600	10%	60	30	30	660	10%
계	–	600	–	–	–	–	60	–	
〈사례 2: 중간단계인 목재 생산단계에서 면세되는 경우〉									
원목회사	0	100	100	10%	10	0	10	110	10%
목재회사	110[1)]	200	310	0%	0	–	0	310	3.3%
가구회사	310[1)]	300	610	10%	61	–	61	671	11.8%
계	–	600	–	–	–	–	71	–	
〈사례 3: 최종단계인 가구 생산단계에서 면세되는 경우〉									
원목회사	0	100	100	10%	10	0	10	110	10%
목재회사	100	200	300	10%	30	10	20	330	10%
가구회사	330[1)]	300	630	0%	0	–	0	630	5%
계	–	600	–	–	–	–	30	–	

주: 1) 매입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가격이나 면세단계와 그 이후의 생산·유통단계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포함한 가격이다.

마지막으로 최종 생산단계인 가구에 대해서만 면세제도가 적용되는 세 번째 사례를 살펴본다. 정상 과세되는 원목 및 목재 생산단계는 모든 생산·유통단계가 정상 과세되는 사례 1과 세부담 구조가 동일하다. 원목과 목재에 대한 유효 부가가치세율은 명목세율과 동일한 10%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면세가 적용되는 가구의 경우, 가구회사는 목재 구입시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가구회사는 이를 거래상대방인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매입원가에 가산하게 된다. 즉, 가구회사는 매입액을 300만원이 아닌 330만원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 300만원을 더한 630만원을 생산자가격으로 책정한다. 가구가 면세이기 때문에 판매가격은 생산자가격과 동일한 630만원이 된다. 이때 유효 세부담액은 판매가격 630만원에서 누적 부가가치 600만원을 차감한 30만원이며, 이를 누적 부가가치 600만원으로 나누면 5%의 유효세율이 도출되고, 명목세율(0%)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면세제도를 지닌 부가가치세 제도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명목세율보다 유효세율이 더 큰 현상이 발생한다.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세부담에 대한 분석 시 명목세율이 아닌 유효세율을 사용하여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대한 분석에서 세부담 계산의 단순성 또는 편리성을 추구하여 명목세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16] 이와 같이 명목세율을 이용하여 세부담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위의 두 번째 사례에 따르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유효 세부담은 71만원임에도 불구하고 61만원(=최종소비자가격 671만원 × (10/110))으로 산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명목세율이 아닌 유효세율을 산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16) 물론 유효세율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최종 소비재의 생산과정 및 각 단계별 면세 여부를 모두 알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런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명목세율을 사용한다.

2. 유효세율 산출 방법론

본 절에서는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세율 산출 방법론을 상세하게 살펴본다. 또한 이를 산업연관표상의 가장 세밀한 산업부문 분류인 기본부문에 적용하여 기본부문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산출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유효세율 산출 시 사용되는 기본부문에 관한 산업연관표를 왜 사용하는지를 먼저 제시한다.

가.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과면세 구분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세율 개념을 적용하여 면세제도가 야기하는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간의 괴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첫째, 개별 재화나 용역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면세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둘째, 개별 재화나 용역별로 어떤 중간 투입물이 얼마만큼 투입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개별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에 규정된 사항을 파악해 부가가치세 과면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재화 및 용역에 사용된 중간 투입물 정보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개별 재화 또는 용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석유류 제품 중에서도 농어업용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치 등이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된 상태로 판매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김치 등이 단순 운반 등을 위해 포장된 경우에는 면세된다. 일상적인 예로, 김치를 온라인 주문할 때 김치 판매 사업자가 단순히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의 일시적인 포장으로 보고 부가가세를 면세하고 있다.[17)]

이처럼 세법에서는 개별 재화 및 용역별로 과면세를 구분하고 있지만, 산업연관표에서는 산업연관표 고유의 목적에 따라 재화가 아닌 산업별로 구분하고 있다. 중간 투입 정도에 대한 유일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화와 용역을 산업과 매칭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화와 용역별 부가가치세 과면세 분류와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상대적으로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산업연관표에서 가장 세부적인 분류인 기본부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계가 존재한다. 앞서 설명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처럼 산업연관표에서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농어업용 휘발유, 농어업용 경유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약 해당 산업의 재화들이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재화가 혼용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재화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재화를 기준으로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휘발유의 경우에는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휘발유보다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용되는 휘발유가 많기 때문에 휘발유는 부가가치세 과세로 구분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본부문 분류를 기준으로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한 산업연관표를 사용하고 있다.[18]

나. 유효세율 산출 방법론

본 소절에서는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세율 개념에 따른 유효세율 산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19] 먼저, 특정 재화 i의

17) 국세청 법규부가 2012-248, 2012. 3. 15.

18) 산업연관표는 물량단위가 아니라 금액단위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액의 평가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분석결과도 달라진다. 산업연관표에서는 구매자가격평가표와 생산자가격평가표를 제공하고 있다. 구매자가격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시점의 가격으로서 중간유통마진이 포함되지만 생산자가격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생산자 출하가격을 나타낸다. 한편 생산자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간접세가 포함되는 단점이 있다.

19) 이하의 구체적인 유효세율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은 Marks(2003) pp.12~15 및 박명호

생산자가격을 p_i라고 하자. 생산자가격 p_i는 재화 i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와 동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중간 투입물 비용(매입액)을 합산한 것으로 정의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수식 (1)과 같다.

$$p_i = \nu_i + \sum_{j=1}^{n} a_{ji}\left[p_j + (1-\delta_i)t_j\, p_j\right], \qquad i = 1, 2, \ldots, n \qquad (1)$$

여기서 ν_i는 재화 i의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a_{ji}는 산업연관표에서 제시된 투입계수로 재화 i를 1단위 생산하는 데 중간 투입물로 사용된 재화 j의 투입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δ_i는 재화 i가 면세 대상이면 0이고 정상 과세대상이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t_j는 재화 j의 명목 부가가치세율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재화 j가 면세대상이면 0, 재화 j가 정상 과세대상이면 0.1의 값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n은 재화 또는 산업부문의 숫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 내의 가장 자세한 산업분류인 기본부문을 이용하여 각 재화 또는 산업부문별 유효세율을 산출한다.

만약 재화 i가 면세대상($\delta_i = 0$)이고 재화 i의 중간 투입물로 투입된 재화 j가 정상 과세대상($t_j = 0.1$)인 경우 재화 i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중간 투입물 j의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제1절의 예제 중 두 번째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화 i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에 자신이 지불한 매입세액을 가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한다. 따라서 생산자가격은 환급받지 못한 매입세액만큼 증가하게 된다. 한편 재화 i가 정상 과세대상인($\delta_i = 1$) 경우 재화 i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정상 과세되는 중간 투입물의 구입 시 지불한 매입세액을 모두 환급받기 때문에 중간 투입물인 재화 j의 생산자가격을 매입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재화 i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중간 투입물인 재화 j가 면세대상($t_j = 0$)인 경우라도 재화 i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재화 j의 생산자가격을 매입액으로 한다. 왜냐하면, 중간 투입물

(2008) pp. 54~55의 설명을 수정 ·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로 재화 j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부가가치세 제도가 없는 상황[20]에서의 재화 i의 생산자가격을 $\tilde{p}_i$라고 하자. 부가가치세 제도가 없는 경우 특정 재화의 생산자가격은 동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와 중간 투입물 비용의 합계액이 된다. 중간 투입물 비용은 중간 투입물로 사용된 재화들의 생산자가격의 합계액이 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식 (2)와 같다.

$$\tilde{p}_i = \nu_i + \sum_{j=1}^{n} a_{ji}\,\tilde{p}_j\,, \qquad i = 1,2,...,n \tag{2}$$

여기서 ν_i, a_{ji}, n은 식 (1)에서의 정의한 바와 같다. $\tilde{p}_j$는 부가가치세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의 재화 j의 생산자가격을 나타낸다. 그리고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세율 산출 방법에서는 생산요소의 가격들과 중간 투입물 사용량이 부가가치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에 의해 ν_i와 a_{ji}는 식 (1)과 식 (2)에서 서로 동일하다.

식 (1)과 식 (2)에서 부가가치(ν_i)를 좌변으로, 모든 가격변수들을 우변으로 이동시킨 후에 이를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의 식 (3)과 (4)와 같이 된다.

$$\nu = (I - A')\,p - (I - \Delta)A'\,T\,p \tag{3}$$

$$\nu = (I - A')\,\tilde{p} \tag{4}$$

여기서 ν는 각 재화들의 단위당 부가가치 벡터이고, I는 $n \times n$ 항등행렬이다. 그리고 A'은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 행렬인 $[a_{ji}]$의 전치행렬이다. 즉 A'의 i번째 행과 j번째 열에 속한 원소가 바로 a_{ji}가 된다. Δ는 각 재화의 면세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 δ를 주대각선 성분 원소로 하

20) 면세제도가 없는 부가가치세 제도를 상정해도 무방하다.

고, 나머지 성분 원소는 0인 대각행렬이다. T는 명목세율 t를 주대각선 성분 원소로 하는 대각행렬이다. p는 면세제도를 지닌 부가가치세 제도에서의 생산자가격 벡터이고, $\tilde{p}$는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생산자가격 벡터를 의미한다.

한편 생산요소 가격들과 중간 투입물 사용량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유무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식 (3)과 (4)의 좌변상의 부가가치 벡터들은 서로 동일하다. 따라서 식 (3)으로부터 식 (4)를 차감한 후 정리하면 다음의 식 (5)가 도출된다.

$$0 = (I - A')(p - \tilde{p}) - (I - \Delta)A'Tp \tag{5}$$

위의 식 (5)는 면세제도로 인하여 생산자가격 벡터 p와 $\tilde{p}$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면제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자가격 벡터 p와 $\tilde{p}$의 차이를 $\tilde{\tau}$로 정의하자. 그러면 $\tilde{\tau}$는 면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을 의미한다.[21] 위의 식 (5)를 조작하여 $\tilde{\tau}$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식 (6)을 도출할 수 있다.

$$\tilde{\tau} = p - \tilde{p} = (I - A')^{-1}(I - \Delta)A'Tp \tag{6}$$

그리고 면세제도를 지닌 부가가치세 제도 아래에서 단위당 명목 세부담 벡터를 τ라고 정의하면, $\tau = Tp$의 관계가 성립한다. 반면 단위당 유효 세부담 벡터를 τ^e라고 정의하면 다음 식 (7)이 성립한다.

$$\tau^e = \tau + \tilde{\tau} = [I + (I - A')^{-1}(I - \Delta)A']Tp \tag{7}$$

21) 면세제도가 없는 부가가치세 제도 아래에서 생산자가격은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생산자가격과 동일하다. 이는 제1절의 예제 중 첫 번째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 재화단위로 보면, 재화 i에 대한 단위당 유효 부가가치세 부담을 ${\tau_i}^e$로 정의할 때 ${\tau_i}^e = \tau_i + \tilde{\tau_i}$이 성립한다. 그리고 재화 i의 유효세율을 ${t_i}^e$라고 정의하면, 이는 아래의 식 (8)처럼 유효 세부담 ${\tau_i}^e$를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의 생산자가격 $\tilde{p_i}$로 나눈 값이 된다.

$$t_i^e = \frac{{\tau_i}^e}{\tilde{p_i}} = \frac{\tau_i + \tilde{\tau_i}}{\tilde{p_i}} \tag{8}$$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연관표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같이 물량단위가 아니라 금액단위로 생산된다는 점이다. 이는 위의 식 (8)을 통해 각 산업부문별 유효세율을 산출할 때 $\tilde{p_i}=1$임을 암묵적으로 의미한다 (Marks, 2003).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각 연도별 기본부문별의 유효 부가가치세율은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한편 Gottfried and Wiegard(1991)에 따른 유효세율은 생산요소 가격들과 중간 투입물 사용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 산출되었다. 이 가정은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 아래에서 도달한 균형을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제도는 도입되었지만 면세제도는 없는 상황 아래에서 도달하게 하는 가격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생산요소 가격들이 고정되었다는 가정은 완전한 일반균형모형이 아닌 부분균형모형을 통해 유효세율을 산출하게 하는 한계를 야기한다. 또한 위의 식 (6)에서 나타내는 면세제도로 인한 세부담인 $\tilde{\tau}$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 따라서 Gottfried and Wiegard(1991)에 따른 유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는 특징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유효세율 산출법을 제1절의 예제 중 두 번째 사례에 적용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두 번째 사례에서의 투입계수표 행렬 A, 각 재화의 면세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δ를 주대각선 성분 원소로 하는 대각행렬 Δ, 명목세율 t를 주대각선 성분 원소로 하는 대각행렬 T, 생산자가격 벡터 p와 $\tilde{p}$는 각각 아래와 같다.

$$A = \begin{pmatrix} 0 & 1 & 0 \\ 0 & 0 & 1 \\ 0 & 0 & 0 \end{pmatrix},\ \Delta = \begin{pmatrix} 1 & 0 & 0 \\ 0 & 0 & 0 \\ 0 & 0 & 1 \end{pmatrix},\ T = \begin{pmatrix} 0.1 & 0 & 0 \\ 0 & 0 & 0 \\ 0 & 0 & 0.1 \end{pmatrix},\ p = \begin{pmatrix} 100 \\ 310 \\ 610 \end{pmatrix},\ \tilde{p} = \begin{pmatrix} 100 \\ 300 \\ 600 \end{pmatrix}.$$

이를 수식 (7) 및 (8)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유효 세부담 벡터(τ)와 유효세율 벡터(t^e)를 얻을 수 있다.

$$\tau = \begin{pmatrix} 10 \\ 10 \\ 71 \end{pmatrix},\ t^e = \begin{pmatrix} 0.1000 \\ 0.0333 \\ 0.1183 \end{pmatrix}.$$

위의 유효세율은 〈표 Ⅲ-1〉의 두 번째 사례에서 제시한 유효세율 수치들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3. 유효세율 추이 분석

본 절에서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20여 년 동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산출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산업연관표가 존재하는 연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산출하였다.[22]

가. 2012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우선 분석 가능한 자료 중 가장 최근 연도인 2012년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살펴보자.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가가치세는 품목별로 과면세가 구분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에서 가장 세세한 산업부문 분류인 기본부문을 선택해서 사용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기본부문은 총 384개이다.

22) 산업연관표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5년~2012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은행에서는 2005년 이후로는 매년 산업연관표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개별 기본부문에 대한 유효세율은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전체적인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보기 위해 산업연관표에서 제시하는 대분류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낮은 산업군은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등으로 각각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2.48%, 3.03%, 4.48%, 4.76%이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모두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표적인 산업들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부가가치세 면세 정도와 중간 투입물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이 반영되어 있다. 공공행정 및 국방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가장 낮은데 이는 그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간 투입물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만약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에서 모든 중간 투입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라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역시 명목세율과 동일하게 0%의 세율이 된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5~10% 미만인 산업군으로는 농림수산품, 부동삼 및 임대,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전문, 과학 및 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료품,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광산품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들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부가가치세 면세 정도와 중간 투입물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이 반영되어 있고, 또한 앞서 설명하였듯이 개별 품목이 아닌 산업이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단일 산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 품목이 함께 혼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나머지 산업들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10%를 넘고 있다. 제1차 금속제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12.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중간 투입물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이들의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목세율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보이고 있다. 최종재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더라도 중간 투입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일 수도 있고 면세되는 재화가 사

용될 수도 있어 이처럼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명목세율과 달리 다양한 세율로 분포되어 있게 된다.

〈표 Ⅲ-2〉 2012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단위: %)

산업부문명[1]		유효세율	산업부문명[2]		유효세율
1	농림수산품	5.94	27	공공행정 및 국방	2.48
2	광산품	9.95	28	교육서비스	3.03
3	음식료품	9.69	23	금융 및 보험서비스	4.48
4	섬유 및 가죽제품	10.66	29	보건 및 사회복지	4.76
5	목재 및 종이, 인쇄	10.67	1	농림수산품	5.94
6	석탄 및 석유제품	10.68	24	부동산 및 임대	6.20
7	화학제품	10.66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7.32
8	비금속광물제품	10.79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8.03
9	제1차 금속제품	12.15	30	문화 및 기타서비스	9.40
10	금속제품	10.94	20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9.48
11	기계 및 장비	10.77	3	음식료품	9.69
12	전기 및 전자기기	10.50	22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9.94
13	정밀기기	10.51	2	광산품	9.95
14	운송장비	10.73	18	건설	10.10
15	기타 제조업제품 및 임가공	10.57	12	전기 및 전자기기	10.50
16	전력, 가스 및 증기	10.57	13	정밀기기	10.51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7.32	26	사업지원서비스	10.54
18	건설	10.10	15	기타 제조업제품 및 임가공	10.57
19	도소매서비스	10.64	16	전력, 가스 및 증기	10.57
20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9.48	19	도소매서비스	10.64
21	운송서비스	11.70	7	화학제품	10.66
22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9.94	4	섬유 및 가죽제품	10.66
23	금융 및 보험서비스	4.48	5	목재 및 종이, 인쇄	10.67
24	부동산 및 임대	6.20	6	석탄 및 석유제품	10.68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8.03	14	운송장비	10.73
26	사업지원서비스	10.54	11	기계 및 장비	10.77
27	공공행정 및 국방	2.48	8	비금속광물제품	10.79
28	교육서비스	3.03	10	금속제품	10.94
29	보건 및 사회복지	4.76	21	운송서비스	11.70
30	문화 및 기타서비스	9.40	9	제1차 금속제품	12.15

주: 1) 좌측의 숫자는 산업부문 코드를 의미한다.
2) 유효세율 크기에 따라 산업부문을 정렬한 결과이다.

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지난 20여 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다만 1990년부터 2012년까지 20여 년이 넘는 장기간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산업연관표에서 제시된 산업분류도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산업연관표의 대분류 기준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선 산업연관표의 대분류 기준이 가장 유사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를 보고 이를 앞선 1990년대와 2010년 이후와 변화로 연계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1) 2000년~2009년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명목 부가가치세율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0년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에도 예상대로 큰 변화는 없었다. 28개 대분류 산업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거나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산업군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증가 정도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 농림수산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2000년 5.17%에서 2009년 6.4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식료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2000년 7.90%에서 2009년 9.2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증가 추세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면세 재화보다는 과세 재화의 비중이 더 커진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중간 투입물로 사용되는 재화 중 과세 재화의 비중이 더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에 비해 2009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낮

아진 산업군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그리고 사회 및 기타서비스 산업들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 이들 산업군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산업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간 투입물 사용 비중이 약간 감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쇄 및 복제 산업의 경우에는 2005년에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2000년과 2003년 산업연관표상의 인쇄, 출판 및 복제 산업부문이 2005년 이후의 산업연관표에서는 인쇄 및 복제 산업부문으로 변경되면서 면세 재화인 신문 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제의 변화가 아닌 산업연관표상에서 산업부문별 대분류 기준이 변경되어 발생한 현상이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산업연관표상에서 산업별 분류 기준이 전혀 변화하지 않은 기간이다. 동일한 산업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5개년도 자료인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의 산업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보면, 모든 산업에서 거의 변화가 없지만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낮아진 산업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중간 연도에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감소한 산업도 있지만 2005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미세하지만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세 재화는 중간 투입물로 면세 재화를, 반대로 면세 재화는 중간 투입물로 과세 재화를 예전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뜻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투입물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표 Ⅲ-3〉 2000년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

(단위: %)

산업부문명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농림수산품	5.17	5.44	5.30	5.51	5.74	6.58	6.40
광산품	9.32	9.57	9.59	9.56	9.54	9.63	9.71
음식료품	7.90	8.44	8.33	8.57	8.85	9.20	9.25
섬유 및 가죽제품	10.65	10.64	10.58	10.66	10.69	10.76	10.75
목재 및 종이제품	10.38	10.37	10.34	10.39	10.40	10.44	10.43
인쇄 및 복제	8.35	8.26	10.27	10.30	10.30	10.33	10.34
석유 및 석탄제품	10.05	10.06	10.14	10.16	10.17	10.16	10.19
화학제품	10.36	10.32	10.32	10.33	10.33	10.33	10.37
비금속광물제품	10.37	10.35	10.33	10.35	10.36	10.38	10.38
제1차 금속제품	10.35	10.37	10.36	10.37	10.40	10.44	10.45
금속제품	10.31	10.31	10.31	10.34	10.35	10.38	10.39
일반기계	10.35	10.36	10.36	10.39	10.41	10.44	10.46
전기 및 전자기기	10.35	10.39	10.46	10.48	10.50	10.56	10.61
정밀기기	10.54	10.53	10.49	10.55	10.57	10.61	10.69
수송장비	10.35	10.34	10.35	10.38	10.38	10.40	10.42
기타제조업제품	10.40	10.40	10.37	10.40	10.40	10.43	10.44
전력, 가스 및 수도	9.81	9.70	9.76	9.78	9.83	9.96	9.95
건설	9.01	9.23	9.34	9.41	9.46	9.51	9.43
도소매	10.29	10.35	10.33	10.35	10.36	10.37	10.39
음식점 및 숙박	11.29	11.30	11.34	11.45	11.47	11.72	11.73
운수 및 보관	8.53	8.52	7.95	8.40	8.28	8.13	8.64
통신 및 방송	9.40	9.26	9.72	9.72	9.77	9.85	9.92
금융 및 보험	2.08	2.42	2.16	2.55	2.45	2.77	2.7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8.31	8.62	7.90	8.04	8.11	8.17	8.15
공공행정 및 국방	3.31	2.90	3.02	3.07	3.11	3.19	3.11
교육 및 보건	3.88	3.67	3.47	3.51	3.51	3.58	3.65
사회 및 기타서비스	9.14	9.32	8.75	8.79	8.80	8.87	8.88
기타	11.14	11.19	11.24	11.29	11.27	11.44	11.44

2) 1990～2012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이

앞서 2000년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이 기간 중에도 산업연관표의 대분류 기준이 약간 변화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를 해석하는 데 주의할 점이 있었다. 이 기간을 더 확장해서 1990년부터 2012년까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만큼 산업들도 변화하였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보기 위해 최대한 유사한 산업군으로 묶어서 추세를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산업연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분류 기준 산업들은 1990년에는 26개 대분류 산업군으로 분류되었고,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28개 대분류 산업군으로, 그리고 2010년 이후 현재까지는 30개 산업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연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분류 산업군이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부터 사용되었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업군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는 부동산 및 임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3가지로 세분화되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 재화는 중간 투입물 중 면세 재화의 투입 비중이, 반대로 면세 재화는 중간 투입물 중 과세 재화의 투입 비중이 과거보다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가 비교적 뚜렷한 산업으로는 우선,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가 있다.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의 1990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4.6%였는데, 2000년에는 3.3%로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2.5%로 나타났다. 반대로 음식료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식료품의 1990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7.4%에서 2000년에는 7.9%로 증가하였다고 2012년에는 9.7%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대분류의 산업군을 사용하였기에 대체로 과세와 면세 재화가 혼합되어 있어 명확하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증가는 중간 투입물로 사용된 재화 중 면세 재화의 비중이 더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표 Ⅲ-4〉 1990~2012년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

(단위: %)

산업부문명	1990	산업부문명	1995	2000	2005	산업부문명	2010	2012
농림수산부	5.13	농림수산품	5.08	5.17	5.30	농림수산품	6.06	5.94
광산품	7.71	광산품	9.35	9.32	9.59	광산품	10.08	9.95
음식료품	7.38	음식료품	7.92	7.90	8.33	음식료품	9.36	9.69
섬유,가죽	11.04	섬유 및 가죽제품	10.83	10.65	10.58	섬유 및 가죽제품	10.61	10.66
종이, 나무제품	10.34	목재 및 종이제품	10.33	10.38	10.34	목재 및 종이, 인쇄	10.63	10.67
		인쇄 및 복제	7.55	8.35	10.27			
석유, 석탄제품	7.82	석유 및 석탄제품	10.06	10.05	10.14	석탄 및 석유제품	10.52	10.67
화학제품	9.48	화학제품	10.36	10.36	10.32	화학제품	10.60	10.66
요업토석제품	10.30	비금속광물제품	10.30	10.37	10.33	비금속광물제품	10.72	10.79
제1차 금속	10.29	제1차 금속제품	10.31	10.35	10.36	1차 금속제품	12.18	12.15
금속제품	10.33	금속제품	10.31	10.31	10.31	금속제품	10.91	10.94
일반기계	10.31	일반기계	10.35	10.35	10.36	기계 및 장비	10.73	10.77
전기및 전자기기	10.32	전기 및 전자기기	10.40	10.35	10.46	전기 및 전자기기	10.47	10.50
정밀기기	10.38	정밀기기	10.71	10.54	10.49	정밀기기	10.47	10.51
수송기계	10.37	수송장비	10.35	10.35	10.35	운송장비	10.66	10.73
기타 제조업제품	5.52	기타 제조업제품	10.44	10.40	10.37	기타 제조업제품 및 임가공	10.50	10.57

〈표 Ⅲ-4〉의 계속

산업부문명	1990	산업부문명	1995	2000	2005	산업부문명	2010	2012
전력, 가스 및 수도	9.65	전력, 가스 및 수도	9.77	9.81	9.76	전력, 가스 및 증기	10.49	10.57
						수도, 폐기물 및 활용서비스	7.48	7.32
건설	9.27	건설	9.52	9.01	9.34	건설	9.81	10.10
도소매	10.26	도소매	10.28	10.29	10.33	도소매 서비스	10.55	10.64
		음식점 및 숙박	10.26	11.29	11.34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9.09	9.48
운수 및 보관	7.55	운수 및 보관	7.80	8.53	7.95	운송서비스	11.54	11.70
통신	9.03	통신 및 방송	9.31	9.40	9.72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9.87	9.94
금융 및 보험	2.56	금융 및 보험	2.23	2.08	2.16	금융 및 보험서비스	3.91	4.4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7.9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8.44	8.31	7.90	부동산 및 임대	6.23	6.2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8.30	8.03
						사업지원서비스	10.47	10.54
공공행정 및 국방	4.62	공공행정 및 국방	4.06	3.31	3.02	공공행정 및 국방	2.50	2.48
교육 및 보건	3.59	교육 및 보건	3.24	3.88	3.47	교육서비스	2.80	3.03
						보건 및 사회복지	4.67	4.76
사회 및 개인서비스	9.43	사회 및 기타서비스	8.94	9.14	8.75	문화 및 기타서비스	9.27	9.32
기타	11.37	기타	11.21	11.14	11.24			

〈표 Ⅲ-5〉 2000년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

(단위: %)

산업부문명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산업부문명	2010	2011	2012
농림수산품	5.17	5.44	5.30	5.51	5.74	6.58	6.40	농림수산품	6.06	5.98	5.94
광산품	9.32	9.57	9.59	9.56	9.54	9.63	9.71	광산품	10.08	9.93	9.95
음식료품	7.90	8.44	8.33	8.57	8.85	9.20	9.25	음식료품	9.36	9.53	9.69
섬유 및 가죽제품	10.65	10.64	10.58	10.66	10.69	10.76	10.75	섬유 및 가죽제품	10.61	10.66	10.66
목재 및 종이제품	10.38	10.37	10.34	10.39	10.40	10.44	10.43	목재 및 종이, 인쇄	10.63	10.69	10.67
인쇄 및 복제	8.35	8.26	10.27	10.30	10.30	10.33	10.34				
석유 및 석탄제품	10.05	10.06	10.14	10.16	10.17	10.16	10.19	석탄 및 석유제품	10.52	10.66	10.67
화학제품	10.36	10.32	10.32	10.33	10.33	10.33	10.37	화학제품	10.60	10.64	10.66
비금속광물제품	10.37	10.35	10.33	10.35	10.36	10.38	10.38	비금속광물제품	10.72	10.76	10.79
제1차 금속제품	10.35	10.37	10.36	10.37	10.40	10.44	10.45	1차 금속제품	12.18	12.21	12.15
금속제품	10.31	10.31	10.31	10.34	10.35	10.38	10.39	금속제품	10.91	10.96	10.94
일반기계	10.35	10.36	10.36	10.39	10.41	10.44	10.46	기계 및 장비	10.73	10.77	10.77
전기 및 전자기기	10.35	10.39	10.46	10.48	10.50	10.56	10.61	전기 및 전자기기	10.47	10.49	10.50
정밀기기	10.54	10.53	10.49	10.55	10.57	10.61	10.69	정밀기기	10.47	10.51	10.51
수송장비	10.35	10.34	10.35	10.38	10.38	10.40	10.42	운송장비	10.66	10.72	10.73
기타 제조업제품	10.40	10.40	10.37	10.40	10.40	10.43	10.44	기타 제조업제품 및 임가공	10.50	10.56	10.57

〈표 Ⅲ-5〉의 계속

산업부문명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산업부문명	2010	2011	2012
전력, 가스 및 수도	9.81	9.70	9.76	9.78	9.83	9.96	9.95	전력, 가스 및 증기	10.49	10.58	10.57
								수도, 폐기물, 재활용서비스	7.48	7.56	7.32
건설	9.01	9.23	9.34	9.41	9.46	9.51	9.43	건설	9.81	10.04	10.10
도소매	10.29	10.35	10.33	10.35	10.36	10.37	10.39	도소매서비스	10.55	10.61	10.64
음식점 및 숙박	11.29	11.30	11.34	11.45	11.47	11.72	11.73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9.09	9.42	9.48
운수 및 보관	8.53	8.52	7.95	8.40	8.28	8.13	8.64	운송서비스	11.54	11.68	11.70
통신 및 방송	9.40	9.26	9.72	9.72	9.77	9.85	9.92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9.87	9.92	9.94
금융 및 보험	2.08	2.42	2.16	2.55	2.45	2.77	2.78	금융 및 보험서비스	3.91	4.26	4.4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8.31	8.62	7.90	8.04	8.11	8.17	8.15	부동산 및 임대	6.23	6.24	6.2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8.30	8.15	8.03
								사업지원서비스	10.47	10.51	10.54
공공행정 및 국방	3.31	2.90	3.02	3.07	3.11	3.19	3.11	공공행정 및 국방	2.50	2.52	2.48
교육 및 보건	3.88	3.67	3.47	3.51	3.51	3.58	3.65	교육서비스	2.80	2.85	3.03
								보건 및 사회복지	4.67	4.75	4.76
사회 및 기타서비스	9.14	9.32	8.75	8.79	8.80	8.87	8.88	문화 및 기타서비스	9.27	9.32	9.32
기타	11.14	11.19	11.24	11.29	11.27	11.44	11.44				

Ⅳ.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석

1. 분석 자료[23)]

가계동향조사는 일제 강점기인 1942년부터 조사된 통계자료로 1963년부터 통계청이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동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가구의 수입과 지출의 세부사항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생활수준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수준의 변동사항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이 시작하는 1990년 이후 가계동향조사의 주요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계동향조사는 2002년까지 비농가 도시가구만을 조사하여 '도시가계조사'로 불렸다. 통계청은 2003년부터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읍면지역 비농가까지 포괄하면서 명칭을 '도시가계조사'에서 '가계조사'로 변경하였다. 그후 2006년부터는 1인 가구에 대한 조사 및 전자가계부 조사 방식이 도입되었고, 2009년에는 대통령령으로 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과정에서 명칭이 '가계조사'에서 '가계동향조사'로 변경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5년 이후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조사개시 이전에 전체 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표인 가계부를 조사대상 가구에 배부하고, 가구에서는 매월 한 달 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세부적인 내역(금액과 품목명)을 매일매일 직접 기입하는 가계부 기장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종이가계부 기장방식 이외에도 전자가계부 입력방식을 도입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가구실태에 대하여 조사원이 가구 면접을 통해 가

23) 본 절에서는 제Ⅳ장의 분석 자료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설명을 통계청(2011, pp. 4~7, pp. 21~26)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구실태를 파악하여 기록하는 면접조사가 병행되고 있다.

한편 가계동향조사의 모집단은 일반적으로 매 5년마다 갱신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가장 최근의 모집단은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에 속한 가구이다. 이때 일반가구가 아닌 군대, 수용시설, 기숙사 등의 집단가구는 제외되며,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섬지역의 조사구도 제외된다.[24)]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추출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의 7대 도시(서울 및 6개 광역시)와 9개 도를 대상으로 동부 및 읍면부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25개로 층화한다. 그런 다음 각 층을 대상으로 표본규모를 산정하고, 층별 표본규모에 의거하여 표본가구가 추출된 기회가 동일하도록 확률비례추출 방법으로 조사구 999개를 추출한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에서 10개 가구를 표본가구로 선정하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 중 적격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25)]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의 수입이 분류되는 방식을 보면 아래의 〈표 Ⅳ-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수입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런 다음 소득 또는 수입 항목별과 가구 구성원[26)]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수입 유형은 크게 소득과 기타 수입으로 구분되고,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 기타 수입은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6개 항목),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2항목),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경상소득은 다시 가구원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분류된다.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 퇴직수당, 기타 비경상소득 등 3개의 항목으로 분류된다.

---

24) 이외에 가구에 귀속된 지출과 자영업 등 사업에 귀속된 지출을 구분하기 어려운 음식숙박 겸용주택 가구와 농가·어가·임가 등이 제외되고 있다(통계청(2011, p. 23)).

25) 통계청(2011), pp. 24~25에 따르면 적격가구는 약 8,700개이다.

26)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 구성원은 가구주,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 Ⅳ-1〉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수입 분류

총수입	소 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가구주 급여소득
				가구주 상여금
				배우자 급여소득
				배우자 상여금
				기타가구원 급여소득
				기타가구원 상여금
			사업소득	가구주 사업소득
				배우자 사업소득
				기타가구원 사업소득
				주택 등 임대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재산소득
			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연말정산 환급금
				가구 간 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경조소득	
			퇴직수당	
			기타 비경상소득	
	기타수입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저축 및 보험탄 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유가증권 매각	
			보증금 회수	
			부동산 매각	
			기타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부동산관련 빌린 돈	
			기타 빌린 돈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	자산이전수입	

자료: 통계청(2011, p. 41, p. 92)을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지출분류를 보면 아래의 〈표 Ⅳ-2〉와 같다. 가구의 총지출은 크게 가계지출, 기타 지출, 자산이전으로 분류된다. 가계지출은 다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중분류된다. 여기서 소비지출[27]은 ①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② 주류 및 담배, ③ 의료 및 신발, ④ 주거 및 수도 · 광열, ⑤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⑥ 보건, ⑦ 교통, ⑧ 통신, ⑨ 오락 · 문화, ⑩ 교육, ⑪ 음식 · 숙박, ⑫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 12개의 소분류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각의 소분류 항목들은 총 392개의 세부 소비항목으로 재차 구분된다. 한편 비소비지출은 ① 경상조세, ② 비경상조세, ③ 연금, ④ 사회보장, ⑤ 이자비용, ⑥ 가구 간 이전지출, ⑦ 비영리단체로 이전 등 7가지 항목으로 소분류되며, 24개의 세부항목으로 구분된다. 기타 지출은 ①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과 ②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등 2가지로 구분된다.

〈표 Ⅳ-2〉 가계동향조사 가구 지출 분류

총지출	가계지출	소비지출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2. 주류 및 담배
			03. 의류 및 신발
			04. 주거 및 수도광열
			0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6. 보건
			07. 교통
			08. 통신
			09. 오락 · 문화
			10. 교육
			11. 음식 · 숙박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소비지출	01. 경상조세
			02. 비경상조세
			03. 연금
			04. 사회보장
			05. 이자비용
			06. 가구 간 이전지출
			07.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기타지출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자산이전		

자료: 통계청(2011, pp. 41~50)을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27) 통계청은 소지지출의 항목분류는 UN 등에서 권고하는 COICOP(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있다.

1990~2012년 동안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의 요약 통계량(summary statistics)은 다음의 〈표 Ⅳ-3〉과 같다. 먼저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1990년 39.0세에서 2012년 51.1세로 고령화라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28] 또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가구주 연령대별 분포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면, 15~30세 이하의 가구 비중은 1990년 19.9%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2년 3.3%에 도달한 반면, 61세 이상의 가구 비중은 1990년 2.5%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2년 25.7%에 도달하였다. 1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를 보면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1990년 4명에서 2012년 2.8명으로 지속적으로 가구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증가하고 가구원 수는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각각의 표준편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 측면에서 가구의 이질성이 점점 더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구주의 교육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미만의 학력 비중은 1990년 31.7%에서 2012년 26.5%로 감소한 반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비중은 1990년 19.9%에서 2012년 35.5%로 증가하였다.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추이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2010년 100.0)[29]를 반영하여 실질로 환산하였을 때 1990년 210.6만원에서 2012년 334.6만원으로 22년 동안 1.59배, 연평균 2.13%씩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 기간 동안 실질GDP는 2005년 구계열 기준 3.0배, 연평균 5.1%씩 증가한 사실에 비해 가구 소득의 증가는 대략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 추이를 보면, 1990년 135.4만원에서 2012년 203.0만원으로 22년 동안 1.5배, 연평균 1.86%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비해 소비의 증가 속도가 다소 낮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28) 물론 가계동향조사의 설문대상 가구가 2003년부터 도시가구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비농가로 확대되었고, 2006년에는 1인 가구도 포괄함에 따라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진 경향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고령화 및 핵가족화라는 인구구조 및 가구구성 변화는 동일 가구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2010년과 2012년 간의 격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9)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는 1990년 44.5, 1995년 60.2, 2000년 73.1, 2005년 86.1, 2010년 100.0, 2012년 106.3이다.

〈표 Ⅳ-3〉 가계동향조사 가구의 요약 통계량

(단위: 세, 명, %, 만원)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평균 연령	39.00 (261.40)	41.41 (294.84)	44.06 (422.05)	46.72 (393.72)	49.88 (522.32)	51.11 (541.98)
평균 가구원 수	4.00 (31.90)	3.73 (29.94)	3.53 (39.03)	3.35 (34.36)	2.84 (50.68)	2.81 (51.24)
연령대 분포						
~ 30	19.91	13.66	10.79	5.81	5.50	3.29
31 ~ 40	40.74	41.02	32.42	27.69	22.35	21.73
41 ~ 50	25.7	24.98	28.76	33.79	28.56	28.80
51 ~ 60	11.13	14.52	17.75	18.15	20.38	20.53
61 ~ 70	2.13	4.57	8.34	10.20	14.18	14.80
71 ~	0.39	1.25	1.94	4.37	9.03	10.85
교육수준 분포						
고졸 미만(재학·중퇴)	31.69	26.92	26.15	26.41	27.81	26.47
고졸	44.13	42.56	41.37	40.06	35.04	34.42
(전문)대학 재학·중퇴	4.27	3.21	4.03	3.30	4.23	3.60
(전문)대학 졸업	18.01	24.04	24.7	26.56	28.25	30.48
대학원 재학 이상	1.90	3.26	3.75	3.67	4.67	5.04
월평균 소득	93.8 (1,380.9)	187.1 (2,596.4)	222.1 (4,814.2)	289.8 (5,828.6)	317.7 (8,632.3)	355.6 (9,809.2)
월평균 소비지출	60.3 (1,036.7)	112.5 (1,634.6)	148.4 (2,893.9)	187.2 (3,240.9)	200.2 (4,809.7)	215.7 (5,276.8)

표본 가구수	
1990년	9,298가구
1995년	10,573가구
2000년	6,413가구
2005년	11,367가구
2010년	10,667가구
2012년	10,401가구

주: 1. ( )은 표준편차를 의미
2. 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한 정의 및 구성은 위의 〈표 Ⅳ-1〉과 〈표 Ⅳ-2〉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연령, 교육수준은 가구주 기준, 가구원 수, 소득, 소비지출은 가구 기준이다.

2. 유효 세부담 산출 방법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석에 사용된 세부담 산출 방법론을 기술한다. 먼저, 제Ⅲ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에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 부가가치세율 개념을 적용하여 기본부문별 유효 부가가치세율을 도출한다. 그런 다음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과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항목별 소비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연계 작업을 통해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별 유효세율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소비항목별 유효 세부담을 도출하고 가구 단위로 그 세부담을 합산함으로써 가구단위의 유효 세부담을 생산한다.

일반적으로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과 기본적인 산업부문 간에는 그 범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항목이 포함되는 산업부문을 찾아 연결시키는 가운데 연구자들의 재량적인 판단이 일부 개입될 여지가 있음을 밝힌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분은 1990년 이후 약 384~405개로 구분되어 있다.[30]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은 식료품, 주류, 의료, 주거, 보건, 교육 등 12개의 분류에 총 392개의 세부 소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31]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과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항목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개인이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이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보다 더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다.[32]

예를 들면, 육류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생육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에서는 도축육, 가금

30) 1990년 405개, 1995년 402개, 2000년 404개, 2005년 403개, 2010년 384개로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분류 항목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31)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2절 분석 자료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32) 산업연관표의 경우 개인이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뿐만 아니라 비소비재화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재의 구분이 가계동향조사보다 상세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육, 기타축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표상에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모두 산업연관표의 도축육에 연계하였고 도축육의 유효세율을 소고기와 돼지고기라는 소비항목에 대한 유효세율로 간주하였다. 다른 예로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과일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그 유형별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고, 채소도 배추, 상추, 시금치, 미나리, 깻잎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표 기본부문에서는 과실과 채소로만 구분되어 있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책상, 의자, 소파, 장롱 등으로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산업연관표에서는 목재가구, 금속가구, 기타가구로 구분하고 있다. 책상의 경우에는 목재가구일 수도 있고, 금속가구일 수도 있고, 또는 기타가구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본 연구에서는 이들 3가지 기본 산업부문을 모두 책상이라는 소비항목에 연계하였고, 3개 기본 산업부문의 유효세율 평균을 책상이라는 소비항목의 유효세율로 사용하였다. 의류의 경우에도 가계동향조사의 '남성용 외의'의 경우에는 산업연관표의 봉제의류, 편조의류, 가죽의류 모두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들 3개 기본부분과 연계시켰다.

3. 유효 세부담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1990년 이후 산업연관표의 실측표 및 연장표가 발표된 해인 1990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10년, 2012년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에 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및 그에 대한 논의를 수행한다.

가. 소득계층별 및 소비계층별 유효 세부담 추이 분석

1) 고령가구의 분포 추이

소득계층별 및 소비계층별 유효 세부담 분석에 앞서서 우리나라 가구의 세부담 추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령가구의 분포 추이를 검

토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가구는 평균소비성향이 높고 다른 연령대와는 다른 소비구조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교육분야의 소비지출 비중 낮고 미가공식료품이나 의료분야의 소비지출 비중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특성을 지닌 고령가구의 비중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가구의 소득분위 및 소비분위별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유효 세부담 추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아래의 [그림 Ⅳ-1]과 같이 소득분위별 고령가구의 추이를 보면,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분석기간 동안 거의 모든 소득분위에서 고령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득 하위 1분위에서의 증가는 매우 두드러진다. 1990년 기준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 중 고령가구의 비율은 5.3%였지만 2013년에는 73.5%로 증가하여 4가구 중 3가구가 고령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2분위에서도 1990년 고령가구 비중은 3.3%였지만 2012년에는 47.6%로 2가구 중 1가구는 고령가구로 파악되었다. 물론 분석기간 동안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되는 고령가구의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설문조사가 확대 개편[33]되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고령가구 비중이 확대되는 현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아래의 [그림 Ⅳ-2]와 같이 소비분위별 고령가구의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분석기간 중 모든 소비분위에서 고령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하위 소비분위에서의 고령가구 비중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소비 1분위에서는 1990년 3.9%의 가구가 고령가구였지만 2012년에는 71.5%가 고령가구로 변화하였다. 소비 2분위에서도 고령가구의 비중은 1990년 2.5%에서 2012년 46.2%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소득분위 및 소비분위에서의 고령가구의 비중 변화는 고령가구의 소비행태가 동 분위에서의 세부담 추이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33) 가계동향조사의 설문대상 가구는 2003년부터 도시가구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비농가로 확대되었고, 2006년에는 1인 가구도 포괄하도록 확대 개편되었다.

것임을 시사한다.

[그림 Ⅳ-1] 소득분위별 고령가구의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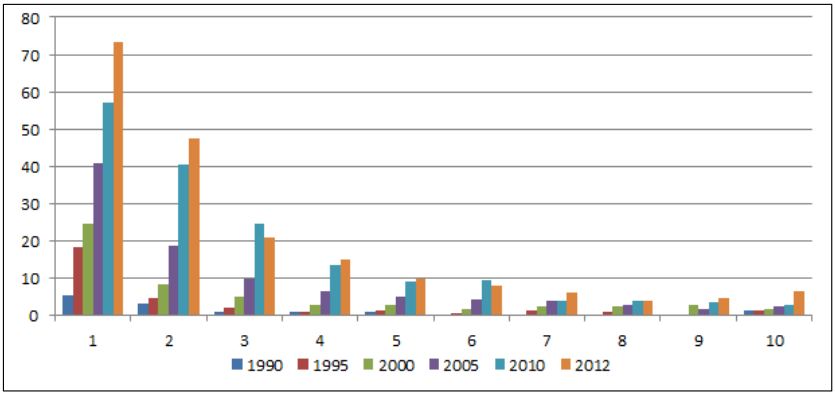

[그림 Ⅳ-2] 소비분위별 고령가구의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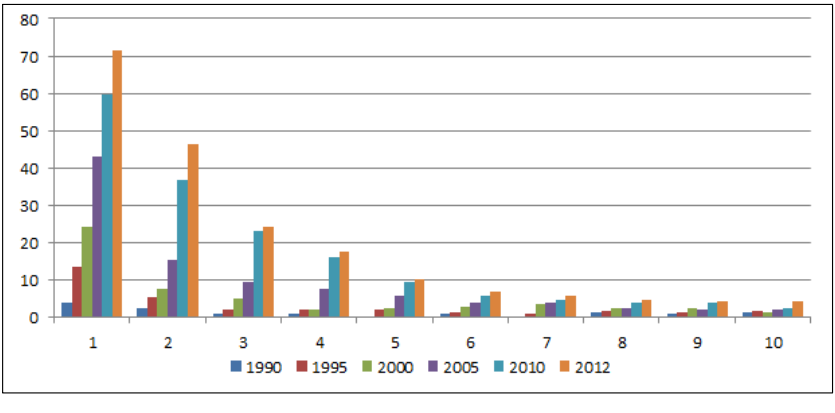

2) 소득계층별 유효 세부담 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서 소득계층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구성된 소득을 중심으로 구분된다. 즉, 소득계층 구분의 기준 소득은 가구의 자산수준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모든 현금과 현물의 수입을 뜻하며, 자산의 거

래나 이전으로 인한 손익이나 자산의 보유로 인한 평가손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먼저, 〈표 Ⅳ-4〉~〈표 Ⅳ-9〉의 첫 번째 열은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의 연간 자료에 존재하는 가구를 소득 10분위별 구간을 나타낸다.[34] 두 번째 열은 소득 10분위별 평균소비성향[35]의 중위수를 나타낸다.[36] 여기서 평균소비성향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의 정의를 사용하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로 정의한다. 분석 결과, 모든 분석 연도에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하여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에 대하여 감소함수라는 일반적인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2012년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약 78.2%이고, 소득이 제일 낮은 계층인 1분위 집단(117.9%)에서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꾸준히 그 비율이 낮아져서 10분위의 최상위 소득집단에서는 평균적인 평균소비성향이 약 56.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이후의 분석 연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1990년과 1995년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각각 95.0%, 97.4%였던 반면, 2000년 113.8%, 2005년 119.6%, 2010년 121.2%로 계속 증가하였다가 2012년 다시 117.9%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37] 이처럼 1분위 집단에서 평균소비성향이 100%보다 클 수 있는 이유는 고령가구의 존재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가구는 소득의 핵심 구성요소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거의 없어서 소득수준은 낮지만 근로기

34) 아래의 분석에서는 성명재(2002, pp. 33~35)가 주목한 바와 같이 소득변수와 소비변수를 연간단위로 전환 시 계절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가계동향조사 가구 중 12개월 모두 존재하여 계절성의 문제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이 양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다.

36) 중위수가 아닌 평균값을 사용하면 1분위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은 매우 작지만 소비지출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가구가 전체 계급을 좌우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중위수를 사용하고 있다.

37) 소득이 제일 낮은 계층인 1분위 집단을 제외하고 평균소비성향이 100%를 초과하는 집단은 분석 연도 내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 동안 축적한 자산을 축소(dissaving)해 가면서 기존의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 1분위 집단에서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 연도마다 살펴본바 1990년 5.3%, 1995년 18.25, 2000년 24.6%, 2005년 40.9%, 2010년 55.1%, 2012년 73.5%로 크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령가구 비중의 증가로 인해 소득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990년과 1995년의 평균소비성향이 100% 미만이었던 이유는 고령가구의 비중이 20%에도 미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Ⅳ-4〉~〈표 Ⅳ-9〉의 세 번째 열은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부담액 평균을 보여준다. 모든 분석 연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유효 부담액 자체는 평균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부담액 평균은 약 182.6만원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소득이 제일 낮은 계층인 1분위 소득집단의 세부담액은 42.7만원인 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꾸준히 세부담액은 증가하여 최상위 소득집단인 10분위에서는 평균 348.9만원을 부담하여 1분위 집단보다 8.1배 정도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소비지출의 절대액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부합한다.

한편 〈표 Ⅳ-4〉~〈표 Ⅳ-9〉의 네 번째 열은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유효 세부담 비율을 나타낸다. 모든 분석 연도에서 소득 대비 유효 세부담 비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소득을 기준으로 세부담 비율을 측정한다면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비율은 소득이 낮은 분위에서 더 높은 역진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평균소비성향이 소득의 감소함수이고 모든 재화나 용역에 단일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순수한' 부가가치세 체계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에서 역진성이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이다.[38]

38) 단일 세율을 갖는 '순수한' 부가가치세 체계에서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 유효세율과 명목세율이 동일하다. 따라서 소득 대비 세부담의 비율은 바로 평균소비성향과 명목세율의 곱이 된다. 이때 명목세율은 모든 소득수준에 동일한 상수인 반면 평균소비성향은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1분위 소득집단의 소득기준 세부담 비율은 7.3%이고, 소득 분위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분위 집단에서는 3.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진적인 현상은 모든 분석 연도에서 발생하고 있고, 과거보다 최근에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1990년의 경우 소득 1분위의 소득기준 세부담 비율은 소득 10분위의 세부담 비율의 1.4배인 반면, 2012년에는 2.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Ⅳ-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 10분위의 세부담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폭 하락하는 반면 소득 1분위의 세부담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 1분위에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9][40]

마지막으로 〈표 Ⅳ-4〉~〈표 Ⅳ-9〉의 다섯 번째 열은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유효 세부담 비율[41]을 보여준다. 모든 분석 연도에서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 즉 부가가치세의 평균유효세율은 거의 모든 분위에서 유사하거나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42] 즉 평균유효세율 관점에서 세부담 비율을 측정하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역진적인 현상을 관찰할 수 없다. 오히려 처음 4~5분위까지는 소득분위가 증가하며 세부담 비율 증가하는 누진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1분위 소득집단의 평균유효세율은 7.1%이고, 소득 분위가 올라가면서 상승하여 4분위(7.8%)에서 정

소득에 대하여 감소하는 함수이다. 따라서 평균소비성향의 변화만이 세부담율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39)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1990년 5.3%, 1995년 18.2%, 2000년 24.6%, 2005년 40.9%, 2010년 55.1%, 2012년 73.46%로 파악되었다.

40) 일시적인 실직으로 소득이 급감하였지만 쌓아 둔 자산이 있어서 기존의 소비를 지탱할 수 있는 가구도 평균소비성향이 높겠지만 이러한 가구가 시간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할 수는 없다.

41) 이하에서는 소비지출 대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비율을 부가가치세의 평균유효세율이라고 부른다. 물론 소비지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평균유효세율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42) [그림 Ⅳ-3]~[그림 Ⅳ-8]을 참조하기 바란다.

점에 도달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 분위들에 대해서는 7.7~7.8%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이 모든 분석 연도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소득분위에서 과거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평균유효세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면, 소득 1분위의 평균유효세율은 1990년 6.2%에서 2012년 7.1%로 1.14배 증가하였고, 소득 10분위에서도 7.1%에서 7.7%로 1.0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Ⅳ-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소득분위에서 평균유효세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세수성과(revenue performance)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음을 시사한다.[43]

43) 부가가치세 세수성과의 지표로서 사용되는 C-efficiency는 통상 소비 대비 부가가치세수를 단일 표준세율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Keen(2013)에서는 C-efficiency (E^c)를 $E^c = \frac{V}{\tau_s C}$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V는 부가가치세수, τ_s는 단일 표준세율, C는 소비를 나타낸다. 본고의 소비기준 세부담 비율을 명목세율 10%로 나눠주면 C-efficiency와 동일한 개념이 된다. 그리고 명목세율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기준 세부담 비율의 변화는 C-efficiency의 변화를 의미한다.

〈표 Ⅳ-4〉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2년

(단위: 만원, %)

소득분위	평균소비성향 (%)	세부담액	세부담률	
			소득기준	소비기준
1	117.9	42.8	7.26	7.11
2	94.6	74.9	5.83	7.35
3	87.0	111.8	5.45	7.68
4	83.3	144.5	5.17	7.81
5	79.2	175.6	4.98	7.79
6	78.1	200.5	4.81	7.75
7	73.6	226.6	4.69	7.77
8	70.8	252.7	4.33	7.76
9	64.6	282.3	4.02	7.85
10	56.5	347.0	3.34	7.75
전체[1)]	78.2	182.6	4.80	7.67

주: 1) 각 소득 10분위별 값 및 평균소비성향 전체값은 평균이 아닌 중위수 기준이다.

[그림 Ⅳ-3]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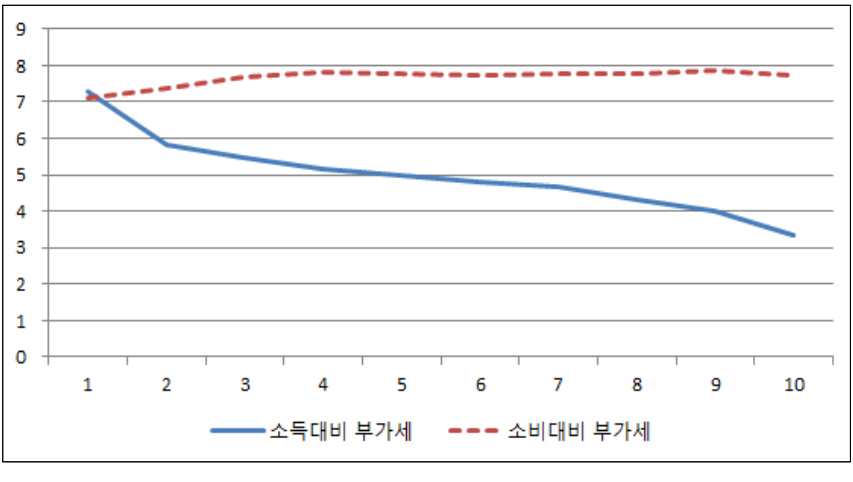

〈표 Ⅳ-5〉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0년

(단위: 만원, %)

소득분위	평균소비성향 (%)	세부담액	세부담률	
			소득기준	소비기준
1	121.2	39.7	7.79	7.04
2	97.4	67.7	5.65	7.22
3	85.9	99.1	5.33	7.58
4	84.6	130.3	5.24	7.61
5	83.7	163.0	5.14	7.68
6	78.8	178.5	4.80	7.58
7	74.1	203.1	4.68	7.66
8	74.5	228.4	4.39	7.61
9	67.3	259.1	4.07	7.65
10	61.6	317.4	3.60	7.59
전체[1)]	79.3	167.7	4.90	7.65

주: 1) 각 소득 10분위별 값 및 평균소비성향 전체값은 평균이 아닌 중위수 기준이다.

[그림 Ⅳ-4]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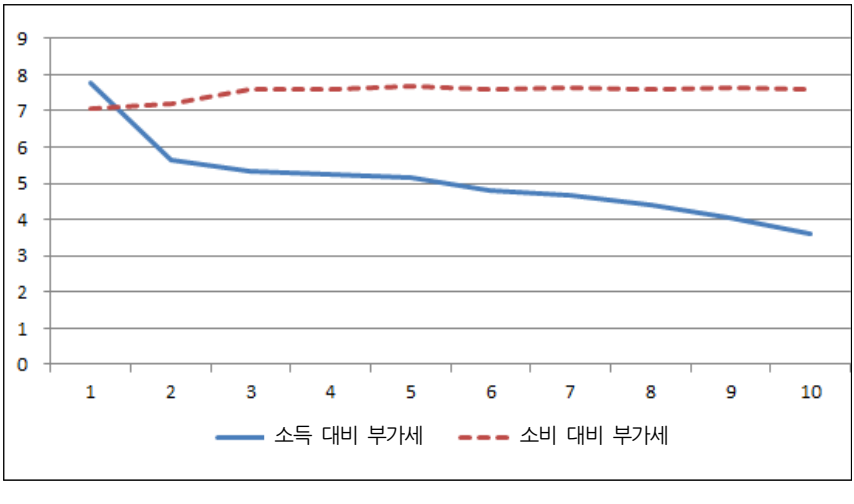

〈표 Ⅳ-6〉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05년

(단위: 만원, %)

소득분위	평균소비성향 (%)	세부담액	세부담률	
			소득기준	소비기준
1	119.6	59.7	7.20	6.96
2	96.5	88.5	5.77	7.12
3	89.0	111.1	5.49	7.23
4	87.0	130.4	5.28	7.28
5	79.9	144.1	4.94	7.37
6	77.9	159.2	4.74	7.36
7	73.0	172.4	4.43	7.38
8	70.7	187.6	4.23	7.29
9	65.5	211.3	3.93	7.35
10	60.5	267.3	3.56	7.35
전체[1)]	79.6	149.4	4.82	7.27

주: 1) 각 소득 10분위별 값 및 평균소비성향 전체값은 평균이 아닌 중위수 기준이다.

[그림 Ⅳ-5]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0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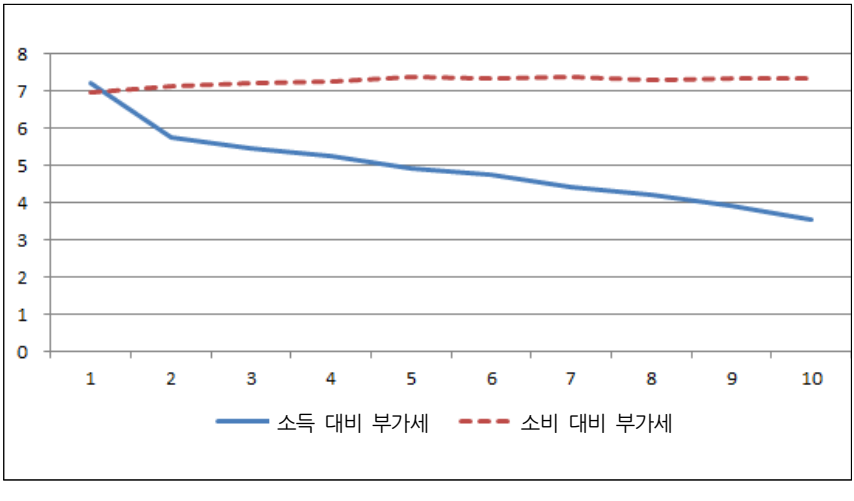

〈표 Ⅳ-7〉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00년

(단위: 만원, %)

소득분위	평균소비성향 (%)	세부담액	세부담률	
			소득기준	소비기준
1	113.8	53.5	6.62	7.00
2	94.8	75.5	5.77	7.16
3	88.2	88.1	5.37	7.19
4	83.4	97.4	5.05	7.33
5	82.9	110.9	4.99	7.27
6	78.8	120.9	4.73	7.28
7	77.4	136.3	4.71	7.34
8	75.4	149.7	4.48	7.33
9	70.2	164.7	4.15	7.29
10	65.1	216.3	3.85	7.43
전체[1)]	81.6	114.6	4.91	7.25

주: 1) 각 소득 10분위별 값 및 평균소비성향 전체값은 평균이 아닌 중위수 기준이다.

[그림 Ⅳ-6]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0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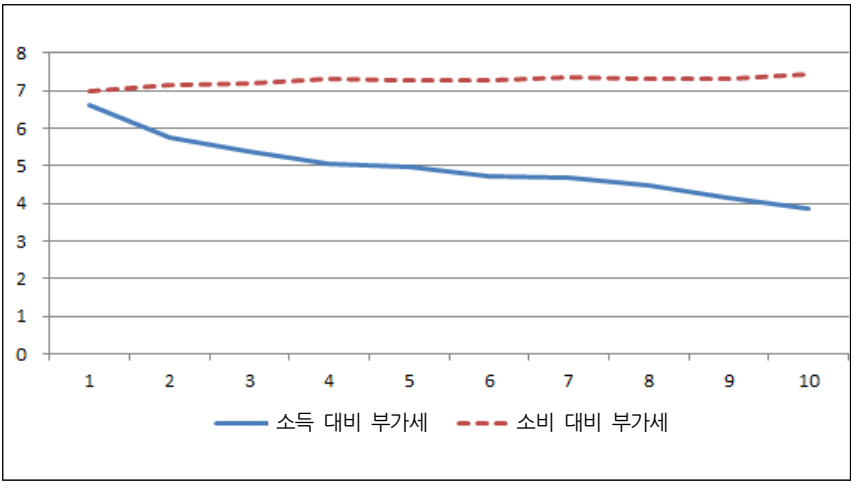

〈표 Ⅳ-8〉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1995년

(단위: 만원, %)

소득분위	평균소비성향 (%)	세부담액	세부담률	
			소득기준	소비기준
1	97.4	39.0	5.36	6.41
2	80.7	56.0	4.69	6.73
3	74.3	63.3	4.27	6.75
4	71.8	70.1	4.08	6.84
5	69.8	77.5	4.00	6.79
6	65.9	82.1	3.76	6.90
7	67.8	92.0	3.78	6.88
8	64.6	100.1	3.61	6.84
9	62.0	115.5	3.48	6.93
10	57.3	148.5	3.29	7.10
전체[1)]	70.5	80.1	4.03	6.84

주: 1) 각 소득 10분위별 값 및 평균소비성향 전체값은 평균이 아닌 중위수 기준이다.

[그림 Ⅳ-7]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199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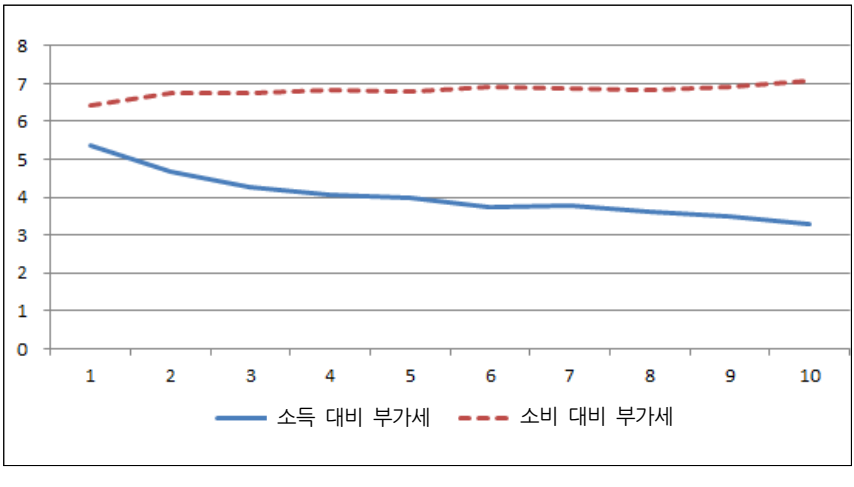

〈표 Ⅳ-9〉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1990년

(단위: 만원, %)

소득분위	평균소비성향 (%)	세부담액	세부담률	
			소득기준	소비기준
1	62.9	18.0	3.47	6.35
2	64.0	25.3	3.69	6.64
3	68.0	30.1	3.94	6.67
4	68.8	34.4	3.91	6.66
5	70.3	38.8	4.05	6.70
6	74.4	43.7	4.25	6.75
7	76.9	48.9	4.24	6.60
8	79.7	57.9	4.50	6.80
9	83.8	72.5	4.61	6.82
10	94.6	106.9	5.41	7.19
전체[1)]	74.1	40.6	4.19	6.73

주: 1) 각 소득 10분위별 값 및 평균소비성향 전체값은 평균이 아닌 중위수 기준이다.

[그림 Ⅳ-8]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199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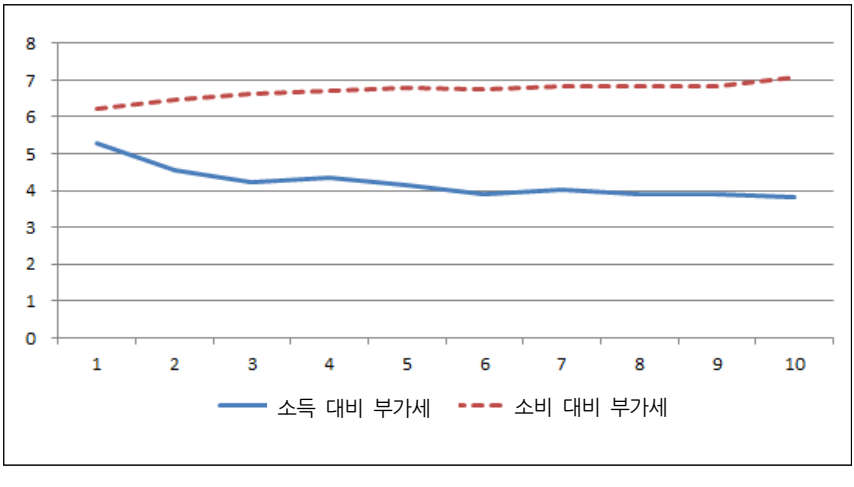

[그림 Ⅳ-9]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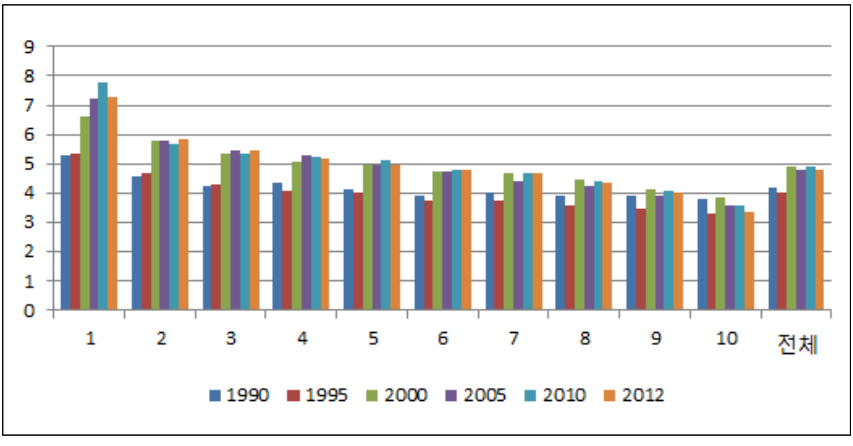

[그림 Ⅳ-10] 소득분위별 소비 대비 세부담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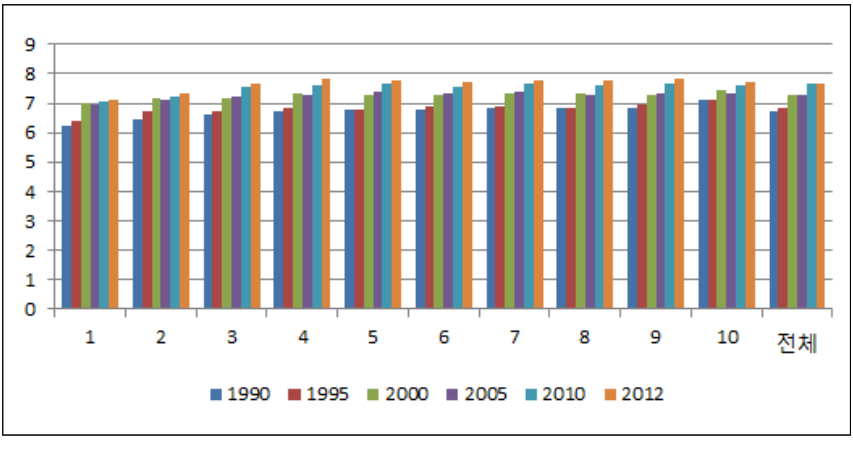

3) 소비계층별 유효 세부담 분석

Poterba(1989)가 미국의 개별소비세 세부담 분포에 대한 분석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가구들은 단기 소득이 아닌 예상되는 생애소득에 기초하여 소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생애소득/항상소득 가설에 따라 소비는 연간 소

득보다도 생애소득을 더 잘 대리하는 변수가 된다. 또한 Crossley et al. (2009)이 주목한 바와 같이 소득은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단기 변동성이 상당하지만 소비지출은 대출 또는 저축을 통해 평탄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은퇴자나 학생의 경우 현재의 소득은 낮은 소득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생애소득을 보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학생들은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고, 은퇴자는 축적한 자산을 줄이면서 소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높은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모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비를 위해 상당 부분을 저축을 할 것이다. 이처럼 소비를 시점 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하는 행태로 인해 소비지출이 가계의 생활수준을 더 잘 포착하는 지표로 본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소득상태보다는 생애소득이나 생활수준이 한 가구 또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더 잘 보여준다면 이를 기준으로 세부담 비율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를 기준으로 세부담의 분배를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소절에서는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10분위로 구분한 후 유효 세부담 분포를 분석한다. 먼저, 소비지출 분위별 세부담액을 보면 모든 분석 연도에서 소비지출이 높은 가구들에서 세부담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90년 소비지출 10분위의 세부담액은 1분위 세부담액의 6.0배, 1995년 5.4배, 2000년 5.3배, 2005년 5.8배, 2010년 11.2배, 2012년 10.4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소비지출 분위별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을 보면, 대체로 중간분위까지는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다가 중간분위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즉, 중간분위들에서의 세부담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소비지출 1분위의 소득기준 세부담 비율은 5.2%였고, 5분위 4.5%까지 감소하다가 상승세로 전환하여 10분위 5.1%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분석 연도마다 대체로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밖에도 소비지출 분위 간의 세부담률 차이는 소득분위 간의 세부담률 차이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의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분석에 따르면 최저 세부담률(5분위, 4.54%)에 비해 최고 세부담률(1분위 5.19%)은 겨우 0.65%p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소비지출의 중간분위까지는 역진적인 모습이 보이나 그 이후는 누진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소비지출 분위 간 소득기준 세부담 비율의 차이는 매우 미약하여 대체로 비례적인 모양을 띄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비지출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 즉 평균유효세율은 대체로 저분위와 고분위에서 낮고 중간분위에서 높은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소비지출 분위 간 세부담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90년대에는 대체적으로 고분위에서 더 높은 세부담률을 부담하고 있어서 누진적인 모습이 미약하지만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는 세부담 비율이 7~8%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대체로 비례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소비지출을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경우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이나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은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례적이거나 일부 누진적인 구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그림 Ⅳ-17]와 [그림 Ⅳ-18]에서는 분석 연도별 · 소비지출 분위별 세부담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소득기준 세부담 비율에서는 대체로 중간분위까지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 이후의 세부담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2000년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위에서는 2000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세부담이 낮아지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평균유효세율을 보면 대체로 모든 소비지출 분위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세부담 비율이 높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소득분위별 분석에서도 관찰되었던 현상이다.

〈표 Ⅳ-10〉 소비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2년

(단위: 만원, %)

소비지출 분위	세부담액	세부담률	
		소득기준	소비기준
1	39.7	5.19	7.13
2	75.5	4.93	7.53
3	111.1	4.85	7.88
4	140.5	4.58	7.89
5	172.4	4.54	7.78
6	198.3	4.72	7.79
7	227.5	4.65	7.76
8	259.3	4.81	7.68
9	305.1	4.91	7.55
10	411.3	5.05	7.68
전체[1)]	182.6	4.80	7.67

주: 1) 각 소비 10분위별 값은 평균이 아닌 중위수 기준이다.

[그림 Ⅳ-11] 소비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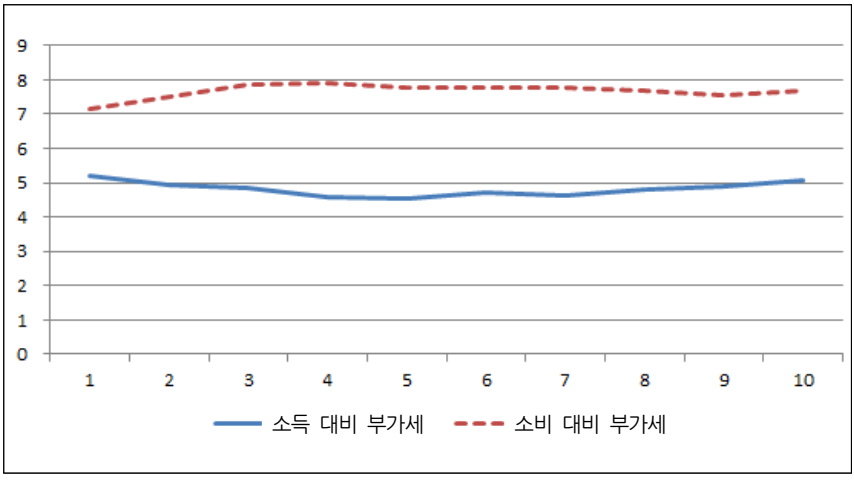

〈표 Ⅳ-11〉 소비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0년

(단위: 만원, %)

소비지출 분위	세부담액	세부담률	
		소득기준	소비기준
1	34.0	4.84	7.16
2	67.7	4.77	7.44
3	99.1	4.77	7.77
4	128.1	4.72	7.81
5	156.4	4.62	7.71
6	182.4	4.80	7.66
7	205.0	4.67	7.50
8	236.6	4.86	7.42
9	283.0	5.03	7.40
10	380.4	5.30	7.42
전체[1)]	167.7	4.90	7.65

주: 1) 각 소비 10분위별 값은 평균이 아닌 중위수 기준이다.

[그림 Ⅳ-12] 소비지출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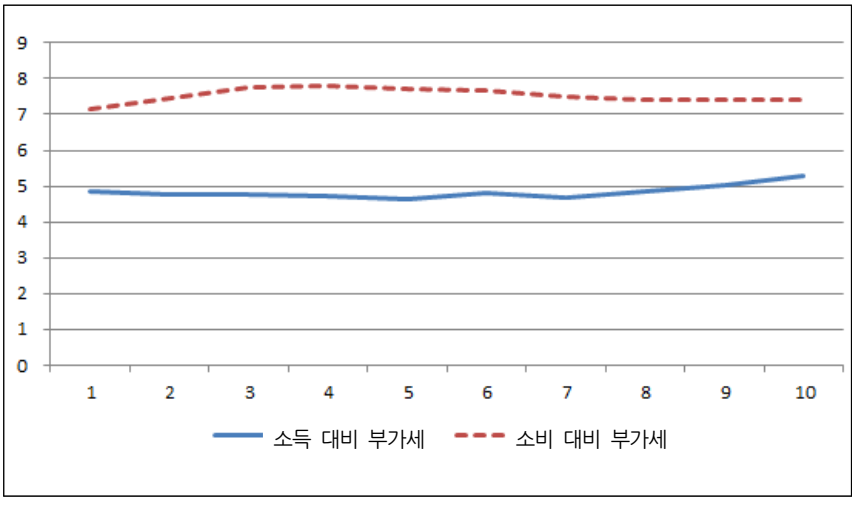

〈표 Ⅳ-12〉 소비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05년

(단위: 만원, %)

소비지출 분위	세부담액	세부담률	
		소득기준	소비기준
1	55.3	5.16	7.09
2	86.2	4.80	7.33
3	109.0	4.73	7.45
4	124.7	4.78	7.37
5	143.7	4.75	7.33
6	159.3	4.70	7.32
7	176.1	4.68	7.23
8	197.8	4.64	7.20
9	232.1	4.88	7.12
10	318.4	5.13	7.27
전체[1)]	149.3	4.82	7.27

주: 1) 각 소비 10분위별 값은 평균이 아닌 중위수 기준이다.

[그림 Ⅳ-13] 소비지출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0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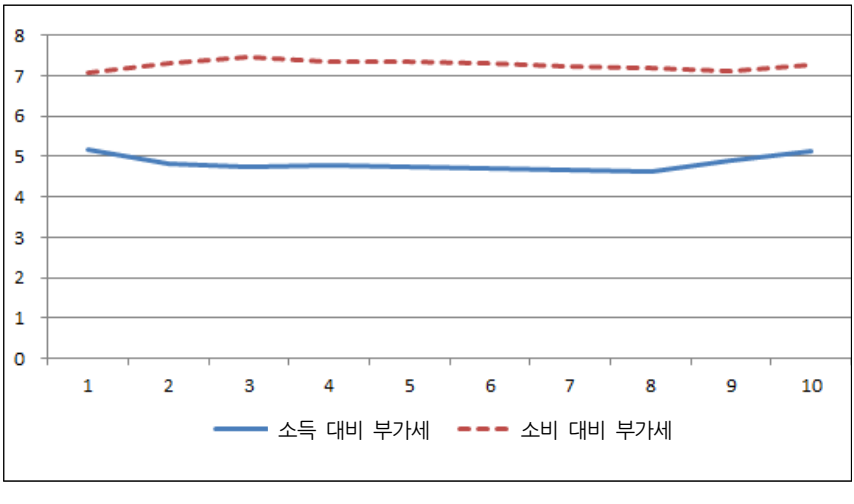

〈표 Ⅳ-13〉 소비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00년

(단위: 만원, %)

소비지출 분위	세부담액	세부담률	
		소득기준	소비기준
1	49.3	4.96	7.12
2	70.6	4.76	7.24
3	84.9	4.94	7.30
4	96.6	4.80	7.24
5	109.3	4.82	7.31
6	123.0	4.70	7.28
7	137.5	4.77	7.25
8	154.5	4.93	7.23
9	182.6	4.90	7.18
10	261.6	5.81	7.44
전체[1)]	114.6	4.91	7.25

주: 1) 각 소비 10분위별 값은 평균이 아닌 중위수 기준이다.

[그림 Ⅳ-14] 소비지출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0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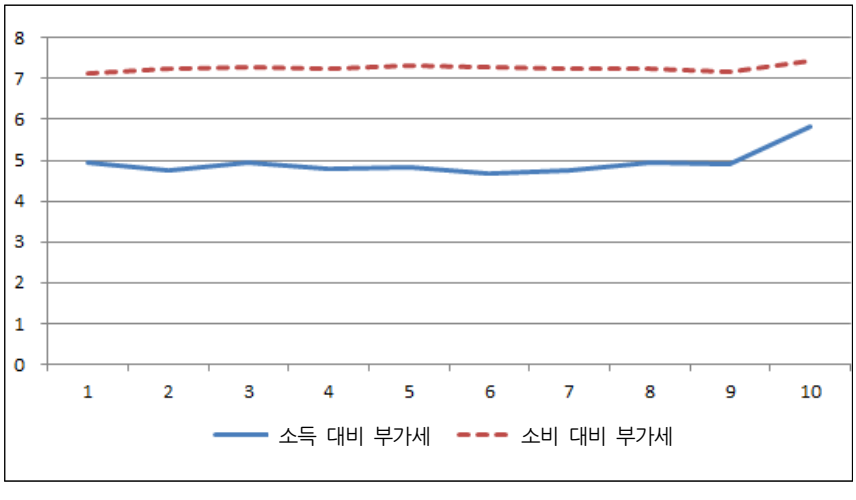

〈표 Ⅳ-14〉 소비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1995년

(단위: 만원, %)

소비지출 분위	세부담액	세부담률	
		소득기준	소비기준
1	35.2	3.77	6.62
2	50.8	3.64	6.83
3	60.7	3.76	6.82
4	67.6	3.66	6.78
5	76.3	3.73	6.78
6	86.5	4.00	6.86
7	96.6	3.98	6.75
8	112.3	4.32	6.92
9	133.8	4.51	6.85
10	189.2	5.39	7.14
전체[1)]	80.1	4.02	6.84

주: 1) 각 소비 10분위별 값은 평균이 아닌 중위수 기준이다.

[그림 Ⅳ-15] 소비지출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199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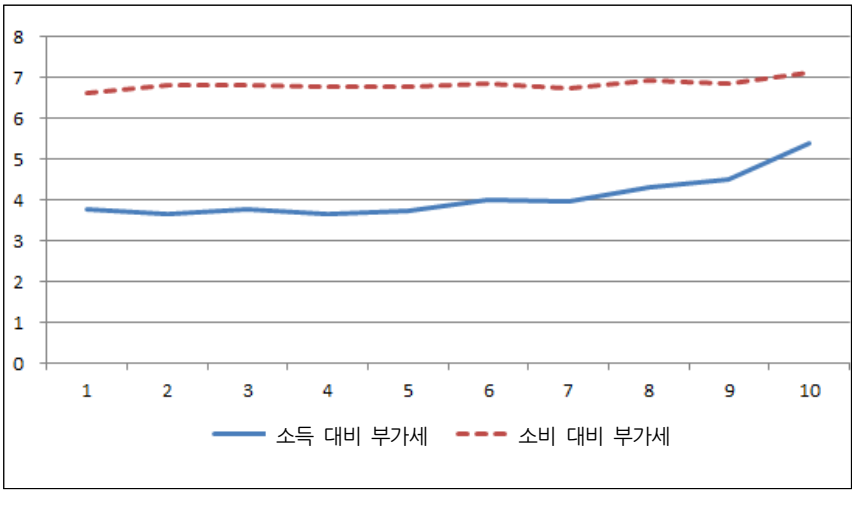

〈표 Ⅳ-15〉 소비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1990년

(단위: 만원, %)

소비지출 분위	세부담액	세부담률	
		소득기준	소비기준
1	18.0	3.47	6.35
2	25.3	3.69	6.64
3	30.1	3.94	6.67
4	34.4	3.91	6.66
5	38.8	4.05	6.70
6	43.7	4.25	6.75
7	48.9	4.24	6.60
8	57.9	4.50	6.80
9	72.5	4.61	6.82
10	106.9	5.41	7.19
전체[1)]	40.6	4.19	6.73

주: 1) 각 소비 10분위별 값은 평균이 아닌 중위수 기준이다.

[그림 Ⅳ-16] 소비지출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199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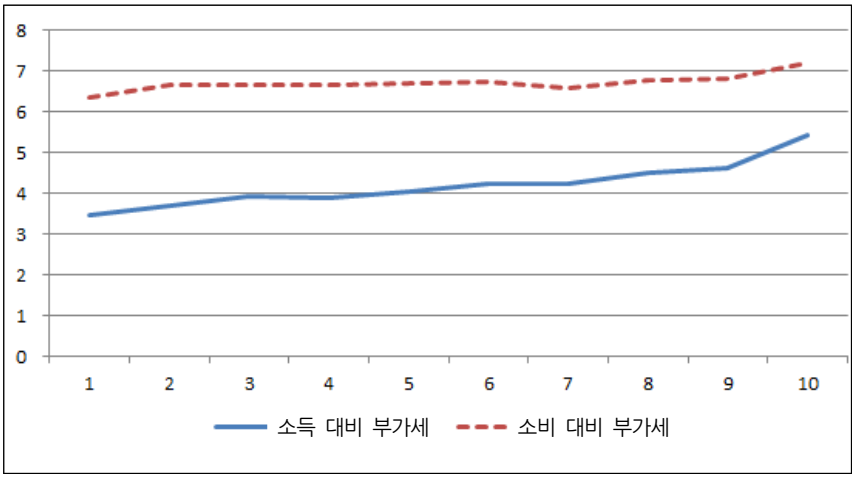

[그림 Ⅳ-17] 소비분위별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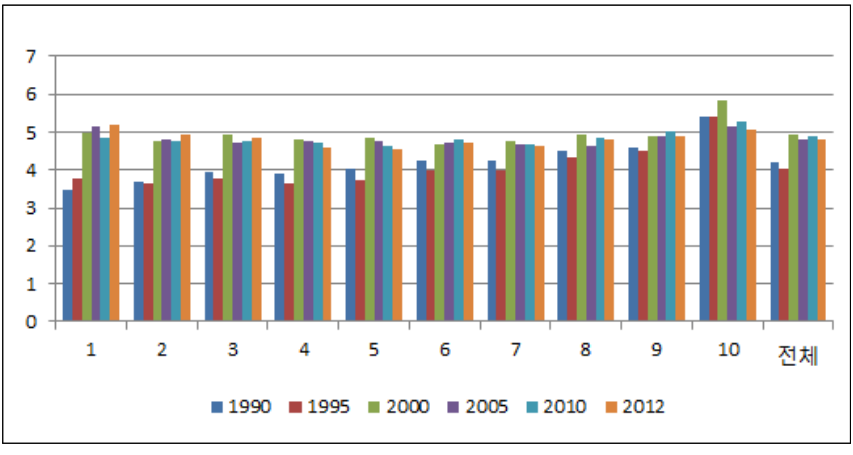

[그림 Ⅳ-18] 소비분위별 소비 대비 세부담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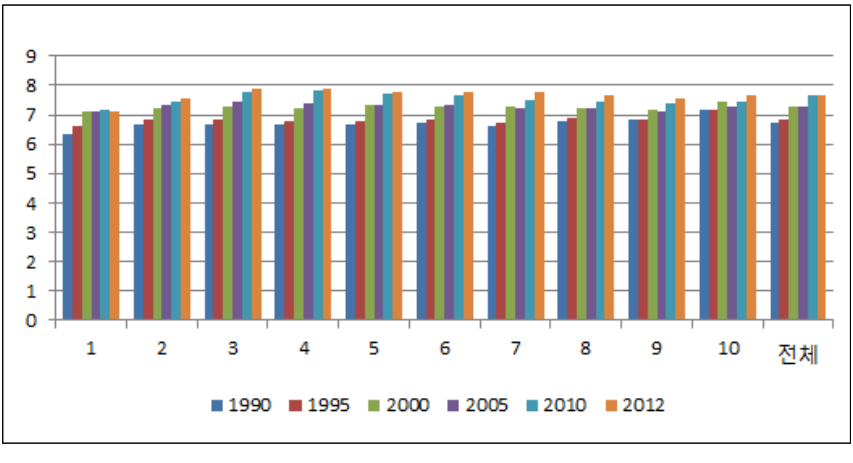

4) **소결**

앞의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연간 소득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비율은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역진적인 현상이 모든 분석 연도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역진적인

현상은 위의 [그림 Ⅳ-9]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연도로 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담 비율을 소득이 아닌 소비를 기준으로 보면, [그림 Ⅳ-10]이 보여주듯이 역진적인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비례적이거나 오히려 누진적인 구간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인 평균유효세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는 추세가 모든 소득분위에서 관찰되었다.

한편 소비지출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 소비분위별 세부담 분포를 분석한 바 세부담 비율을 소득을 기준으로 하든지 소비를 기준으로 하든지 비례적이거나 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소득분위별 세부담 분포의 분석에서 발견한 바와 같이 세부담 비율은 대체로 최근으로 오면서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유효 세부담 추이 분석의 시사점은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역진적이거나 비례적 또는 누진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역진적이라는 주장도 한편에서는 맞는 주장이고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다른 한편에서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조세부담의 중요 원칙 중에 하나인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icple)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준구((1994), p. 43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직면하는 평균유효세율이 상승하는 성격을 지닌 세제에 대해서는 누진적이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진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소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비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Poterba(1989) 및 Crossley et al.(2009)[44]에 따르면 일시적인 충격(예: 실직, 질병)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점 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연간 소득보다는 저축과 차입이라는 평탄화(smoothing) 수단을 통해 시점 간 변동성이 작은 소비가 생활수준 또는 경제적 능력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한

44) Poterba(1989) pp. 326~327, Crossley et al.(2009) pp. 97~98을 참고함.

다. 소비라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평균유효세율의 변화 또는 소득 대비 세부담의 비율을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비 분위가 올라갈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역진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래의 소득흐름을 합리적으로 기대하여 현재의 소비를 결정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놓인 상황만을 고려하는 근시안적인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불완전하여 미래소득을 담보로 자유롭게 차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관례적으로 세부담의 역진성 또는 누진성을 분석할 때 경제적 능력으로 주로 연간소득을 사용하여 왔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러한 형편을 감안할 때 세부담 논의 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경제적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Murphy, 2010).[45]

이준구(1994)[46]는 연간소득이나 소비 모두 사람들의 선택에 의한 결과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으로 완벽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모두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어느 한 기준만을 가지고 역진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소득기준과 소비기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 중 4분의 3이 현재 고령가구이고 향후 고령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소득 저위 분위에 속하는 고령가구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연간소득보다는 소비를 기준으로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효 세부담 변화요인 분석

본 소절에서는 유효 세부담의 변화를 야기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유효 세부담의 변화요인은 크게 2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유효세율에 변화를 주는 요인들이다. 본 연구에서의 유효세율은 기

45) Murphy(2010) pp.8~10를 참고함.

46) 이준구(1994) pp.484를 참고함.

본적으로 명목세율과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를 통해 산출되고 있다. 따라서 유효세율에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는 명목세율의 변화를 야기하는 제도적인 변화와 중간 투입물의 구성이 바뀌는 생산구조의 변화이다. 두 번째 유형은 소비구성에 변화를 주는 요인들이다. 소비구성의 변화는 주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야기된다고 본다.[47]

먼저, 명목세율로 대표되는 제도의 변화에 의한 유효 세부담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지난 47년 동안 변함없이 10%의 명목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제Ⅱ장에서도 보았듯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도 매년 소소한 부분에 한해 지속적으로 변경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면세제도의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유효 세부담이 이러한 부가가치세제의 제도적인 변화에 의해 받은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유효 세부담의 변화요인으로는 경제적 변화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앞서 제Ⅲ장에서 유효세율 추이 분석을 통해 언급한 바가 있다. 제Ⅲ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분류 산업군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산업연관표의 대분류도 199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많은 변화로 분류 자체에 계속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산업연관표에서 제시하는 산업분류 기준이 가장 유사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체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거나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산업군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만, 유효세율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는 산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2000년 5.17%에서 2009년 6.40%로, 음식료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2000년 7.90%에서 2009년 9.2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증가 추세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47) 이밖에도 새로운 상품의 등장, 기호의 변화 등도 소비구성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지만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런 요인들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면세제도의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면세재화보다는 과세재화의 비중이 더 커진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중간 투입물로 사용되는 재화 중 과세 재화의 비중이 더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에 비해 2009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낮아진 산업군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그리고 사회 및 기타서비스 산업들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 이들 산업군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산업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간 투입물 사용 비중이 약간 감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분석 기간을 1990년부터 2012년까지 20여 년이 넘는 기간으로 확장한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산업별로 일관성을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전체적인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보기 위해 최대한 유사한 산업군으로 묶어서 추세를 분석한바, 지난 20여 년 동안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중간 투입물로 면세 재화나 용역을, 반대로 면세인 재화나 용역은 중간 투입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예전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뜻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투입물이 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비교적 뚜렷하게 감소한 산업부문으로는 공공행정 및 국방분야가 있다. 공공행정 및 국방분야의 1990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4.6%에서 2000년 3.3%, 2012년에는 2.5%로 감소하였다. 반대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증가한 산업부문으로는 음식료품,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음식료품의 1990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7.4%에서 2000년에는 7.9%로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9.7%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특정 산업분야에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중간 투입물로 사용된 재화 중 면세 재화의 비중이 높아졌기에 가능하다. 따라서 음식료품,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분야에서는 중간 투입물로 사용한 재화 중 면세 재화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유효 세부담의 변화를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소비구성의 변화를 야기하는 인구구조 변화이다. 앞서의 제Ⅳ장 제1절의 첫 번째 소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난 20여 년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고령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고령가구의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소득 및 소비의 하위 1분위나 2분위에 속하는 고령가구의 비중이 다른 분위들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고령가구의 특징은 평균소비성향이 높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 Ⅳ-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대체적으로 85~96%인 반면, 비고령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0~81%사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령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비고령가구에 7~24%p 정도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Ⅳ-16〉 고령가구와 비고령가구의 평균소비성향 비교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고령가구(A)	96.0	94.0	93.4	88.6	85.5	89.3
비고령가구(B)	74.0	69.8	81.1	78.8	78.5	76.1
차이(A-B)	22.0	24.2	12.3	9.8	7.0	13.2

주: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중위수 기준이다. 평균을 사용하면 고령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모든 분석기간 동안 1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고령가구의 경우 면세된 재화나 용역의 소비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 Ⅳ-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가구의 면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소비비중은 비고령가구에 비해 평균 3.6~9.8%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소비비중은 비고령가구에 비해 평균 5.5~11.1%p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료·보건용역의 경우 고령가구의 소비비중은 비고령가구에 비해 0.9~6.7%p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Ⅳ-17〉 면세 재화 및 용역의 소비비중: 고령가구 대 비고령가구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모든 면세 재화 및 용역의 비중〉						
고령가구(A)	50.5	51.2	46.8	46.0	48.5	48.6
비고령가구(B)	46.8	43.2	40.5	39.0	39.8	38.9
차이(A-B)	3.6	8.0	6.3	7.0	8.8	9.8
〈미가공식료품〉						
고령가구(A)	27.8	25.8	21.2	20.5	20.1	20.2
비고령가구(B)	22.3	16.8	13.1	10.6	9.4	9.1
차이(A-B)	5.5	9.1	8.1	9.9	10.7	11.1
〈의료 · 보건용역〉						
고령가구(A)	4.1	7.1	6.9	9.3	11.1	10.8
비고령가구(B)	3.2	3.2	3.4	3.9	4.4	4.5
차이(A-B)	0.9	3.9	3.6	5.4	6.7	6.4

주: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평균 기준이다.

한편 고령가구 및 비고령가구 모두 면세 재화 및 용역의 소비비중은 최근으로 올수록 대체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고령가구 및 비고령가구 모두에서 소비구조는 대체적으로 정상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더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소비구조 전환은 고령가구에 비해 비고령가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미가공식료품의 소비비중은 고령가구 및 비고령가구 모두 크게 낮아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 추이는 비고령가구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났다. 다만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 가운데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중이 증가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료 · 보건용역의 소비비중은 고령가구와 비고령가구 모두 증가하여 왔지만 그 증가세는 고령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가구의 비중이 최근으로 올수록 저소득 및 저소비 분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저분위의 유효 세부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소득기준 1분위에서 소득 대비 유효 세부담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증가[48]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은 낮지만 평균소비성향은 높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기준 1분위의 평균유효세율은 대체로 모든 분석기간 동안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낮은 것[49]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면세 재화나 용역의 소비비중이 저소득 및 저소비 분위에서 높고 면세 재화나 용역의 소비비중이 높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서 평균유효세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대체로 모든 소득 또는 소비 분위에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비중이 낮아지는 소비구조의 변화와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고령가구 비중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주요 면세유형의 유효 세부담 및 과세전환 효과 분석

본 소절에서는 현행 면세제도를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과세로 전환할 때의 소득분배 및 세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면세제도가 없었을 때와 면세제도가 있었을 때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는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소비항목별 지출도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본 소절의 분석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구조 및 소비구조는 면세제도의 도입 및 폐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정태적인 분석이다.

한편 앞서의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면세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본 소절에서는 이 중 규모가 큰 미가공식료품,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의료·보건용역 등 4가지 주요 면세유형을 대상으로 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48) 이는 소득기준이 아닌 소비기준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49) 이런 현상은 소득기준이 아닌 소비기준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1) 주요 면세유형의 유효 세부담 분석

아래에서는 주요 면세유형의 유효 세부담을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단계의 분석 절차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들 중 분석하고자 하는 면세 유형과 관련된 항목을 식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계동향조사의 392개 소비항목 중 미가공식료품과 관련된 소비항목을 구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과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과의 연계 지도를 통해 분석대상 중 면세가 적용되는 소비항목들과 연계된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을 찾는다. 세 번째 단계는 관련 산업연관표 기본부문들을 면세가 아닌 과세로 전환시켜 모든 기본부문의 유효세율을 다시 산출한다. 여기서 분석대상 면세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기본부문뿐만 아니라 종전과 동일한 생산구조 아래에서 서로 연계된 다른 기본부문들의 유효세율도 변경되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산업연관표 기본부문과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 연계 지도를 활용하여 가계동향조사의 각 소비항목별로 새로운 유효세율을 도출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런 작업들을 거쳐 면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유효 세부담을 계산함으로써 특정 유형의 면세제도 유무에 따른 유효 세부담의 차이를 분석하게 된다.

먼저, 미가공식료품에 면세를 허용함에 따른 세부담 경감 효과를 살펴본다. 즉 미가공식료품을 10%의 명목세율로 정상 과제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를 허용함에 따라 가구유형별 세부담 경감 금액 및 평균유효세율 하락 정도를 분석한다.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10개의 분위로 구분할 때, 아래 [그림 Ⅳ-1]의 좌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저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 경감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는 1가구당 연 5.1만원 정도 세부담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반하여 소득 10분위에 속한 가구는 1가구당 연 2.7만원 정도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세부담 변화를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 보면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는 평균유효세율이 0.8%p 감소하였고 소득 분위가 높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소득 10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유효세율이

0.06%p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제도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기준이 아닌 소비기준으로 경제적 능력을 구분해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다. 예를 들면, [그림 Ⅳ-19]의 우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소비기준 1분위의 평균유효세율은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0.9%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하락 정도는 소비지출 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져서 소비 10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유효세율은 0.04%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 허용의 효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가구에서 세부담 경감효과(1가구당 연 7.7만원)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가구주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세부담 경감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면 가구주 연령이 35~40세인 경우 세부담 경감효과는 9천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가구주 연령이 35세 미만인 가구들의 경우 오히려 면세를 허용함으로써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소비비중은 낮은 반면 미가공식료품이 중간재로 투입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제도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에는 모든 재화나 용역이 정상 과세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모든 재화나 용역의 유효세율은 명목세율과 같은 10%이다.[50] 그런 다음,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제도가 허용되면 미가공식료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유효세율이 10%보다 낮으며 0%에 더 근접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51] 그러나 미가공식료품이 중간재로 투입된 재화나 용역의 유효세율은 환급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10%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유효세율이 낮아진 미가공식료품의 소비비중이 유효세율이 높아진 다른 재화나 용역의 소비비중보다 훨씬 낮다면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허용으로 인해 세부담이 오히려

50) 이에 대한 논리는 제Ⅲ장의 〈표 Ⅲ-1〉에 관한 본문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51) 이러한 경우 이외에 미가공식료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면세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였고 미가공식료품을 중간재로 투입하는 재화나 용역도 면세가 되는 경우라면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허용 시 유효세율이 하락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허용에 따른 가계동향조사의 392개 소비항목의 유효세율 변화를 보면, 유효세율이 감소한 소비항목들은 77개, 증가한 항목은 312개, 불변인 항목 3개로 파악되었다.[52)53)]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검토한바, 세부담액 감소분 및 평균유효세율의 형태가 'U자형'에 가까운 모양을 나타낸다. 이는 가구주의 학력이 중간단계인 가구에서 면세 허용에 따른 혜택이 가장 작고 학력이 높거나 낮은 단계의 가구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 미만인 가구에서 연간 세부담이 6.0만원 가량 감소하고 평균유효세율은 0.5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유형의 가구에 고령가구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2) 일반적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소비항목의 유효세율은 면세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크게 낮아지지만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유효세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지만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53) 불변인 항목들은 중간 투입물이 없는 가사용인급료, 식품관련서비스, 기타가사서비스 등 3가지이다.

[그림 Ⅳ-19] 미가공식료품의 면세효과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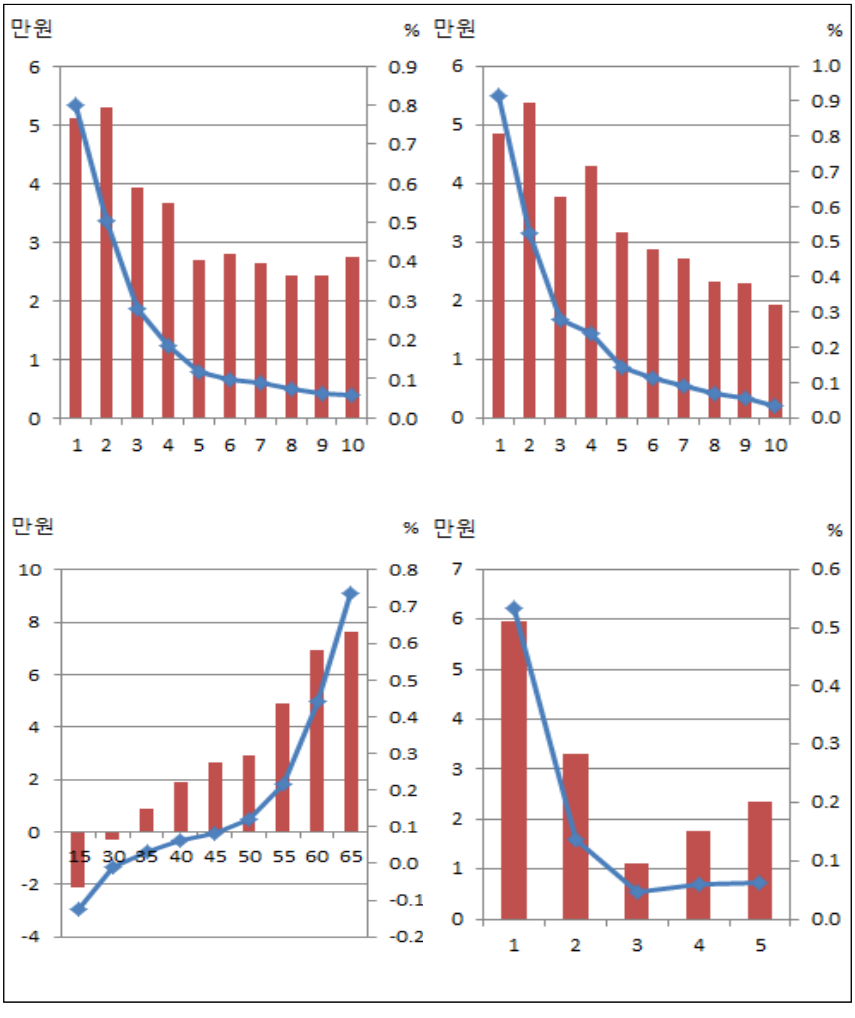

주: 1.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소득 10분위, 소비지출 10분위,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면세효과 제시

2. 학력: 1=고졸 미만; 2=고졸; 3=대학(전문대, 초대 포함) 중퇴, 휴학, 재학; 4=대학(전문대, 초대 포함) 졸업; 5=대학원 이상

3. 막대그래프는 과세일 경우의 세부담액에서 면세일 경우의 세부담액을 차감한 것이다.

4. 실선그래프는 세부담액의 변화를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한 것이 가구유형별로 어떠한 세부담의 변화를 야기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10개의 분위로 구분할 때, [그림 Ⅳ-20]의 좌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저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소득 5분위 이상부터 세부담액 감소가 발생하며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감소된 세부담액 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소득 5분위에 속한 가구는 1가구당 연 3.8만원 정도 세부담이 경감되었고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경감액이 증가하여 소득 10분위에 속한 가구는 1가구당 연 33.7만원 정도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세부담 변화를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 보면 소득 5분위에 속한 가구는 평균유효세율이 0.15%p 감소하였고 소득 분위가 높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소득 10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유효세율이 0.79%p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제도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기준이 아닌 소비기준으로 분위를 구분해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아래의 [그림 Ⅳ-20]의 우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교육용역에 면세제도를 허용함으로써 소비기준 5분위의 세부담액과 평균유효세율은 2.6만원 및 0.11%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하락 정도는 소비지출 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져서 소비 10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액과 평균유효세율은 각각 51.3만원 및 0.91%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 허용의 효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및 35세 미만의 젊은 가구에서는 세부담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자녀를 둘 가능성이 높은 중년가구(35~55세)에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구주의 연령이 45~49세인 경우 연간 32.9만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고, 평균유효세율은 1.0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혜택을 많이 본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40~44세인 가구들로 연 30.5만원의 세부담 경감과 이로 인한 0.95%p의 평균유효

세율 하락이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검토한바,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세부담 경감액이 크고 평균유효세율의 하락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구주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교육용역의 면세 허용으로 세부담액은 25.4만원 감소하고, 평균유효세율은 0.80%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교육용역의 면세 허용에 따른 가계동향조사의 392개 소비항목의 유효세율 변화를 정리하면, 유효세율이 감소한 소비항목들은 54개, 증가한 항목은 335개, 불변인 항목 3개로 파악되었다.

[그림 Ⅳ-20] 교육용역 면세효과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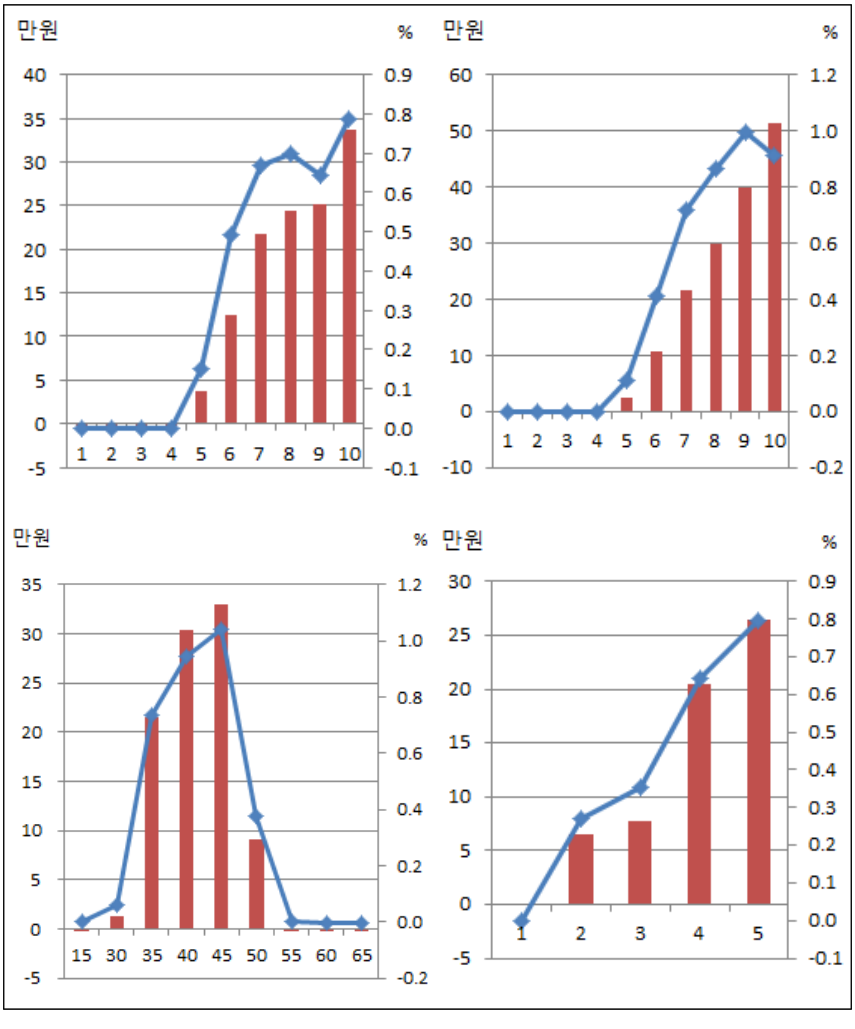

주: 1.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소득 10분위, 소비지출 10분위,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면세효과 제시

2. 학력: 1=고졸 미만; 2=고졸; 3=대학(전문대, 초대 포함) 중퇴, 휴학, 재학; 4=대학(전문대, 초대 포함) 졸업; 5=대학원 이상

3. 막대그래프는 과세일 경우의 세부담액에서 면세일 경우의 세부담액을 차감한 것이다.

4. 실선그래프는 세부담액의 변화를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 허용의 가구유형별로 세부담의 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10개의 분위로 구분할 때, [그림 Ⅳ-21]의 좌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3분위 이상에 속한 가구부터 세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는 세부담액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미가공식료품의 경우처럼 금융·보험용역에 면세를 허용함으로써 금융·보험용역을 중간생산단계에서 투입하였던 재화와 용역이 있기 때문이다. 제Ⅲ장의 제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면세가 발생하면 최종생산단계에서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가 발생하여 최종소비단계에 적용되는 유효세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분위별 평균유효세율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3분위 이상에서는 평균유효세율이 1.2~1.7%p 정도 하락하였지만 하위 1분에서는 오히려 0.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허용에 따른 가계동향조사의 392개 소비항목의 유효세율 변화를 보면, 유효세율이 감소한 소비항목들은 97개, 증가한 항목은 292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효세율이 증가된 292개 소비항목의 소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전반적인 세부담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제도는 대체로 소득 상위분위에서 평균유효세율 감소 혜택이 크기 때문에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기준이 아닌 소비기준으로 분위를 구분한바 세부담 경감 혜택이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소비기준 4~9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소비 1~2분위 및 10분위에서는 세부담 경감 규모가 작거나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기도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예를 들면, [그림 Ⅳ-21]의 우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금융·보험용역에 면세제도를 허용함으로써 소비기준 8분위의 세부담액과 평균유효세율은 1.7만원 및 0.05%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 1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액과 평균유효세율은 각각 1,300원 및 0.03%p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 허용의 효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가구에서는 면세 허용으로 인해 세부담이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보험용역의 소비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년가구(35~55세)에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구주의 연령이 50~54세인 경우 연간 32.9만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고, 평균유효세율은 1.0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혜택을 많이 본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40~44세인 가구들로 연 1.6만원의 세부담 경감과 이로 인한 0.06%p의 평균유효세율 하락이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검토한바,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 미만의 가구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고졸 이상인 가구도 세부담 경감액이 연간 0.8만원에서 1.2만원 사이에 있기에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평균유효세율의 하락 폭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Ⅳ-21] 금융 · 보험용역의 면세효과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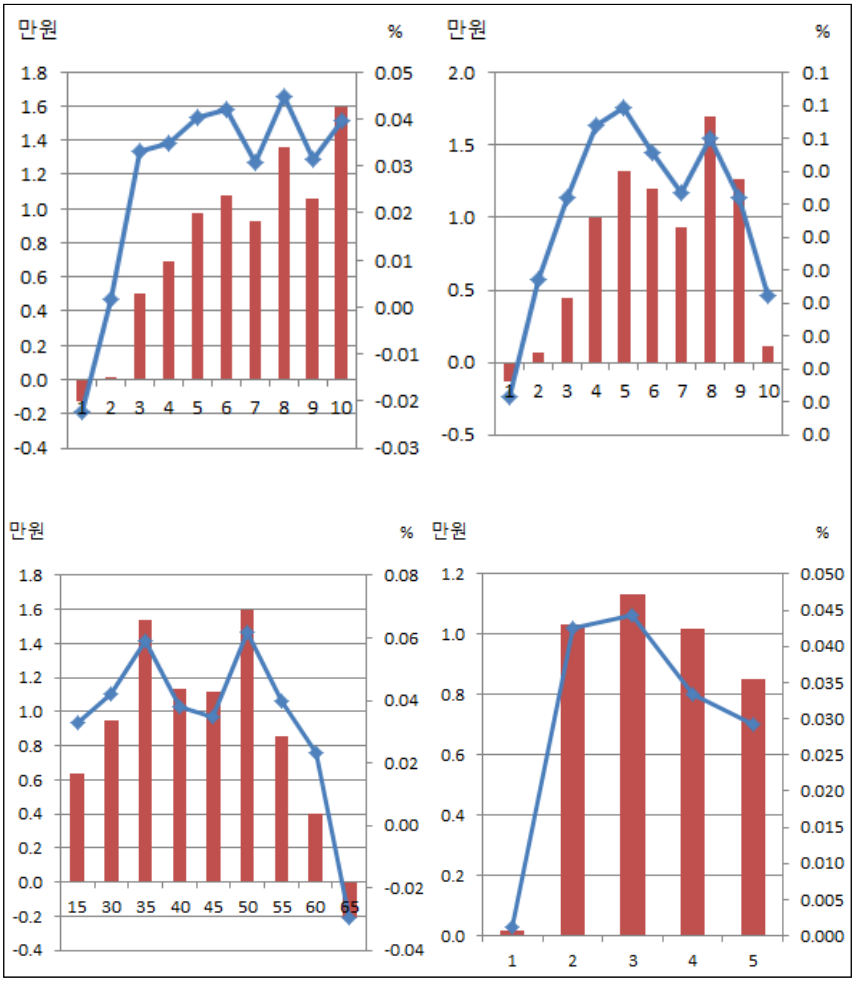

주: 1.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소득 10분위, 소비지출 10분위,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면세효과 제시

2. 학력: 1=고졸 미만; 2=고졸; 3=대학(전문대, 초대 포함) 중퇴, 휴학, 재학; 4=대학(전문대, 초대 포함) 졸업; 5=대학원 이상

3. 막대그래프는 과세일 경우의 세부담액에서 면세일 경우의 세부담액을 차감한 것이다.

4. 실선그래프는 세부담액의 변화를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 · 보건용역에 대한 면세가 가구유형별 세부담 및 평균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10개의 분위로 구분할 때, 아래의 [그림 Ⅳ-22]의 좌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세부담 경감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 경감액은 1가구당 연 2.2만원 정도이나 소득 10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액은 5.7만원 경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의료 · 보건용역에 대한 지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세부담 변화를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 보면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는 평균유효세율은 0.38%p 감소하였고 소득 분위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소득 10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유효세율이 0.13%p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의료 · 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제도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절대 금액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기준이 아닌 소비기준으로 분위를 구분해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그림 Ⅳ-22]의 우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소비기준 1분위의 평균유효세율은 의료 · 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제도로 0.37%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하락 정도는 소비지출 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져서 소비 10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유효세율은 0.12%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의료 · 보건용역에 대한 면세 허용의 효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가구에서 평균유효세율 하락 효과(0.39%p)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가구주 연령이 15~34세인 가구의 평균유효세율은 0.09%p 정도 미약하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체적으로 평균유효세율 하락 효과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검토한바, 세부담액 감소 규모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유효세율은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

고로 의료 · 보건용역의 면세 허용에 따른 가계동향조사의 392개 소비항목의 유효세율 변화를 보면, 유효세율이 감소한 소비항목들은 91개, 증가한 항목은 298개, 불변인 항목 3개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소득분배 관점에서 종합해보면, 미가공식료품 및 의료 · 보건용역의 면세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가공식료품의 경우 면세 허용에 따른 세부담 경감액도 소득분위가 낮은 쪽에서 크게 발생하였다. 이는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분위를 구분해도 낮은 분위의 경감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의료 · 보건용역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지만 경감액 절대규모로 보면 소비수준이 높은 고소득 분위 및 고소비 분위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용역이나 금융 · 보험용역의 경우 면세제도로 인해 오히려 소득분배가 나빠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세 허용으로 인해 평균유효세율의 감축효과가 소득 상위분위 및 소비 중상위 분위에서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득 저위분위 및 소비 저위분위에서는 오히려 평균유효세율이 올라가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그림 Ⅳ-22] 의료 · 보건용역의 면세효과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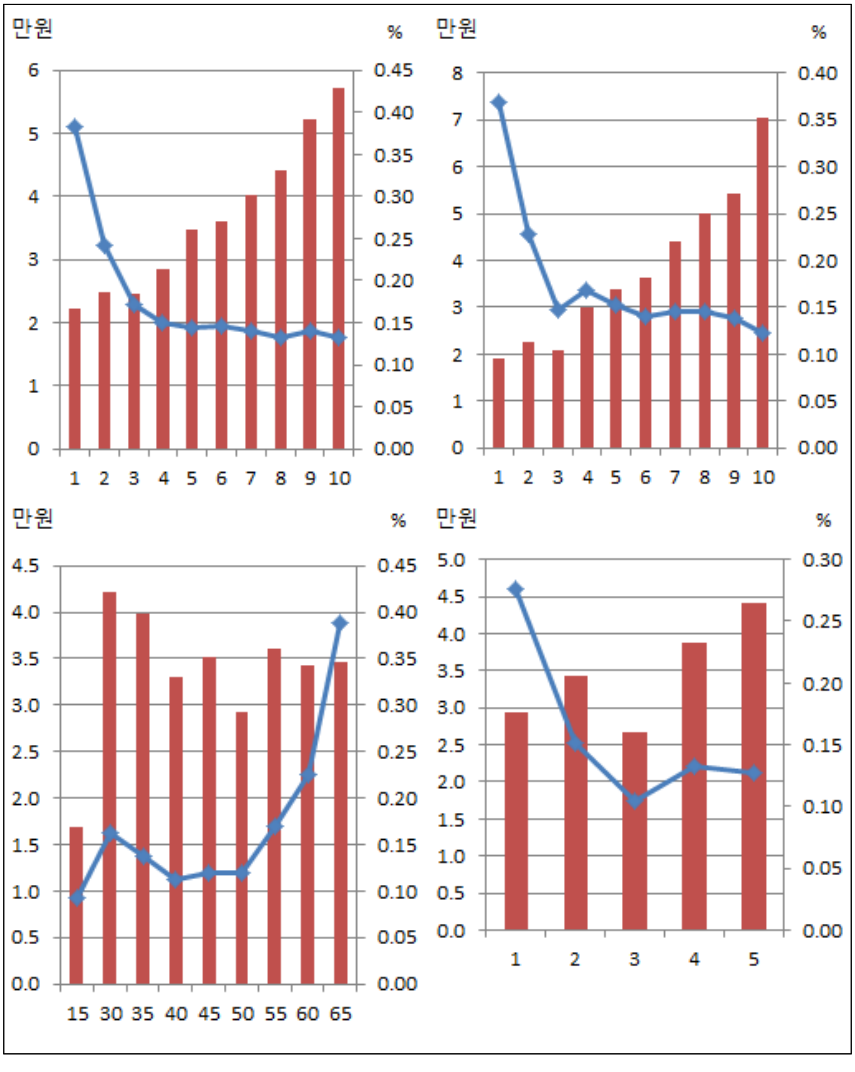

주: 1.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소득 10분위, 소비지출 10분위,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면세효과 제시

2. 학력: 1=고졸 미만; 2=고졸; 3=대학(전문대, 초대 포함) 중퇴, 휴학, 재학; 4=대학(전문대, 초대 포함) 졸업; 5=대학원 이상

3. 막대그래프는 과세일 경우의 세부담액에서 면세일 경우의 세부담액을 차감한 것이다.

4. 실선그래프는 세부담액의 변화를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2) 주요 면세유형의 과세전환에 따른 소득분배 및 세수효과

아래에서는 앞서 분석한 미가공식료품,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의료·보건용역의 면세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즉 상기 재화나 용역들에 대해 정상과세하는 경우의 소득분배 효과 및 세수효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면세제도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의 소득분배 효과는 앞의 소절에서 분석한 결과를 뒤집으면 된다. 이는 소비행태나 산업생산구조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물론 면세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 상대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소비 및 생산의 의사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만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 미가공식료품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면 소득분배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가공식료품의 경우 평균유효세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세부담 절대 금액도 소득 저위분위 및 소비 저위분위에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미가공식료품의 소비비중이 높은 65세 이상의 고령가구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보건용역의 경우도 소득 저위분위 및 소비 저위분위에서 평균유효세율 상승정도가 크기 때문에 소득분배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용역이나 금융·보험용역의 경우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면 오히려 소득분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용역의 경우 소득 및 소비 5분위에서 고위분위로 이동해 가면 세부담액이 증가하며 평균유효세율도 증가하여 누진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용역의 과세전환은 가구주의 학력이 높은 가구, 취학 자녀를 둘 가능성이 높은 중년가구(35~55세)의 평균유효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보험용역의 경우도 과세로 전환하면 대체로 소득 및 소비 분위가 높은 곳에서 평균유효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유효세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교육용역과는 달리 금융·보험용역의 경우 평균유효세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상위 분위에서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위의 4가지 면세유형을 각각 과세로 전환할 때의 세수효과를 분석한다. 2012년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모든 가구의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합산하면 32.4조원으로 추정되었다. 모든 가구의 소비지출이 42.5조원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2012년 평균유효세율은 7.63%로 파악되었다. 한편 세수통계를 보면, 2012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58.6조원(지방소비세 5% 포함)이다. 이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추정한 세수보다 약 1.8배이다. 따라서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세수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1.8 정도의 배수를 가지고 가계동향조사에서 추정된 세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가공식료품에 적용되는 면세제도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추정된 세수는 약 59.9조원으로 1.3조원의 세수증대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세수(58.6조원)보다 약 2.2%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용역을 과세로 전환 시 추정된 세수는 약 64.1조원으로 5.53조원의 세수를 더 걷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54] 이는 현행 세수(58.6조원)보다 약 9.4% 증가한 수치이다.

금융·보험용역의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할 경우 총부가가치세는 약 59.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금융·보험용역의 과세 전환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약 0.4조원으로 현행 세수보다 0.7%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의료·보건용역의 경우 과세 전환 시 약 60.6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2.0조원으로 현행 세수를 3.4% 정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4) 교육용역은 크게 공교육 영역과 사교육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사교육 영역으로 동 영역만 과세로 전환된다면 세수효과는 반감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18〉 주요 면세유형의 과세전환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조원, %)

구분		추정치	세수증가분	세수증가율
면세의 과세 전환	미가공식료품	59.86	1.27	2.16
	교육용역	64.11	5.51	9.41
	금융 · 보험용역	59.01	0.41	0.70
	의료 · 보건용역	60.56	1.97	3.36
2012년 세수		58.60		

주: 추정치는 조정배수(약 1.8)를 사용하여 산출한 수치이다.

이상과 같은 주요 면세유형의 과세전환에 따른 소득분배 및 세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가공식료품, 의료 · 보건용역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지만 교육용역이나 금융 · 보험용역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각 면세유형을 과세로 전환하면 모두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용역의 과세전환 시 세수증가분이 가장 큰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금융 · 보험용역의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세수증대를 야기하고 싶다면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4가지 면세유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에 대한 분포 추이 분석, 주요 면세유형의 소득분배 효과 분석, 유효 세부담 변화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분석할 때 왜 유효세율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를 예제를 통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재분배 등 경제적·사회적 정책목적으로 인해 특정 경제활동 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면세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면세제도 아래에서는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중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면세가 허용된 경우에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가 함께 발생하여 모든 거래가 정상 과세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면세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세부담 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목세율이 아닌 유효세율을 통해 세부담을 산출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를 활용하는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세율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연관표상 산업구분이 가장 세세한 기본부문을 대상으로 유효세율을 산출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동 방법론의 한계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을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항목들과 산업연관표상의 기본부문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산출한 유효세율을 각 가구의 소비항목별 지출액에 적용하여 소비항목별 유효 세부담을 도출한 후 모든 소비항목에 대하여 합산함으로써 가구별 유효 세부담을 추산하였다. 이 작업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및 2012년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함으

로써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추이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능력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은 낮은 소득분위에서 높고, 높은 소득분위에서 낮은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세부담 비율을 과세베이스에 해당하는 소비지출 대비로 산출하면 이러한 역진적인 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소득구간에서는 누진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능력을 연간 소득이 아닌 생애소득의 대리변수 또는 생활수준을 더 잘 나타내는 변수로 인식되는 소비를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세부담의 역진적인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에서도 드러났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논의할 때면 매번 등장하는 질문인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인가 아닌가는 경제적 능력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소비 모두 경제적 능력의 대리변수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세부담의 분포를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 1분위에 속한 고령가구의 비중이 70%를 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연간 소득보다는 소비가 생애주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특정시점에서의 경제적 능력 및 생활수준을 더욱 잘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효 세부담 분포는 특정 연도에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석 기간에 걸쳐 관찰되었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모든 소득분위 및 소비분위에서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이 10%로 고정되어 왔고, 면세제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비중이 낮아지는 전반적인 소비구조 변화와 더불어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고령가구 비중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고령가구의 비중이 저소득 및 저소비 분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 옴에 따라 저분위의 유효 세부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소득 및 소비 1분위에서 소득 대비 유효 세부담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은 낮지만 평균소비성향은 높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면세유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바 미가공식료품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는 세부담 비율뿐만 아니라 세부담 경감 규모 측면에서도 저소득 및 저소비 계층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교육용역이나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 허용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교육용역의 경우 소득분위 및 소비분위가 올라갈수록 세부담 경감액 규모는 커지면서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액 비율의 감소폭도 대체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면세제도를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정비해 나간다면 미가공식료품이나 의료·보건용역보다는 교육용역이나 금융·보험용역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세수증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금융·보험용역보다는 교육용역의 정상 과세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간추린 세법개정』, 각 연도.

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김유찬, 「유효 부가가치세율 추정에 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비교」, 『재정정책논집』, 제15집 제4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13년, pp. 183~212.

박명호, 「유효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 분석」, 『재정포럼』, 제142호, 한국조세연구원, 2008년 4월, pp. 52~70.

성명재,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2.

성명재, 「부가가치세의 부문별 실효세율, 면세의 누적효과 추정 및 면세 개선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13년, pp. 189~223.

성명재 · 박명호 · 이성식 · 박종수, 『중장기 부가가치세제 과세기반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4.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2011. 8.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홍성훈 · 성명재, 『부가가치세제 발전방향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3.

Crossley, T. F., D. Phillips, and M. Wakefield, Chapter 10: Value Added Tax, The IFS Green Budget, edited by Chote, R., C. Emmerson, D. Miles and J. Shaw, IFS, 2009.

Gottfried, P. and W. Wiegard, "Exemption versus Zero Rating: a Hidden

Problem of VA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6, 1991.

Marks, S. V., "The Value Added Tax in Indonesia: The Impact of Sectoral Exemptions on Revenue Potential and Effective Tax Rates.", Bappenas, Jakarta, 2003.

Murphy, R., "Is VAT regressive and is so why do the IFS deny it?," Tax Research UK, 2010.

Poterba, J. M., "Lifetime Incidence and the Distributional Burden of Excise Tax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9, No. 2, 1989, pp. 325~330.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x=0&y=0#liBgcolor0, 2014. 7.28.

_____, 조세특례제한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x=0&y=0#liBgcolor0, 2014. 7. 28.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http://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

부 록

1. 산업연관표 기본부문별 유효 부가가치세율

〈부표 1〉 기본부문별 유효 부가가치세율(2010~2012년, 384개)

(단위: %)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10	2011	2012
0001	벼	0	2.43	2.40	2.72
0002	맥류 및 잡곡	0	2.34	2.47	3.08
0003	콩류	0	0.96	1.19	1.33
0004	감자류	0	1.73	2.32	2.55
0005	채소	0	3.27	2.96	3.38
0006	과실	0	3.03	2.63	3.09
0007	약용작물	0	1.61	1.64	1.81
0008	기타 식용작물	0	1.48	1.75	2.46
0009	잎담배	0	2.37	2.86	3.58
0010	화훼작물	1	10.49	10.47	10.47
0011	천연고무	1	10.00	10.00	10.00
0012	종자 및 묘목	1	10.45	10.73	10.83
0013	기타 비식용작물	1	10.42	10.63	10.80
0014	낙농	0	5.43	6.21	6.72
0015	육우	0	7.02	7.30	7.59
0016	양돈	0	8.10	7.04	6.79
0017	가금	0	8.45	9.11	9.51
0018	기타 축산	0	3.88	5.22	5.07
0019	영림	1	10.17	10.17	10.15
0020	원목	1	10.28	10.29	10.36
0021	식용 임산물	0	1.27	1.67	1.83
0022	기타 임산물	0	3.22	2.01	2.23
0023	수산어획	0	5.25	5.22	5.47
0024	수산양식	0	5.10	5.35	5.56
0025	농림어업 서비스	1	10.53	10.58	10.58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10	2011	2012
0026	무연탄	0	7.26	5.78	6.07
0027	유연탄	1	10.00	10.00	10.00
0028	원유	1	10.71	10.77	10.77
0029	천연가스(LNG)	1	10.68	10.74	10.73
0030	철광석	1	10.30	10.34	10.33
0031	기타 비철금속광석	1	10.70	10.75	10.80
0032	골재 및 석재	1	10.47	10.51	10.50
0033	석회석	1	10.25	10.27	10.25
0034	기타 비금속광물	1	10.50	10.53	10.55
0035	도축육	0	7.75	7.29	7.35
0036	가금육	0	8.08	8.67	9.01
0037	육가공품	1	12.95	12.84	12.92
0038	우유	0	6.00	6.46	6.61
0039	낙농품	1	11.48	11.70	11.99
0040	수산물 가공품	1	12.58	12.75	12.83
0041	수산동물 저장품	0	6.88	6.77	6.97
0042	정곡	0	2.94	2.92	3.10
0043	제분	0	3.76	3.52	3.81
0044	원당	1	10.00	10.00	10.00
0045	정제당	1	10.12	10.07	10.07
0046	전분 및 당류	1	11.44	11.61	11.96
0047	떡, 빵 및 과자류	1	11.27	11.44	11.49
0048	면류	1	11.35	11.41	11.58
0049	조미료 및 첨가용식품	1	11.40	11.42	11.57
0050	유지	1	11.56	11.58	11.74
0051	과실 및 채소 가공품	1	11.65	11.58	11.89
0052	커피 및 차류	1	10.90	11.08	11.29
0053	인삼 및 건강보조 식품	1	10.90	11.04	11.11
0054	기타 식료품	1	11.47	11.62	11.76
0055	사료	1	11.47	11.54	11.81
0056	주정	1	11.13	11.27	11.49
0057	소주	1	10.40	10.88	10.94
0058	맥주	1	10.34	10.90	10.91
0059	기타 주류	1	10.50	10.69	10.70
0060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1	10.83	10.89	10.98
0061	담배	1	10.25	10.66	10.74
0062	천연 섬유사	1	10.70	10.79	10.81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10	2011	2012
0063	화학 섬유사	1	10.58	10.62	10.63
0064	기타 섬유사	1	10.52	10.58	10.60
0065	천연섬유직물	1	10.54	10.61	10.61
0066	화학섬유직물	1	10.50	10.54	10.55
0067	기타 섬유직물	1	10.51	10.56	10.56
0068	편조원단	1	10.49	10.54	10.56
0069	섬유표백 및 염색	1	10.49	10.53	10.52
0070	직물제품	1	10.56	10.61	10.62
0071	끈, 로프 및 어망	1	10.54	10.60	10.60
0072	기타 섬유제품	1	10.46	10.50	10.53
0073	봉제 의류	1	10.44	10.51	10.52
0074	편조의류	1	10.45	10.51	10.54
0075	가죽의류	1	11.67	11.63	11.61
0076	모피의류 및 모피제품	1	11.33	11.82	11.66
0077	의복 관련 장신품	1	10.54	10.62	10.62
0078	가죽	1	13.62	13.26	13.30
0079	모피	1	12.06	12.60	12.40
0080	가방 및 핸드백	1	10.72	10.75	10.81
0081	신발	1	10.99	11.01	11.02
0082	기타 가죽제품	1	11.44	11.40	11.25
0083	제재목	1	10.40	10.43	10.50
0084	합판	1	10.43	10.48	10.53
0085	강화 및 재생목재	1	10.58	10.60	10.61
0086	건축용 목제품	1	10.50	10.54	10.58
0087	목재 용기 및 적재판	1	10.48	10.52	10.58
0088	기타 목제품	1	10.51	10.54	10.53
0089	펄프	1	10.44	10.48	10.50
0090	인쇄용지	1	10.89	10.97	10.93
0091	기타 원지 및 판지	1	10.85	10.89	10.83
0092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1	10.61	10.65	10.61
0093	종이용기	1	10.56	10.61	10.60
0094	종이문구 및 사무용지	1	10.61	10.67	10.66
0095	위생용 종이제품	1	10.55	10.61	10.59
0096	기타 종이제품	1	10.56	10.62	10.62
0097	인쇄	1	10.51	10.59	10.59
0098	기록매체 복제	1	10.55	10.62	10.65
0099	석탄 코크스 및 관련제품	0	9.47	9.14	9.09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10	2011	2012
0100	연탄	0	8.69	4.61	5.18
0101	나프타	1	10.68	10.74	10.74
0102	휘발유	1	10.40	10.77	10.77
0103	제트유	1	10.68	10.74	10.75
0104	등유	1	10.62	10.75	10.75
0105	경유	1	10.50	10.75	10.75
0106	중유	1	10.68	10.77	10.77
0107	액화석유가스	1	10.61	10.77	10.77
0108	정제혼합용 원료유	1	10.75	10.81	10.82
0109	윤활유 및 그리스	1	10.73	10.78	10.81
0110	기타 석유정제제품	1	10.72	10.77	10.78
0111	지방족 기초유분	1	10.66	10.71	10.72
0112	방향족 기초유분	1	10.62	10.68	10.69
0113	석유화학중간제품	1	10.62	10.65	10.66
0114	석탄화합물	1	11.49	11.16	11.29
0115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1	10.59	10.61	10.63
0116	산업용 가스	1	10.44	10.50	10.53
0117	기초무기화합물	1	10.63	10.66	10.67
0118	염료, 안료 및 유연제	1	10.60	10.61	10.66
0119	합성수지	1	10.58	10.65	10.66
0120	합성고무	1	10.57	10.61	10.63
0121	화학섬유	1	10.53	10.58	10.61
0122	의약품	1	10.49	10.56	10.58
0123	비료 및 질소화합물	1	10.87	10.92	10.92
0124	살충제 및 농약	1	10.55	10.58	10.61
0125	도료	1	10.62	10.64	10.66
0126	잉크	1	10.58	10.63	10.65
0127	비누, 세제 및 치약	1	10.65	10.71	10.75
0128	화장품	1	10.51	10.58	10.58
0129	접착제 및 젤라틴	1	10.69	10.70	10.72
0130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1	10.55	10.60	10.62
0131	기타 화학제품	1	10.63	10.68	10.70
0132	플라스틱 1차제품	1	10.61	10.62	10.62
0133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1	10.62	10.68	10.77
0134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1	10.57	10.60	10.61
0135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1	10.57	10.59	10.62
0136	기타 플라스틱제품	1	10.58	10.61	10.63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10	2011	2012
0137	타이어 및 튜브	1	10.47	10.45	10.51
0138	산업용 고무제품	1	10.57	10.59	10.61
0139	기타 고무제품	1	10.48	10.48	10.53
0140	판유리 및 1차유리	1	10.62	10.65	10.61
0141	전자기기용 유리제품	1	10.41	10.42	10.44
0142	산업용(전자기기 제외) 유리제품	1	10.44	10.48	10.49
0143	기타 유리제품	1	10.47	10.49	10.47
0144	가정용 도자기	1	10.55	10.61	10.61
0145	산업용 도자기	1	10.57	10.61	10.60
0146	내화요업제품	1	10.66	10.61	10.64
0147	건설용 비내화 요업제품	1	10.55	10.59	10.56
0148	시멘트	1	11.10	11.02	11.15
0149	레미콘	1	10.85	10.88	10.91
0150	콘크리트제품	1	10.99	11.01	11.03
0151	석회 및 석고제품	1	10.97	11.07	10.90
0152	석제품	1	10.61	10.65	10.68
0153	연마재	1	10.62	10.65	10.65
0154	아스콘 및 아스팔트제품	1	10.96	10.95	10.93
0155	석면 및 암면	1	10.60	10.65	10.66
015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	10.57	10.60	10.57
0157	선철	1	13.99	13.76	13.73
0158	합금철	1	11.36	11.10	11.17
0159	조강	1	13.18	13.06	13.00
0160	철근 및 봉강	1	12.43	12.45	12.42
0161	형강	1	12.26	12.22	12.19
0162	선재 및 궤조	1	12.41	12.30	12.25
0163	열연 후판 및 강판	1	12.46	12.44	12.35
0164	강선	1	11.32	11.39	11.41
0165	철강관	1	11.36	11.42	11.39
0166	냉간압연강재	1	11.90	11.89	11.82
0167	표면처리강재	1	10.97	11.03	11.00
0168	기타 철강1차제품	1	11.46	11.52	11.48
0169	동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1	10.78	10.84	10.88
0170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1	10.78	10.78	10.77
0171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1	10.67	10.70	10.73
0172	금은괴	1	10.58	10.65	10.67
0173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1	10.89	10.94	10.96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10	2011	2012
0174	동 1차제품	1	10.78	10.83	10.85
0175	알루미늄 1차제품	1	10.92	10.90	10.88
0176	기타 비철금속 1차제품	1	10.90	10.91	10.93
0177	금속 주물	1	12.13	12.00	12.08
0178	건축용 금속제품	1	10.91	10.94	10.90
0179	구조물용 금속제품	1	11.08	11.12	11.08
0180	금속제 탱크 및 압력용기	1	11.18	11.23	11.18
0181	산업용 보일러 및 증기발생기	1	10.79	10.84	10.83
0182	금속 단조 및 야금제품	1	11.44	11.41	11.33
0183	금속압형제품	1	10.89	10.95	10.90
0184	금속처리	1	10.47	10.50	10.49
0185	금속처리 가공품	1	10.70	10.75	10.73
0186	가정용 금속제품	1	10.83	10.88	10.87
0187	부착용 금속제품	1	11.00	11.07	11.03
0188	공구류	1	10.82	10.86	10.86
0189	나사 및 철선 제품	1	11.19	11.22	11.24
0190	금속포장용기	1	10.88	10.93	10.91
0191	기타 금속제품	1	10.72	10.77	10.75
0192	내연기관 및 터빈	1	10.69	10.73	10.74
0193	펌프 및 압축기	1	10.69	10.76	10.75
0194	밸브	1	10.82	10.84	10.86
0195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1	10.72	10.75	10.76
0196	산업용 운반기계	1	10.73	10.79	10.79
0197	공기조절 장치 및 냉장 냉동 장비	1	10.67	10.73	10.73
0198	공기 및 액체 여과기	1	10.72	10.78	10.79
0199	사무용 기기	1	10.49	10.52	10.54
0200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1	10.80	10.85	10.83
0201	농업용 기계	1	10.72	10.78	10.78
0202	건설 및 광산용 기계	1	10.70	10.78	10.80
0203	금속절삭기계	1	10.66	10.71	10.69
0204	금속성형기계	1	10.81	10.84	10.80
0205	금형 및 주형	1	11.22	11.18	11.17
0206	반도체 제조용 기계	1	10.51	10.53	10.48
0207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1	10.59	10.63	10.55
0208	음식료품 가공기계	1	10.67	10.73	10.69
0209	섬유 및 의복 가공기계	1	10.78	10.80	10.77
0210	산업용 로봇	1	10.63	10.69	10.64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10	2011	2012
0211	제지 및 인쇄기계	1	10.67	10.73	10.69
0212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계	1	10.71	10.75	10.74
0213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1	10.68	10.71	10.69
0214	발전기 및 전동기	1	10.57	10.61	10.59
0215	변압기	1	10.65	10.69	10.68
0216	전기변환장치	1	10.52	10.55	10.55
0217	전기회로 개폐 및 접속장치	1	10.51	10.55	10.54
0218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1	10.52	10.55	10.58
0219	전지	1	10.46	10.50	10.48
0220	전선 및 케이블	1	10.64	10.69	10.71
0221	전구 및 램프	1	10.50	10.53	10.57
0222	조명장치	1	10.50	10.53	10.54
0223	기타 전기장비	1	10.56	10.60	10.63
0224	개별소자	1	10.51	10.51	10.53
0225	집적회로	1	10.43	10.43	10.44
0226	LCD 평판 디스플레이	1	10.41	10.43	10.43
0227	기타 전자표시장치	1	10.43	10.44	10.45
0228	인쇄회로기판 및 실장기판	1	10.50	10.53	10.57
0229	축전기, 저항기, 전자코일 및 변성기	1	10.52	10.53	10.54
0230	기타 전자부품	1	10.49	10.51	10.52
0231	컴퓨터	1	10.31	10.44	10.47
0232	컴퓨터 기억장치	1	10.44	10.45	10.35
0233	컴퓨터 주변기기	1	10.47	10.49	10.48
0234	유선통신기기	1	10.49	10.51	10.51
0235	이동전화기	1	10.43	10.44	10.44
0236	기타 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	1	10.53	10.54	10.56
0237	TV	1	10.46	10.48	10.48
0238	영상기기	1	10.52	10.54	10.55
0239	오디오 및 음향기기	1	10.46	10.49	10.49
0240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1	10.63	10.69	10.68
0241	주방용 및 난방용 전기기기	1	10.66	10.74	10.74
0242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1	10.70	10.78	10.78
0243	의료용 기기	1	10.49	10.54	10.55
0244	측정 및 분석기	1	10.48	10.51	10.52
0245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1	10.50	10.57	10.56
0246	사진기 및 영사기	1	10.43	10.47	10.47
0247	안경 및 기타광학기기	1	10.45	10.47	10.47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10	2011	2012
0248	시계	1	10.45	10.52	10.50
0249	승용차	1	10.54	10.62	10.63
0250	버스	1	10.56	10.64	10.64
0251	트럭	1	10.53	10.60	10.60
0252	특장차	1	10.56	10.65	10.65
0253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1	10.73	10.78	10.72
0254	자동차용 엔진	1	10.61	10.62	10.63
0255	자동차 부분품	1	10.70	10.75	10.75
0256	강철제 선박	1	10.79	10.86	10.85
0257	기타 선박	1	10.84	10.89	10.89
0258	선박 수리 및 부분품	1	10.69	10.80	10.82
0259	철도차량	1	10.55	10.60	10.61
0260	항공기	1	10.62	10.64	10.71
0261	모터사이클	1	10.61	10.71	10.76
0262	기타 운수장비	1	10.64	10.66	10.69
0263	목재 가구	1	10.47	10.54	10.54
0264	금속 가구	1	10.76	10.86	10.84
0265	기타 가구	1	10.64	10.68	10.70
0266	장난감 및 오락용품	1	10.47	10.51	10.54
0267	운동 및 경기용품	1	10.55	10.60	10.61
0268	악기	1	10.50	10.53	10.53
0269	문방구	1	10.49	10.53	10.52
0270	귀금속 및 보석	1	10.46	10.57	10.53
0271	모형 및 장식용품	1	10.54	10.59	10.59
0272	기타 제조업 제품	1	10.63	10.69	10.70
0273	제조임가공서비스	1	10.44	10.50	10.50
0274	수력	1	10.47	10.52	10.55
0275	화력	1	10.40	10.50	10.52
0276	원자력	1	10.49	10.56	10.59
0277	자가발전	1	10.33	10.37	10.40
0278	신재생에너지	1	10.52	10.59	10.60
0279	도시가스	1	10.60	10.68	10.65
0280	증기 및 온수	1	10.35	10.42	10.42
0281	수도	0	4.49	4.71	4.66
028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국공립)	0	5.51	5.65	5.28
0283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산업)	1	10.52	10.61	10.54
0284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국공립)	0	4.11	4.56	3.78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10	2011	2012
0285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산업)	1	10.76	10.89	10.80
0286	자원재활용서비스	0	6.46	6.43	6.05
0287	주거용 건물	1	10.71	10.80	10.80
0288	비주거용 건물	1	10.61	10.72	10.73
0289	건축보수	1	10.54	10.61	10.61
0290	도로시설	0	6.40	6.88	6.73
0291	철도시설	0	7.37	7.81	7.56
0292	항만시설	0	6.07	6.46	6.29
0293	하천사방	0	5.88	6.48	6.36
0294	상하수도시설	0	6.64	7.42	7.39
0295	농림수산토목	1	10.63	10.78	10.75
0296	도시토목	1	10.66	10.76	10.71
0297	환경정화시설	1	10.83	10.97	10.96
0298	통신시설	1	10.61	10.69	10.68
0299	전력시설	1	10.59	10.69	10.70
0300	산업플랜트	1	10.66	10.74	10.71
0301	기타 건설	1	10.81	10.94	10.91
0302	도매 서비스	1	10.61	10.68	10.71
0303	소매 서비스	1	10.45	10.52	10.54
0304	철도여객 운송서비스	0	4.32	4.11	4.03
0305	철도화물 운송서비스	1	10.35	10.37	10.39
0306	도로여객 운송서비스	0	5.24	5.42	5.40
0307	도로화물 운송서비스	1	10.42	10.52	10.53
0308	소화물 전문 운송서비스	1	10.51	10.63	10.67
0309	연안 및 내륙수상 운송서비스	0	6.72	7.00	7.30
0310	외항운송서비스	0	8.64	9.47	9.61
0311	항공운송서비스	1	10.56	10.66	10.74
0312	육상운송보조서비스	1	10.37	10.41	10.46
0313	수상운송보조서비스	1	10.40	10.45	10.47
0314	항공운송보조서비스	1	10.25	10.27	10.30
0315	하역 서비스	1	10.58	10.66	10.67
0316	보관 및 창고서비스	1	10.58	10.62	10.62
0317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	1	10.69	10.70	10.75
0318	일반음식점	1	11.74	11.85	11.86
0319	주점	1	10.96	11.22	11.23
0320	기타음식점	1	11.52	11.73	11.76
0321	숙박	1	10.35	10.41	10.41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10	2011	2012
0322	우편서비스	0	2.01	1.95	2.42
0323	유선통신서비스	1	10.49	10.56	10.58
0324	무선통신서비스	1	10.38	10.46	10.48
0325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1	10.52	10.58	10.59
0326	지상파 방송서비스	0	4.08	4.01	4.22
0327	유선, 위성 및 기타방송	1	10.88	10.90	10.94
0328	정보 서비스	1	10.41	10.48	10.51
0329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1	10.26	10.29	10.29
0330	컴퓨터관리 서비스	1	10.37	10.42	10.46
0331	신문	0	7.38	7.31	7.37
0332	출판	0	6.94	7.01	6.97
0333	영상 ·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1	10.49	10.51	10.50
0334	영화상영	1	10.45	10.53	10.55
0335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0	1.97	1.86	2.08
0336	금융투자기관	0	2.08	2.34	2.61
0337	기타 금융중개기관	0	5.00	4.99	5.24
0338	생명보험	0	4.83	5.27	5.43
0339	비생명보험	0	5.14	5.32	5.05
0340	금융 및 보험 보조 서비스	0	2.51	3.91	4.81
0341	주거서비스	0	0.95	0.99	1.02
0342	비주거용 건물 임대	1	10.57	10.65	10.69
0343	부동산 개발 및 공급	1	11.20	11.41	11.49
0344	부동산관련 서비스	1	10.14	10.30	10.28
0345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1	10.40	10.51	10.55
0346	연구개발(국공립)	0	5.51	5.49	5.61
0347	연구개발(비영리)	0	5.76	5.84	5.87
0348	연구개발(산업)	0	3.04	3.25	4.00
0349	기업내연구개발	0	4.01	4.19	4.15
0350	법무 및 회계서비스	1	10.38	10.44	10.49
0351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1	10.57	10.61	10.61
0352	광고	1	12.54	12.52	12.53
0353	건축 · 토목 관련 서비스	1	10.63	10.72	10.71
0354	공학 관련 서비스	1	10.33	10.36	10.36
0355	과학기술서비스	1	10.36	10.41	10.40
0356	기타 전문 서비스	1	10.37	10.42	10.43
0357	청소 소독 및 시설 유지	1	10.38	10.41	10.41
0358	인력공급 및 알선	1	10.33	10.34	10.34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10	2011	2012
0359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	1	10.54	10.58	10.63
0360	중앙정부	0	2.89	2.91	2.87
0361	지방정부	0	1.40	1.49	1.46
0362	교육서비스(국공립)	0	2.70	2.65	2.88
0363	교육서비스(비영리)	0	2.35	2.50	2.30
0364	교육서비스(산업)	0	3.25	3.41	3.72
0365	의료 및 보건(국공립)	0	4.91	4.40	4.52
0366	의료 및 보건(비영리)	0	5.23	5.32	5.29
0367	의료 및 보건(산업)	0	4.17	4.25	4.25
0368	사회보험(국공립)	0	3.63	3.69	3.78
0369	사회복지서비스(국공립)	0	4.03	4.40	4.62
0370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	0	5.24	5.21	5.19
0371	문화서비스(국공립)	0	4.75	4.61	4.61
0372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1	10.32	10.34	10.36
0373	기타 문화서비스	0	3.13	3.32	3.54
0374	스포츠서비스	1	10.43	10.49	10.51
0375	오락서비스	1	10.75	10.94	11.00
0376	산업 및 전문가 단체	0	5.38	5.38	5.36
0377	기타 사회 단체	0	5.29	5.44	5.47
0378	자동차 수리서비스	1	10.52	10.58	10.59
0379	기계장비 수리	1	10.33	10.37	10.37
0380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서비스	1	10.40	10.46	10.45
0381	미용 관련 서비스	1	10.42	10.48	10.50
0382	세탁	1	10.29	10.36	10.35
0383	가사서비스	1	10.00	10.00	10.00
0384	기타 개인 서비스	1	10.49	10.57	10.55

주: 면세 여부에서 0=면세, 1=정상과세를 의미한다.

〈부표 2〉 기본부문별 유효 부가가치세율(2005~2009년, 404개)

(단위: %)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05	2006	2007	2008	2009
0001	벼	0	2.08	2.01	1.98	2.20	2.34
0002	보리	0	3.00	2.85	3.07	3.46	3.51
0003	밀	0	3.94	3.99	4.25	4.31	4.33
0004	잡곡	0	2.13	2.14	2.28	2.61	2.72
0005	채소	0	2.97	2.94	2.75	3.17	3.49
0006	과실	0	4.11	4.09	3.88	4.47	3.86
0007	콩류	0	1.72	1.82	2.00	1.94	1.80
0008	감자류	0	2.24	2.03	2.26	2.64	2.66
0009	유지작물	0	1.19	1.12	1.29	1.57	1.91
0010	약용작물	0	1.28	1.20	1.20	1.48	1.55
0011	기타 식용작물	0	1.53	1.48	1.66	1.93	1.94
0012	섬유작물	1	10.07	10.08	10.08	10.08	10.10
0013	잎담배	0	2.38	2.35	2.53	2.88	2.80
0014	화훼작물	1	10.22	10.31	10.34	10.37	10.38
0015	천연고무	1	10.00	10.00	10.00	10.00	10.00
0016	종자 및 묘목	1	10.42	10.49	10.47	10.52	10.52
0017	기타 비식용작물	1	10.31	10.35	10.33	10.37	10.44
0018	낙농	0	5.43	5.69	6.20	6.98	6.87
0019	육우	0	4.94	5.96	6.59	9.29	7.08
0020	양돈	0	7.03	7.20	7.68	8.63	8.45
0021	가금	0	7.28	7.66	8.06	8.62	9.75
0022	기타축산	0	3.56	4.27	4.65	5.64	5.64
0023	영림	1	10.16	10.17	10.16	10.17	10.20
0024	원목	1	10.23	10.31	10.42	10.47	10.51
0025	식용임산물	0	0.99	0.92	0.87	1.01	1.23
0026	기타 임산물	0	2.98	2.92	3.26	3.72	3.98
0027	수산어획	0	5.82	6.00	6.19	6.07	4.97
0028	수산양식	0	4.51	4.71	5.13	6.40	4.77
0029	농림어업서비스	1	10.46	10.53	10.49	10.56	10.62
0030	무연탄	0	4.59	4.24	3.94	3.91	3.40
0031	유연탄	1	10.00	10.00	10.00	10.00	10.00
0032	원유	1	10.14	10.14	10.15	10.15	10.18
0033	천연가스(LNG)	1	10.11	10.11	10.12	10.13	10.17
0034	철광석	1	10.40	10.36	10.41	10.37	10.32
0035	동광석	1	10.22	10.27	10.38	10.63	10.68
0036	연 및 아연광석	1	10.12	10.16	10.27	10.41	10.68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05	2006	2007	2008	2009
0037	기타 비철금속광석	1	10.15	10.15	10.23	10.24	10.44
0038	모래 및 자갈	1	10.27	10.29	10.29	10.35	10.38
0039	쇄석	1	10.22	10.23	10.23	10.24	10.28
0040	기타 건설용석재	1	10.23	10.25	10.25	10.27	10.27
0041	석회석	1	10.22	10.23	10.22	10.26	10.24
0042	요업원료광물	1	10.25	10.27	10.27	10.31	10.36
0043	원염	0	2.38	2.36	2.38	2.31	2.23
0044	기타 비금속광물	1	10.30	10.32	10.31	10.34	10.39
0045	도축육	0	6.18	6.56	7.04	8.64	7.70
0046	가금육	0	7.05	7.35	7.69	8.25	9.04
0047	육가공품	1	12.37	12.49	12.66	13.61	13.49
0048	우유	0	5.76	5.93	6.20	6.68	6.62
0049	유제품	1	11.80	11.94	12.06	12.22	12.26
0050	아이스크림	1	10.70	10.73	10.75	10.82	10.83
0051	어육 및 어묵	1	11.70	11.75	11.83	11.79	11.87
0052	수산물통조림	1	12.18	12.34	12.36	12.77	12.42
0053	수산물냉동품	0	5.82	5.89	6.06	5.99	5.23
0054	수산물저장품	0	6.41	6.63	6.78	6.72	6.33
0055	기타 수산물가공품	1	12.44	12.71	12.87	13.02	12.43
0056	정미	0	2.11	2.27	2.12	2.31	2.60
0057	정맥	0	1.75	2.83	3.07	3.53	3.05
0058	제분	0	4.16	4.23	4.00	4.46	4.17
0059	원당	1	10.00	10.00	10.00	10.00	10.00
0060	정제당	1	10.18	10.10	10.19	10.16	10.16
0061	전분	1	11.47	11.47	11.58	12.02	12.08
0062	당류	1	10.89	10.92	10.99	11.18	11.26
0063	빵 및 곡분과자	1	11.13	11.21	11.15	11.34	11.45
0064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1	10.59	10.61	10.65	10.73	10.73
0065	국수류	1	11.18	11.15	11.06	11.25	11.31
0066	발효 및 합성조미료	1	10.46	10.49	10.51	10.54	10.55
0067	기타 조미료	1	11.16	11.27	11.25	11.39	11.47
0068	장류	1	10.89	10.89	10.88	11.02	11.06
0069	동물성유지	1	13.65	13.86	14.04	14.65	14.16
0070	식물성유지	1	11.03	11.03	11.12	11.36	11.27
0071	과실 및 채소가공품	1	11.38	11.50	11.40	11.56	11.57
0072	커피 및 차류	1	10.76	10.78	10.80	10.99	11.05
0073	인삼식품	1	10.80	10.79	10.79	10.95	11.02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05	2006	2007	2008	2009
0074	누룩 및 맥아	1	11.73	11.42	11.57	11.74	11.62
0075	두부	0	3.66	4.69	4.57	4.27	4.31
0076	기타 식료품	1	11.38	11.42	11.41	11.56	11.58
0077	주정	1	11.07	11.03	11.12	11.25	11.35
0078	소주	1	10.31	10.33	10.36	10.38	10.38
0079	맥주	1	10.30	10.32	10.32	10.34	10.32
0080	기타주류	1	10.51	10.55	10.53	10.59	10.65
0081	비알콜성 음료	1	10.71	10.77	10.75	10.79	10.79
0082	생수 및 얼음	1	10.29	10.31	10.33	10.33	10.34
0083	사료	1	11.19	11.22	11.33	11.73	11.70
0084	담배	1	10.22	10.25	10.25	10.27	10.27
0085	모사	1	11.92	12.08	12.28	12.90	12.94
0086	면사	1	10.23	10.27	10.28	10.29	10.32
0087	견사 및 마사	1	10.29	10.46	10.36	10.26	10.26
0088	재생섬유사	1	10.52	10.58	10.60	10.65	10.72
0089	합성섬유사	1	10.33	10.36	10.34	10.35	10.40
0090	재봉사 및 기타 섬유사	1	10.38	10.42	10.41	10.43	10.47
0091	모직물	1	10.96	11.03	11.13	11.30	11.41
0092	면직물	1	10.28	10.30	10.30	10.34	10.37
0093	견직물 및 마직물	1	10.34	10.37	10.37	10.34	10.35
0094	재생섬유직물	1	10.42	10.54	10.47	10.52	10.54
0095	합성섬유직물	1	10.40	10.43	10.41	10.41	10.43
0096	기타섬유직물	1	10.37	10.41	10.40	10.42	10.44
0097	편조원단	1	10.34	10.38	10.41	10.43	10.46
0098	섬유표백 및 염색	1	10.60	10.59	10.56	10.60	10.60
0099	편직제의류	1	10.49	10.55	10.57	10.61	10.66
0100	편직제장신품	1	10.41	10.46	10.49	10.51	10.53
0101	직물제의류	1	10.40	10.46	10.47	10.49	10.50
0102	기타장신품	1	10.58	10.64	10.65	10.68	10.66
0103	가죽의류	1	11.57	12.00	12.04	13.21	12.94
0104	모피의류	1	11.39	11.59	11.52	11.53	11.66
0105	직물제품	1	10.35	10.38	10.37	10.40	10.43
0106	기타 섬유제품	1	10.30	10.33	10.34	10.35	10.37
0107	끈,로프 및 어망	1	10.29	10.32	10.31	10.34	10.36
0108	가죽	1	13.15	14.28	14.55	15.75	15.20
0109	모피	1	12.23	12.49	12.39	12.97	13.08
0110	가방 및 핸드백	1	10.68	10.73	10.74	10.87	10.86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05	2006	2007	2008	2009
0111	가죽신발	1	11.10	11.21	11.26	11.70	11.67
0112	운동화 및 기타신발	1	10.67	10.74	10.76	10.85	10.89
0113	기타 가죽제품	1	11.26	11.37	11.51	12.13	11.92
0114	제재목	1	10.30	10.38	10.42	10.47	10.49
0115	합판	1	10.30	10.34	10.37	10.39	10.40
0116	재생 및 강화목재	1	10.30	10.35	10.37	10.39	10.40
0117	건축용목제품	1	10.35	10.41	10.41	10.46	10.46
0118	목제용기	1	10.28	10.33	10.35	10.37	10.38
0119	기타목제품	1	10.30	10.35	10.36	10.40	10.39
0120	펄프	1	10.47	10.56	10.57	10.62	10.63
0121	신문용지	1	10.34	10.40	10.41	10.46	10.47
0122	인쇄용지	1	10.34	10.39	10.41	10.46	10.46
0123	기타 원지 및 판지	1	10.39	10.44	10.45	10.48	10.47
0124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1	10.31	10.34	10.35	10.37	10.34
0125	종이용기	1	10.30	10.33	10.33	10.36	10.32
0126	종이문구및사무용지	1	10.32	10.37	10.37	10.41	10.43
0127	위생용 종이제품	1	10.39	10.44	10.43	10.46	10.46
0128	기타 종이제품	1	10.37	10.40	10.39	10.42	10.39
0129	인쇄	1	10.26	10.29	10.30	10.32	10.34
0130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	1	10.39	10.39	10.39	10.42	10.44
0131	연탄	0	8.52	10.98	9.32	7.86	7.41
0132	기타석탄제품	1	10.10	10.23	10.20	10.12	10.10
0133	나프타	1	10.16	10.15	10.18	10.18	10.22
0134	휘발유	1	10.07	10.09	10.09	10.10	10.13
0135	제트유	1	10.16	10.17	10.19	10.18	10.22
0136	등유	1	10.13	10.16	10.17	10.17	10.21
0137	경유	1	10.12	10.13	10.14	10.14	10.17
0138	중유	1	10.16	10.15	10.15	10.15	10.19
0139	액화석유가스	1	10.12	10.15	10.16	10.17	10.21
0140	윤활유제품	1	10.29	10.33	10.34	10.31	10.36
0141	기타석유정제품	1	10.22	10.28	10.32	10.26	10.30
0142	석유화학기초제품	1	10.18	10.18	10.18	10.18	10.22
0143	석유화학중간제품	1	10.25	10.25	10.25	10.24	10.27
0144	석탄화합물	1	10.38	10.59	10.60	10.55	10.54
0145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1	10.42	10.44	10.45	10.46	10.52
0146	산업용가스	1	10.35	10.39	10.39	10.41	10.43
0147	기초무기화합물	1	10.45	10.47	10.47	10.44	10.47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05	2006	2007	2008	2009
0148	합성수지	1	10.26	10.27	10.26	10.25	10.28
0149	합성고무	1	10.34	10.34	10.35	10.36	10.49
0150	재생섬유	1	10.54	10.63	10.68	10.72	10.81
0151	합성섬유	1	10.32	10.33	10.33	10.33	10.36
0152	질소화합물	1	10.28	10.41	10.30	10.29	10.33
0153	비료	1	10.41	10.47	10.48	10.48	10.54
0154	농약	1	10.45	10.46	10.45	10.47	10.54
0155	의약품	1	10.78	10.81	10.81	10.86	10.92
0156	화장품및치약	1	10.51	10.52	10.50	10.52	10.54
0157	비누 및 세제	1	10.64	10.66	10.69	10.80	10.77
0158	염료,안료 및 유연제	1	10.41	10.43	10.44	10.46	10.51
0159	도료	1	10.35	10.37	10.37	10.37	10.39
0160	잉크	1	10.38	10.42	10.42	10.45	10.47
0161	접착제 및 젤라틴	1	10.52	10.54	10.51	10.58	10.57
0162	화약 및 불꽃제품	1	10.42	10.49	10.50	10.51	10.53
0163	전자기기용 기록매체	1	10.36	10.30	10.27	10.32	10.38
0164	사진용화학제품	1	10.39	10.46	10.47	10.46	10.46
0165	기타화학제품	1	10.36	10.40	10.40	10.39	10.42
0166	플라스틱1차제품	1	10.30	10.32	10.31	10.31	10.33
0167	산업용 플라스틱제품	1	10.27	10.29	10.29	10.31	10.33
0168	가정용 플라스틱제품	1	10.26	10.29	10.29	10.31	10.33
0169	타이어및튜브	1	10.30	10.29	10.28	10.30	10.31
0170	산업용 고무제품	1	10.27	10.29	10.28	10.30	10.31
0171	기타고무제품	1	10.33	10.34	10.34	10.37	10.40
0172	판유리 및 1차유리	1	10.35	10.39	10.40	10.42	10.45
0173	산업용 유리제품	1	10.29	10.32	10.33	10.34	10.34
0174	기타 유리제품	1	10.42	10.50	10.53	10.54	10.60
0175	산업용 도자기	1	10.39	10.44	10.46	10.47	10.49
0176	가정용 도자기	1	10.49	10.55	10.53	10.58	10.57
0177	내화요업제품	1	10.33	10.36	10.36	10.37	10.36
0178	건설용 점토제품	1	10.29	10.32	10.32	10.34	10.36
0179	시멘트	1	10.32	10.34	10.35	10.35	10.35
0180	레미콘	1	10.33	10.36	10.38	10.38	10.42
0181	콘크리트제품	1	10.35	10.39	10.41	10.44	10.48
0182	석회 및 석고제품	1	10.48	10.40	10.40	10.49	10.36
0183	석제품	1	10.28	10.33	10.30	10.32	10.32
0184	석면 및 암면제품	1	10.40	10.48	10.49	10.51	10.50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05	2006	2007	2008	2009
0185	연마제	1	10.32	10.35	10.36	10.38	10.39
0186	아스팔트제품	1	10.26	10.29	10.32	10.30	10.32
0187	기타토석제품	1	10.31	10.35	10.36	10.39	10.37
0188	선철	1	10.48	10.43	10.43	10.46	10.42
0189	합금철	1	10.22	10.30	10.34	10.35	10.41
0190	조강	1	10.41	10.43	10.44	10.47	10.46
0191	철근및봉강	1	10.35	10.37	10.39	10.41	10.41
0192	형강	1	10.35	10.37	10.38	10.41	10.42
0193	선재 및 궤조	1	10.37	10.40	10.42	10.43	10.44
0194	열간압연강재	1	10.35	10.38	10.39	10.41	10.43
0195	강관(주철강관제외)	1	10.33	10.37	10.37	10.40	10.43
0196	냉간압연강재	1	10.36	10.39	10.40	10.42	10.41
0197	주철물	1	10.38	10.37	10.38	10.45	10.43
0198	철강단조물	1	10.33	10.35	10.37	10.42	10.42
0199	표면처리강재	1	10.34	10.37	10.42	10.44	10.48
0200	기타 철강1차제품	1	10.33	10.36	10.38	10.41	10.42
0201	동괴	1	10.25	10.30	10.39	10.61	10.66
0202	알루미늄괴	1	10.34	10.37	10.40	10.41	10.47
0203	연 및 아연괴	1	10.24	10.22	10.33	10.45	10.64
0204	금은괴	1	10.30	10.26	10.31	10.36	10.53
0205	기타 비철금속괴	1	10.22	10.25	10.35	10.40	10.50
0206	동1차제품	1	10.25	10.27	10.35	10.52	10.55
0207	알루미늄1차제품	1	10.33	10.37	10.40	10.42	10.46
0208	기타비철금속1차제품	1	10.26	10.31	10.37	10.38	10.46
0209	건물용 금속제품	1	10.30	10.34	10.35	10.40	10.41
0210	구조물용 금속제품	1	10.31	10.35	10.36	10.38	10.38
0211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1	10.34	10.38	10.38	10.42	10.41
0212	금속포장용기	1	10.28	10.31	10.33	10.40	10.41
0213	공구류	1	10.33	10.36	10.37	10.40	10.42
0214	나사제품	1	10.32	10.35	10.34	10.39	10.39
0215	철선제품	1	10.31	10.34	10.33	10.35	10.37
0216	부착용 금속제품	1	10.30	10.33	10.35	10.40	10.42
0217	금속처리	1	10.26	10.28	10.30	10.32	10.35
0218	가정용 금속제품	1	10.31	10.34	10.35	10.38	10.38
0219	기타 금속제품	1	10.33	10.36	10.38	10.41	10.43
0220	내연기관 및 터빈	1	10.42	10.49	10.50	10.54	10.57
0221	밸브	1	10.27	10.30	10.32	10.36	10.35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05	2006	2007	2008	2009
0222	베어링,기어 및 전동요소	1	10.29	10.31	10.32	10.36	10.36
0223	산업용운반기계	1	10.37	10.40	10.43	10.46	10.47
0224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장비	1	10.34	10.35	10.37	10.40	10.41
0225	보일러	1	10.37	10.39	10.40	10.43	10.46
0226	난방 및 조리기기	1	10.38	10.41	10.41	10.47	10.49
0227	펌프 및 압축기	1	10.34	10.36	10.36	10.38	10.40
0228	공기 및 액체여과청정기	1	10.38	10.40	10.41	10.44	10.46
0229	기타 일반목적용기계	1	10.34	10.36	10.37	10.39	10.40
0230	금속절삭가공기계	1	10.29	10.31	10.33	10.35	10.36
0231	금속성형처리기계	1	10.39	10.45	10.46	10.50	10.54
0232	농업용기계	1	10.38	10.42	10.43	10.47	10.48
0233	건설 및 광물처리기계	1	10.43	10.46	10.48	10.49	10.53
0234	음식품가공기계	1	10.41	10.46	10.47	10.49	10.51
0235	섬유기계	1	10.35	10.40	10.40	10.44	10.46
0236	금형 및 주형	1	10.29	10.31	10.32	10.36	10.37
0237	제지 및 인쇄용기계	1	10.38	10.42	10.45	10.48	10.51
0238	반도체 제조용기계	1	10.41	10.42	10.46	10.51	10.52
0239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1	10.38	10.41	10.43	10.45	10.48
0240	발전기 및 전동기	1	10.37	10.39	10.41	10.43	10.45
0241	변압기	1	10.33	10.36	10.38	10.40	10.41
0242	기타 전기변환장치	1	10.32	10.35	10.36	10.41	10.42
0243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1	10.30	10.34	10.36	10.39	10.40
0244	전선 및 케이블	1	10.28	10.29	10.35	10.44	10.46
0245	전지	1	10.40	10.42	10.45	10.47	10.55
0246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1	10.34	10.34	10.36	10.39	10.41
0247	기타 전기장치	1	10.39	10.42	10.44	10.49	10.53
0248	전자관	1	10.36	10.38	10.40	10.43	10.41
0249	디지털표시장치	1	10.42	10.46	10.47	10.51	10.59
0250	개별소자	1	10.42	10.46	10.48	10.49	10.51
0251	집적회로(IC)	1	10.52	10.57	10.65	10.76	10.79
0252	저항기 및 축전기	1	10.30	10.33	10.34	10.36	10.36
0253	전자코일 및 변성기	1	10.33	10.34	10.33	10.42	10.45
0254	인쇄회로기판	1	10.28	10.31	10.34	10.38	10.42
0255	기타전자부품	1	10.37	10.40	10.42	10.46	10.50
0256	TV	1	10.52	10.54	10.60	10.67	10.73
0257	음향기기	1	10.43	10.44	10.46	10.50	10.54
0258	기타영상 · 음향기기	1	10.50	10.48	10.54	10.57	10.65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05	2006	2007	2008	2009
0259	유선통신기기	1	10.49	10.51	10.54	10.61	10.66
0260	무선통신단말기	1	10.61	10.60	10.62	10.67	10.74
0261	무선통신시스템 및 방송장비	1	10.42	10.45	10.47	10.52	10.58
0262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10.44	10.46	10.45	10.52	10.58
0263	사무용기기	1	10.49	10.50	10.51	10.56	10.60
0264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1	10.40	10.43	10.44	10.47	10.53
0265	가정용 세탁기	1	10.41	10.41	10.40	10.44	10.47
0266	가정용 전열기기	1	10.38	10.40	10.40	10.45	10.48
0267	기타가정용 전기기기	1	10.42	10.43	10.44	10.47	10.50
0268	의료기기	1	10.45	10.49	10.51	10.55	10.59
0269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1	10.49	10.52	10.54	10.57	10.58
0270	측정 및 분석기기	1	10.53	10.61	10.64	10.68	10.75
0271	촬영기 및 영사기	1	10.53	10.60	10.61	10.68	10.84
0272	기타 광학기기	1	10.46	10.50	10.52	10.56	10.59
0273	시계	1	10.39	10.33	10.36	10.48	10.51
0274	승용차	1	10.40	10.42	10.43	10.45	10.48
0275	승합차	1	10.38	10.38	10.40	10.45	10.45
0276	화물자동차	1	10.38	10.40	10.40	10.43	10.46
0277	특장차	1	10.35	10.32	10.35	10.41	10.42
0278	자동차용 엔진	1	10.43	10.46	10.47	10.48	10.52
0279	자동차 부분품	1	10.31	10.34	10.35	10.39	10.40
0280	트레일러 및 콘테이너	1	10.41	10.45	10.43	10.44	10.47
0281	강철제 선박	1	10.30	10.34	10.34	10.36	10.38
0282	기타 선박	1	10.31	10.33	10.33	10.35	10.36
0283	선박수리 및 부분품	1	10.29	10.30	10.29	10.31	10.32
0284	철도차량	1	10.35	10.39	10.39	10.41	10.43
0285	항공기	1	10.41	10.40	10.43	10.43	10.48
0286	모터싸이클	1	10.31	10.34	10.34	10.38	10.38
0287	자전거 및 기타운수장비	1	10.37	10.38	10.36	10.44	10.47
0288	목재가구	1	10.33	10.37	10.37	10.40	10.41
0289	금속가구	1	10.35	10.38	10.39	10.44	10.46
0290	기타가구	1	10.42	10.47	10.47	10.51	10.50
0291	장난감 및 오락용품	1	10.37	10.40	10.39	10.41	10.52
0292	운동 및 경기용품	1	10.52	10.54	10.53	10.54	10.53
0293	악기	1	10.35	10.38	10.39	10.44	10.47
0294	문방구	1	10.31	10.34	10.34	10.37	10.39
0295	귀금속 및 보석	1	10.32	10.24	10.26	10.27	10.28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05	2006	2007	2008	2009
0296	모형 및 장식용품	1	10.28	10.30	10.31	10.33	10.34
0297	기타 제조업제품	1	10.38	10.42	10.42	10.43	10.45
0298	수력	1	10.20	10.29	10.29	10.29	10.29
0299	화력	1	10.18	10.21	10.22	10.27	10.26
0300	원자력	1	10.28	10.23	10.26	10.27	10.35
0301	기타발전	1	10.16	10.24	10.24	10.15	10.16
0302	도시가스	1	10.11	10.09	10.10	10.13	10.16
0303	증기 및 온수공급업	1	10.15	10.17	10.18	10.16	10.14
0304	수도	0	2.77	2.64	2.67	2.81	2.85
0305	주택건축	1	10.24	10.27	10.28	10.31	10.33
0306	비주택건축	1	10.26	10.28	10.29	10.32	10.34
0307	건축보수	1	10.25	10.28	10.29	10.33	10.35
0308	도로시설	0	5.43	5.43	5.55	5.94	5.83
0309	철도시설	0	6.69	6.80	6.93	7.23	7.12
0310	지하철시설	0	6.79	7.19	7.23	7.42	7.56
0311	항만시설	0	4.95	4.92	5.01	5.42	5.36
0312	공항시설	0	5.48	5.42	5.47	5.86	5.73
0313	하천사방	0	4.50	4.41	4.52	5.05	4.99
0314	상하수도시설	0	5.18	5.14	5.27	5.75	5.71
0315	농림수산토목	1	10.24	10.26	10.27	10.31	10.32
0316	도시토목	1	10.26	10.29	10.29	10.32	10.33
0317	전력시설	1	10.33	10.37	10.37	10.42	10.43
0318	통신시설	1	10.38	10.43	10.44	10.49	10.50
0319	기계조립설치	1	10.38	10.41	10.42	10.45	10.48
0320	기타건설	1	10.29	10.32	10.32	10.34	10.35
0321	도매	1	10.31	10.33	10.35	10.37	10.39
0322	소매	1	10.35	10.37	10.38	10.38	10.40
0323	일반음식점	1	11.58	11.69	11.73	12.04	11.99
0324	주점	1	10.76	10.90	10.82	10.90	10.94
0325	기타음식점	1	11.31	11.36	11.39	11.61	11.78
0326	숙박	1	10.31	10.32	10.32	10.32	10.34
0327	철도여객운송	0	3.78	3.61	3.35	3.55	3.75
0328	철도화물운송	1	11.14	10.79	10.80	10.80	10.86
0329	도로여객운송	0	3.88	3.90	3.91	4.58	3.91
0330	도로화물운송	1	10.22	10.25	10.25	10.28	10.29
0331	택배	1	10.23	10.26	10.26	10.31	10.34
0332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0	5.79	5.69	5.98	6.27	6.28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05	2006	2007	2008	2009
0333	외항운송	0	7.01	8.26	7.94	7.47	8.65
0334	항공운송	1	10.41	10.36	10.34	10.42	10.45
0335	육상운수보조서비스	1	10.13	10.15	10.15	10.17	10.19
0336	수상운수보조서비스	1	10.19	10.21	10.22	10.27	10.26
0337	항공운수보조서비스	1	10.12	10.13	10.14	10.15	10.17
0338	하역	1	10.37	10.38	10.41	10.47	10.50
0339	보관및창고	1	10.28	10.29	10.31	10.34	10.37
0340	기타 운수 관련 서비스	1	10.48	10.49	10.49	10.46	10.43
0341	우편	0	3.64	3.58	3.82	3.84	3.90
0342	전화	1	10.38	10.41	10.44	10.46	10.50
0343	초고속망서비스	1	10.39	10.39	10.40	10.43	10.49
0344	부가통신	1	10.57	10.54	10.56	10.62	10.63
0345	정보서비스	1	10.27	10.29	10.30	10.31	10.30
0346	지상파방송	0	4.67	4.83	4.70	4.93	4.32
0347	유선 및 위성방송	1	11.02	10.81	10.85	10.81	10.74
0348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취급기관	0	1.63	1.91	1.94	2.11	2.19
0349	비은행예금취급기관	0	1.54	1.88	1.91	1.90	1.87
0350	기타 금융중개기관	0	2.08	2.52	2.73	3.04	3.11
0351	생명보험	0	2.40	2.78	2.76	3.16	3.01
0352	비생명보험	0	3.37	4.02	3.38	3.78	3.86
035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0	1.70	1.89	1.55	2.04	1.87
0354	주거서비스	0	1.16	1.16	1.06	1.05	1.03
0355	부동산임대 및 공급	1	10.35	10.40	10.41	10.47	10.47
0356	부동산 관련 서비스	1	10.04	10.04	10.05	10.06	10.06
0357	연구기관(국공립)	0	2.23	2.29	2.30	2.42	2.47
0358	연구기관(비영리)	0	3.51	3.47	3.44	3.47	3.73
0359	연구기관(산업)	0	2.15	2.07	2.06	2.03	2.27
0360	기업내 연구개발	0	3.03	3.09	3.16	3.22	3.46
0361	법무 및 회계서비스	1	10.25	10.27	10.27	10.28	10.28
0362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1	10.53	10.55	10.54	10.51	10.52
0363	광고	1	13.52	13.51	13.38	13.32	13.06
0364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1	10.41	10.45	10.45	10.49	10.54
0365	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1	10.32	10.36	10.37	10.40	10.43
0366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1	10.30	10.32	10.32	10.34	10.36
0367	컴퓨터 관련 서비스	1	10.30	10.32	10.32	10.33	10.38
0368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1	10.22	10.18	10.15	10.22	10.22
0369	청소 및 소독서비스	1	10.21	10.22	10.23	10.24	10.24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05	2006	2007	2008	2009
0370	인력공급 및 알선	1	10.17	10.22	10.19	10.22	10.23
0371	기타 사업서비스	1	10.33	10.34	10.34	10.36	10.38
0372	중앙정부	0	3.43	3.50	3.56	3.63	3.57
0373	지방정부	0	2.31	2.32	2.34	2.44	2.40
0374	교육기관(국공립)	0	1.60	1.60	1.59	1.70	1.85
0375	교육기관(비영리)	0	1.43	1.38	1.37	1.44	1.59
0376	교육기관(산업)	0	2.68	2.80	2.84	2.85	3.04
0377	의료 및 보건(국공립)	0	4.16	4.22	4.30	4.52	4.31
0378	의료 및 보건(비영리)	0	4.80	4.77	4.74	4.81	4.90
0379	의료 및 보건(산업)	0	4.19	4.19	4.14	4.24	4.24
0380	사회복지사업(국공립)	0	2.75	2.74	2.82	2.94	2.71
0381	사회복지사업(비영리)	0	2.58	2.63	2.59	2.65	2.75
0382	위생서비스(국공립)	0	3.84	3.89	4.00	4.15	3.99
0383	위생서비스(산업)	0	3.00	3.13	3.19	3.35	3.73
0384	신문	0	7.18	7.20	7.19	7.27	7.17
0385	출판	0	6.94	6.90	6.87	6.75	6.62
0386	문화서비스(국공립)	0	3.09	3.09	3.12	3.31	3.23
0387	문화서비스(기타)	0	4.19	4.04	4.06	4.09	4.03
0388	영화제작 및 배급	1	10.44	10.46	10.45	10.43	10.37
0389	영화상영	1	10.40	10.54	10.58	10.62	10.60
0390	연극,음악 및 기타예술	1	10.29	10.31	10.30	10.31	10.32
0391	운동 및 경기 관련 서비스	1	10.24	10.26	10.25	10.28	10.28
0392	기타 오락서비스	1	10.31	10.32	10.32	10.36	10.37
0393	산업 및 전문단체	0	4.37	4.41	4.36	4.47	4.40
0394	기타 사회단체(비영리)	0	4.88	5.04	5.02	5.25	5.21
0395	자동차수리서비스	1	10.31	10.33	10.33	10.36	10.38
0396	기타개인수리서비스	1	10.26	10.28	10.29	10.33	10.34
0397	세탁	1	10.31	10.32	10.33	10.37	10.37
0398	이용 및 미용	1	10.32	10.31	10.31	10.33	10.35
0399	가사서비스	1	10.26	10.28	10.28	10.29	10.29
0400	기타개인서비스	1	10.29	10.31	10.32	10.36	10.36
0401	사무용품	1	10.33	10.35	10.36	10.39	10.41
0402	가계외소비지출	1	11.33	11.40	11.36	11.54	11.55
0403	분류불명	1	11.38	11.10	11.22	11.30	11.28

주: 면세 여부에서 0=면세, 1=정상과세를 의미한다.

〈부표 3〉 기본부문별 유효 부가가치세율(2000년, 2003년, 404개)

(단위: %)

부문번호	내용	면세여부	2000	2003	부문번호	내용	면세여부	2000	2003
0001	벼	0	1.49	2.06	0037	연 및 아연광석	1	10.47	10.00
0002	보리	0	3.11	3.05	0038	기타 비철금속광석	1	11.11	10.41
0003	밀	0	4.48	4.43	0039	모래 및 자갈	1	10.24	10.24
0004	잡곡	0	3.93	3.56	0040	쇄석	1	10.22	10.18
0005	채소	0	2.34	2.36	0041	기타 건설용석재	1	10.51	10.25
0006	과실	0	3.24	3.42	0042	석회석	1	10.23	10.22
0007	콩류	0	2.44	2.37	0043	요업원료광물	1	10.27	10.26
0008	감자류	0	1.35	1.69	0044	원염	0	3.15	3.18
0009	유지작물	0	0.99	1.31	0045	기타 비금속광물	1	10.71	10.38
0010	약용작물	0	1.32	1.31	0046	도축육	0	7.23	7.35
0011	기타 식용작물	0	1.34	1.16	0047	가금육	0	6.58	7.85
0012	섬유작물	1	10.11	10.09	0048	육가공품	1	12.56	12.34
0013	잎담배	0	2.19	2.10	0049	우유	0	6.87	7.36
0014	화훼작물	1	10.18	10.16	0050	유제품	1	12.57	12.54
0015	천연고무	1	10.00	10.00	0051	아이스크림	1	10.89	10.82
0016	종자 및 묘목	1	10.35	10.35	0052	어육 및 어묵	1	12.25	12.29
0017	기타 비식용작물	1	10.17	10.19	0053	수산통조림	1	12.39	12.41
0018	낙농	0	7.16	7.20	0054	수산냉동품	0	4.92	5.26
0019	한육우	0	7.47	6.87	0055	수산저장품	0	7.02	6.29
0020	양돈	0	8.38	8.85	0056	기타 수산식품	1	12.79	13.21
0021	가금	0	7.02	8.22	0057	정미	0	1.66	1.98
0022	기타축산	0	3.95	4.08	0058	정맥	0	3.12	2.66
0023	육림	1	10.16	10.17	0059	제분	0	4.12	4.68
0024	원목	1	10.27	10.27	0060	원당	1	10.00	10.00
0025	식용임산물	0	0.62	0.92	0061	정제당	1	10.18	10.19
0026	기타 임산물	0	2.40	2.80	0062	전분	1	12.54	12.41
0027	해면어종	0	4.98	5.09	0063	당류	1	11.17	11.36
0028	내수면어종	0	3.38	3.28	0064	빵 및 곡분과자	1	11.38	11.41
0029	해면양식어종	0	4.96	5.51	0065	설탕과자	1	10.66	10.66
0030	내수면양식어종	0	6.12	6.87	0066	국수류	1	11.56	11.41
0031	무연탄	0	5.02	5.37	0067	정제염	1	11.45	11.23
0032	유연탄	1	10.00	10.00	0068	발효조미료	1	10.40	10.43
0033	원유	1	10.00	10.00	0069	기타조미료	1	11.22	11.09
0034	천연가스(LNG)	1	10.00	10.00	0070	장류	1	11.04	10.99
0035	철광석	1	10.33	10.28	0071	동물성유지	1	13.78	13.64
0036	동광석	1	10.00	10.00	0072	식물성유지 및 식용유	1	11.29	11.43

부문번호	내용	면세여부	2000	2003	부문번호	내용	면세여부	2000	2003
0073	과실 및 채소가공품	1	11.36	11.21	0109	직물제품	1	10.37	10.35
0074	커피 및 차류	1	10.83	10.78	0110	기타 섬유제품	1	10.27	10.26
0075	인삼식품	1	10.78	10.72	0111	끈,로프 및 어망	1	10.33	10.31
0076	누룩 및 맥아	1	11.84	11.82	0112	가죽	1	13.55	13.39
0077	두부	0	3.33	3.49	0113	모피	1	12.96	12.16
0078	기타 식료품	1	11.17	11.21	0114	가방 및 핸드백	1	10.76	10.68
0079	주정	1	11.17	10.99	0115	가죽신발	1	11.22	11.14
0080	소주	1	10.43	10.32	0116	운동화 및 기타신발	1	10.73	10.66
0081	맥주	1	10.31	10.27	0117	기타 가죽제품	1	11.24	11.24
0082	기타주류	1	10.53	10.51	0118	제재목	1	10.33	10.33
0083	청량음료	1	10.76	10.70	0119	합판	1	10.31	10.31
0084	생수 및 얼음	1	10.32	10.27	0120	재생 및 강화목재	1	10.28	10.31
0085	배합사료	1	11.57	11.51	0121	건축용목제품	1	10.35	10.37
0086	담배	1	10.38	10.28	0122	목제용기	1	10.29	10.29
0087	견사	1	11.62	10.77	0123	기타목제품	1	10.34	10.32
0088	모사	1	11.77	12.60	0124	펄프	1	10.47	10.52
0089	면사	1	10.24	10.22	0125	신문용지	1	10.40	10.36
0090	마사	1	10.21	10.24	0126	인쇄용지	1	10.39	10.38
0091	재생섬유사	1	10.75	10.61	0127	기타 원지 및 판지	1	10.41	10.40
0092	합성섬유사	1	10.35	10.33	0128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1	10.37	10.36
0093	재봉사 및 기타섬유사	1	10.39	10.39	0129	종이용기	1	10.35	10.34
0094	견직물	1	10.59	10.47	0130	종이문구 및 사무용지	1	10.39	10.38
0095	모직물	1	10.98	11.20	0131	위생용 종이제품	1	10.45	10.44
0096	면직물	1	10.23	10.24	0132	기타 종이제품	1	10.44	10.40
0097	마직물	1	10.37	10.37	0133	신문	0	7.03	7.32
0098	재생섬유직물	1	10.45	10.42	0134	출판	0	7.50	6.80
0099	합성섬유직물	1	10.37	10.36	0135	인쇄	1	10.30	10.29
0100	기타섬유직물	1	10.29	10.32	0136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	1	10.41	10.42
0101	편조원단	1	10.29	10.31	0137	연탄	0	5.12	8.63
0102	섬유표백 및 염색	1	10.58	10.45	0138	기타 석탄제품	1	10.11	10.07
0103	편직제의류	1	10.42	10.55	0139	나프타	1	10.04	10.04
0104	편직제장신품	1	10.46	10.45	0140	휘발유	1	10.03	10.03
0105	직물제의류	1	10.49	10.48	0141	제트유	1	10.05	10.05
0106	기타 장신품	1	10.55	10.69	0142	등유	1	10.07	10.07
0107	가죽의류	1	12.17	11.94	0143	경유	1	10.06	10.05
0108	모피의류	1	12.33	11.73	0144	중유	1	10.05	10.05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00	2003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00	2003
0145	액화석유가스	1	10.08	10.07	0181	산업용 도자기	1	10.54	10.42
0146	윤활유제품	1	10.31	10.27	0182	가정용 도자기	1	10.50	10.60
0147	기타 석유정제품	1	10.16	10.15	0183	내화요업제품	1	10.36	10.35
0148	석유화학기초제품	1	10.14	10.11	0184	건설용 점토제품	1	10.35	10.32
0149	석유화학중간제품	1	10.27	10.22	0185	시멘트	1	10.36	10.39
0150	석탄화합물	1	10.32	10.24	0186	레미콘	1	10.37	10.34
0151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1	10.45	10.43	0187	콘크리트제품	1	10.41	10.39
0152	산업용가스	1	10.29	10.34	0188	석회 및 석고제품	1	10.59	10.46
0153	기초무기화합물	1	10.53	10.47	0189	석제품	1	10.35	10.28
0154	합성수지	1	10.29	10.26	0190	석면 및 암면제품	1	10.48	10.39
0155	합성고무	1	10.38	10.34	0191	연마제	1	10.35	10.32
0156	재생섬유	1	10.57	10.62	0192	아스팔트제품	1	10.36	10.25
0157	합성섬유	1	10.36	10.32	0193	기타토석제품	1	10.40	10.33
0158	질소화합물	1	10.32	10.28	0194	선철	1	10.37	10.53
0159	비료	1	10.45	10.42	0195	합금철	1	10.62	10.37
0160	농약	1	10.51	10.49	0196	조강	1	10.38	10.43
0161	의약품	1	10.84	10.78	0197	철근 및 봉강	1	10.36	10.37
0162	화장품 및 치약	1	10.69	10.62	0198	형강	1	10.35	10.37
0163	비누및세제	1	10.81	10.70	0199	선재 및 궤조	1	10.35	10.38
0164	염료,안료 및 유연제	1	10.40	10.40	0200	열간압연강재	1	10.35	10.38
0165	도료	1	10.37	10.35	0201	강관(주철강관제외)	1	10.36	10.34
0166	잉크	1	10.40	10.41	0202	냉간압연강재	1	10.32	10.36
0167	접착제 및 젤라틴	1	10.41	10.37	0203	주철물	1	10.42	10.43
0168	화약 및 불꽃제품	1	10.40	10.39	0204	단조물	1	10.32	10.33
0169	전자기기용기록매체	1	10.46	10.41	0205	표면처리강재	1	10.34	10.38
0170	사진용화학제품	1	10.44	10.42	0206	기타 철강1차제품	1	10.24	10.37
0171	기타화학제품	1	10.40	10.35	0207	동괴	1	10.17	10.13
0172	플라스틱1차제품	1	10.33	10.30	0208	알루미늄괴	1	10.36	10.36
0173	산업용 플라스틱제품	1	10.30	10.28	0209	연 및 아연괴	1	10.45	10.22
0174	가정용 플라스틱제품	1	10.30	10.28	0210	금은괴	1	10.39	10.21
0175	타이어 및 튜브	1	10.30	10.29	0211	기타 비철금속괴	1	10.50	10.37
0176	산업용 고무제품	1	10.28	10.27	0212	동1차제품	1	10.22	10.20
0177	기타 고무제품	1	10.33	10.32	0213	알루미늄1차제품	1	10.34	10.35
0178	판유리 및 1차유리	1	10.42	10.36	0214	기타 비철금속1차제품	1	10.40	10.34
0179	산업용 유리제품	1	10.30	10.31	0215	기타 비철금속1차제품	1	10.33	10.32
0180	기타 유리제품	1	10.44	10.43	0216	구조물용 금속제품	1	10.31	10.31

부문번호	내용	면세여부	2000	2003	부문번호	내용	면세여부	2000	2003
0217	설치용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1	10.30	10.34	0253	기타 전기장치	1	10.39	10.38
0218	금속포장용기	1	10.31	10.32	0254	전자관	1	10.34	10.35
0219	공구류	1	10.35	10.34	0255	평면 디지털 표시장치	1	10.35	10.36
0220	나사제품	1	10.31	10.30	0256	개별소자	1	10.35	10.40
0221	철선제품	1	10.29	10.30	0257	집적회로(IC)	1	10.26	10.39
0222	부착용금속제품	1	10.31	10.29	0258	저항기 및 축전기	1	10.30	10.32
0223	금속처리	1	10.26	10.23	0259	전자코일 및 변성기	1	10.32	10.31
0224	가정용금속제품	1	10.32	10.32	0260	인쇄회로기판	1	10.25	10.25
0225	기타금속제품	1	10.33	10.33	0261	기타전자부품	1	10.44	10.42
0226	내연기관 및 터빈	1	10.40	10.40	0262	TV	1	10.49	10.50
0227	밸브	1	10.26	10.26	0263	VTR	1	10.46	10.45
0228	베어링기어 및 전동요소	1	10.29	10.29	0264	음향기기	1	10.45	10.45
0229	산업용운반기계	1	10.35	10.37	0265	기타영상 · 음향기기	1	10.49	10.50
0230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장비	1	10.33	10.34	0266	유선통신기기	1	10.42	10.41
0231	보일러	1	10.40	10.40	0267	무선통신단말기	1	10.34	10.43
0232	난방및조리기기	1	10.42	10.41	0268	무선통신시스템 및 방송장비	1	10.41	10.31
0233	펌프 및 압축기	1	10.31	10.34	0269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10.63	10.43
0234	공기 및 액체여과청정기	1	10.39	10.39	0270	사무용기기	1	10.37	10.58
0235	기타일반목적용기계	1	10.34	10.36	0271	가정용냉장고 및 냉동고	1	10.42	10.39
0236	금속절삭가공기계	1	10.29	10.30	0272	가정용 세탁기	1	10.42	10.41
0237	금속성형처리기계	1	10.39	10.39	0273	가정용 전열기기	1	10.33	10.38
0238	농업용기계	1	10.35	10.38	0274	기타가정용전기기기	1	10.42	10.46
0239	건설 및 광물처리기계	1	10.39	10.43	0275	의료기기	1	10.49	10.47
0240	음식품가공기계	1	10.48	10.47	0276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1	10.69	10.72
0241	섬유기계	1	10.36	10.36	0277	측정 및 분석기기	1	10.47	10.46
0242	금형및주형	1	10.29	10.29	0278	촬영기 및 영사기	1	10.64	10.59
0243	제지 및 인쇄용기계	1	10.48	10.50	0279	기타광학기기	1	10.45	10.45
0244	반도체제조용기계	1	10.35	10.38	0280	시계	1	10.62	10.55
0245	기타특수목적용기계	1	10.37	10.39	0281	승용차	1	10.37	10.34
0246	발전기 및 전동기	1	10.35	10.37	0282	승합차	1	10.38	10.42
0247	변압기	1	10.37	10.32	0283	화물자동차	1	10.41	10.38
0248	기타전기변환장치	1	10.27	10.31	0284	특장차	1	10.33	10.34
0249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1	10.27	10.27	0285	자동차용엔진	1	10.44	10.42
0250	전선 및 케이블	1	10.26	10.25	0286	자동차부분품	1	10.31	10.31
0251	전지	1	10.46	10.42	0287	트레일러 및 콘테이너	1	10.38	10.40
0252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1	10.36	10.38	0288	강철제선박	1	10.32	10.30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00	2003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00	2003
0289	기타선박	1	10.36	10.28	0325	도시토목	1	10.26	10.27
0290	선박수리 및 부분품	1	10.33	10.34	0326	전력시설	1	10.30	10.32
0291	철도차량	1	10.44	10.36	0327	통신시설	1	10.35	10.37
0292	항공기	1	10.48	10.44	0328	기타건설	1	10.35	10.38
0293	모터싸이클	1	10.40	10.35	0329	도매	1	10.27	10.32
0294	자전거 및 기타운수장비	1	10.41	10.36	0330	소매	1	10.32	10.37
0295	목재가구	1	10.39	10.38	0331	음식점	1	11.34	11.35
0296	금속가구	1	10.33	10.36	0332	숙박	1	10.27	10.32
0297	기타가구	1	10.42	10.47	0333	철도여객운송	0	4.00	4.37
0298	장난감 및 오락용품	1	10.33	10.33	0334	철도화물운송	1	10.46	10.56
0299	운동 및 경기용품	1	10.57	10.56	0335	도로여객운송	0	4.10	4.18
0300	악기	1	10.41	10.40	0336	도로화물운송	1	10.22	10.23
0301	문방구	1	10.37	10.38	0337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0	6.00	6.26
0302	귀금속 및 보석	1	10.42	10.31	0338	외항운송	0	9.16	8.94
0303	모형 및 장식용품	1	10.36	10.42	0339	항공운송	1	10.35	10.48
0304	기타제조업제품	1	10.38	10.48	0340	육상운수보조서비스	1	10.17	10.16
0305	수력	1	10.24	10.24	0341	수상운수보조서비스	1	10.17	10.16
0306	화력	1	10.26	10.20	0342	항공운수보조서비스	1	10.26	10.25
0307	원자력	1	10.21	10.17	0343	하역	1	10.23	10.23
0308	자가발전	1	10.21	10.18	0344	보관및창고	1	10.27	10.29
0309	도시가스	1	10.10	10.10	0345	기타운수관련서비스	1	10.40	10.39
0310	열공급업	1	10.24	10.19	0346	우편	0	1.55	1.95
0311	수도	0	3.52	3.35	0347	전화	1	10.20	10.23
0312	철근철골조 주택	1	10.27	10.27	0348	초고속망서비스	1	10.36	10.34
0313	기타주택	1	10.35	10.33	0349	부가통신	1	10.25	10.25
0314	철근철골조 비주택	1	10.26	10.26	0350	지상파방송	0	4.84	4.79
0315	기타비주택	1	10.38	10.32	0351	유선방송	1	10.51	10.95
0316	건축보수	1	10.27	10.27	0352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취급기관	0	1.57	1.57
0317	도로시설	0	5.13	5.38	0353	비은행예금취급기관	0	2.52	2.50
0318	철도시설	0	7.13	6.93	0354	기타금융중개기관	0	1.91	2.37
0319	지하철시설	0	7.52	7.20	0355	생명보험	0	2.17	2.20
0320	항만시설	0	5.26	4.89	0356	손해보험	0	3.89	4.04
0321	공항시설	0	5.55	5.27	035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0	1.27	2.07
0322	하천사방	0	4.96	4.90	0358	주택소유	0	1.27	1.36
0323	상하수도시설	0	5.27	5.00	0359	부동산임대	1	10.28	10.29
0324	농림수산토목	1	10.24	10.24	0360	부동산 관련 서비스	1	10.03	10.04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00	2003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2000	2003
0361	법무 및 회계서비스	1	10.22	10.24	0383	의료 및 보건(산업)	0	5.39	5.03
0362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1	10.32	10.40	0384	사회복지사업(국공립)	0	4.17	4.11
0363	기타공학 관련 서비스	1	10.32	10.31	0385	사회복지사업(비영리)	0	3.67	3.63
0364	소프트웨어개발공급	1	10.21	10.36	0386	위생서비스(국공립)	0	4.14	4.32
0365	컴퓨터 관련 서비스	1	10.37	10.40	0387	위생서비스(산업)	0	2.56	2.80
0366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1	10.19	10.21	0388	문화서비스(국공립)	0	3.81	4.08
0367	광고	1	13.99	13.81	0389	문화서비스(기타)	0	5.17	5.54
0368	정보제공서비스	1	10.50	10.49	0390	영화	1	10.31	10.34
0369	청소 및 소독서비스	1	10.20	10.22	0391	연극,음악 및 기타예술	1	10.33	10.34
0370	농림어업서비스	1	10.29	10.34	0392	운동 및 경기 관련 서비스	1	10.28	10.29
0371	기타사업서비스	1	10.25	10.29	0393	기타오락서비스	1	10.39	10.31
0372	중앙정부	0	3.94	3.29	0394	산업 및 전문단체	0	4.14	4.07
0373	지방정부	0	2.11	2.22	0395	기타사회단체	0	5.26	5.42
0374	교육기관(국공립)	0	1.43	1.64	0396	자동차수리서비스	1	10.30	10.31
0375	교육기관(사립)	0	1.18	1.13	0397	기타개인수리서비스	1	10.26	10.25
0376	교육기관(산업)	0	3.34	3.28	0398	세탁	1	10.33	10.44
0377	연구기관(국공립)	0	2.08	2.00	0399	이용및미용	1	10.28	10.31
0378	연구기관(비영리)	0	2.73	2.66	0400	가사서비스	1	10.24	10.23
0379	연구기관(산업)	0	2.61	2.73	0401	기타개인서비스	1	10.28	10.31
0380	기업내연구개발	0	2.71	2.56	0402	사무용품	1	10.37	10.37
0381	의료 및 보건(국공립)	0	3.82	3.55	0403	가계외 소비지출	1	11.28	11.26
0382	의료 및 보건(비영리)	0	4.44	4.33	0404	분류불명	1	10.40	11.18

주: 면세 여부에서 0=면세, 1=정상과세를 의미한다.

〈부표 4〉 기본부문별 유효 부가가치세율(1995년, 1998년, 402개)

(단위: %)

부문번호	내용	면세여부	1995	1998	부문번호	내용	면세여부	1995	1998
0001	벼	0	1.39	1.70	0035	철광석	1	10.21	10.36
0002	보리	0	2.71	2.68	0036	동광석	1	10.42	10.15
0003	밀	0	3.81	3.84	0037	연 및 아연광석	1	10.35	10.50
0004	잡곡	0	2.92	3.51	0038	기타 비철금속광석	1	10.33	10.55
0005	채소	0	1.77	2.13	0039	모래 및 자갈	1	10.13	10.16
0006	과실	0	2.00	2.60	0040	쇄석	1	10.19	10.20
0007	콩류	0	1.68	2.22	0041	기타건설용석재	1	10.20	10.19
0008	감자류	0	1.08	1.06	0042	석회석	1	10.19	10.20
0009	유지작물	0	0.94	1.10	0043	요업원료광물	1	10.26	10.26
0010	약용작물	0	0.72	0.87	0044	원염	0	2.51	3.83
0011	기타식용작물	0	2.31	1.38	0045	기타비금속광물	1	10.23	10.29
0012	섬유작물	1	10.14	10.43	0046	도축육	0	7.53	9.74
0013	잎담배	0	1.87	2.09	0047	가금육	0	8.23	8.96
0014	화훼작물	1	10.25	10.34	0048	육가공품	1	12.49	13.19
0015	천연고무	1	10.00	10.00	0049	우유	0	5.69	6.94
0016	종자 및 묘목	1	10.27	10.32	0050	유제품	1	11.93	12.61
0017	기타 비식용작물	1	10.35	10.35	0051	아이스크림	1	11.06	11.22
0018	낙농	0	5.61	7.87	0052	어육 및 어묵	1	11.76	12.02
0019	육우	0	7.55	12.94	0053	수산통조림	1	11.84	12.21
0020	양돈	0	9.14	9.84	0054	수산냉동품	0	4.15	4.37
0021	가금	0	9.59	10.40	0055	수산저장품	0	4.32	4.72
0022	기타축산	0	4.05	4.78	0056	기타수산식품	1	12.15	12.48
0023	육림	1	10.31	10.31	0057	정미	0	1.31	1.66
0024	원목	1	10.18	10.19	0058	정맥	0	2.98	3.08
0025	식용임산물	0	0.50	0.51	0059	제분	0	4.05	4.13
0026	기타임산물	0	1.35	2.25	0060	원당	1	10.00	10.00
0027	해면어획	0	4.08	4.41	0061	정제당	1	10.20	10.16
0028	내수면어획	0	2.25	3.33	0062	전분	1	11.73	12.33
0029	해면양식	0	3.28	3.78	0063	당류	1	10.96	11.16
0030	내수면양식	0	3.78	4.60	0064	빵 및 곡분과자	1	11.43	11.51
0031	무연탄	0	5.06	5.88	0065	설탕과자	1	10.58	10.62
0032	유연탄	1	10.00	10.00	0066	국수류	1	11.46	11.59
0033	원유	1	10.00	10.00	0067	정제염	0	3.40	4.05
0034	천연가스	1	10.00	10.00	0068	발효조미료	1	10.54	10.44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5	1998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5	1998
0069	기타조미료	1	11.08	11.22	0104	섬유표백 및 염색	1	10.39	10.43
0070	장류	1	10.89	11.04	0105	편직제의류	1	10.52	10.39
0071	동물성유지	1	13.85	14.65	0106	편직제장신품	1	10.53	10.61
0072	식물성유지 및 식용유	1	11.02	11.24	0107	직물제의류	1	10.47	10.47
0073	과실 및 채소가공품	1	10.97	11.17	0108	기타장신품	1	10.64	10.76
0074	커피 및 차류	1	11.01	10.76	0109	가죽의류	1	12.18	12.59
0075	인삼식품	1	10.51	10.55	0110	모피의류	1	12.06	12.73
0076	누룩 및 맥아	1	11.85	11.70	0111	직물제품	1	10.39	10.39
0077	두부	0	3.20	3.32	0112	기타섬유제품	1	10.44	10.29
0078	기타식료품	1	11.25	11.42	0113	끈,로프 및 어망	1	10.36	10.35
0079	주정	1	10.99	11.04	0114	가죽	1	13.72	14.44
0080	소주	1	10.54	10.51	0115	모피	1	12.72	13.89
0081	탁주 및 약주	1	11.31	11.29	0116	가방 및 핸드백	1	10.94	11.09
0082	맥주	1	10.33	10.29	0117	가죽신발	1	11.46	11.88
0083	기타주류	1	10.38	10.37	0118	운동화 및 기타신발	1	10.76	10.79
0084	청량음료	1	10.51	10.53	0119	기타가죽제품	1	11.58	11.69
0085	광천수 및 생수	1	10.32	10.32	0120	제재목	1	10.26	10.33
0086	얼음	1	10.74	10.67	0121	합판	1	10.29	10.29
0087	배합사료	1	11.44	11.59	0122	재생 및 강화목재	1	10.31	10.34
0088	담배	1	10.35	10.39	0123	건축용목제품	1	10.31	10.35
0089	견사	1	11.80	12.24	0124	목제용기	1	10.28	10.32
0090	모사	1	12.32	12.48	0125	기타 목제품	1	10.32	10.35
0091	면사	1	10.30	10.48	0126	펄프	1	10.37	10.42
0092	마사	1	10.28	10.45	0127	신문용지	1	10.35	10.36
0093	재생섬유사	1	10.46	10.58	0128	인쇄용지	1	10.35	10.36
0094	합성섬유사	1	10.51	10.42	0129	기타원지 및 판지	1	10.35	10.42
0095	재봉사 및 기타섬유사	1	10.54	10.54	013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1	10.32	10.35
0096	견직물	1	10.77	10.97	0131	종이용기	1	10.33	10.36
0097	모직물	1	11.18	11.30	0132	종이문구 및 사무용지	1	10.35	10.37
0098	면직물	1	10.36	10.44	0133	위생용종이제품	1	10.36	10.39
0099	마직물	1	10.42	10.46	0134	기타종이제품	1	10.36	10.39
0100	재생섬유직물	1	10.40	10.41	0135	신문	0	5.70	5.89
0101	합성섬유직물	1	10.45	10.36	0136	출판	0	6.38	6.72
0102	기타섬유직물	1	10.38	10.43	0137	인쇄	1	10.26	10.29
0103	편조원단	1	10.52	10.44	0138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	1	10.32	10.35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5	1998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5	1998
0139	연탄	0	7.15	7.50	0174	플라스틱1차제품	1	10.31	10.29
0140	기타 석탄제품	1	10.13	10.08	0175	산업용플라스틱제품	1	10.30	10.30
0141	나프타	1	10.07	10.05	0176	가정용플라스틱제품	1	10.30	10.31
0142	휘발유	1	10.04	10.05	0177	타이어 및 튜브	1	10.32	10.28
0143	제트유	1	10.08	10.05	0178	산업용 고무제품	1	10.30	10.32
0144	등유	1	10.10	10.09	0179	기타 고무제품	1	10.31	10.32
0145	경유	1	10.07	10.06	0180	판유리 및 1차유리	1	10.37	10.42
0146	중유	1	10.08	10.07	0181	산업용 유리제품	1	10.29	10.31
0147	액화석유가스	1	10.10	10.07	0182	기타 유리제품	1	10.50	10.50
0148	윤활유제품	1	10.37	10.30	0183	산업용 도자기	1	10.31	10.34
0149	기타석유정제품	1	10.28	10.19	0184	가정용 도자기	1	10.32	10.46
0150	석유화학기초제품	1	10.18	10.13	0185	내화요업제품	1	10.34	10.37
0151	석유화학중간제품	1	10.27	10.25	0186	건설용점토제품	1	10.31	10.33
0152	석탄화합물	1	10.34	10.34	0187	시멘트	1	10.25	10.28
0153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1	10.49	10.49	0188	레미콘	1	10.28	10.32
0154	산업용가스	1	10.26	10.28	0189	콘크리트제품	1	10.31	10.33
0155	기초무기화합물	1	10.45	10.54	0190	석회 및 석고제품	1	10.65	10.71
0156	합성수지	1	10.30	10.29	0191	석제품	1	10.30	10.33
0157	합성고무	1	10.39	10.38	0192	석면 및 암면제품	1	10.40	10.46
0158	재생섬유	1	10.50	10.54	0193	연마제	1	10.34	10.38
0159	합성섬유	1	10.35	10.38	0194	아스팔트제품	1	10.32	10.33
0160	질소화합물	1	10.35	10.35	0195	기타토석제품	1	10.32	10.39
0161	비료	1	10.46	10.48	0196	선철	1	10.28	10.29
0162	농약	1	10.56	10.53	0197	합금철	1	10.32	10.37
0163	의약품	1	10.60	10.67	0198	강반성품(조강)	1	10.30	10.31
0164	화장품 및 치약	1	10.46	10.49	0199	철근 및 봉강	1	10.29	10.30
0165	비누 및 세제	1	10.68	10.74	0200	형강	1	10.28	10.30
0166	염료,안료 및 유연제	1	10.42	10.40	0201	선재 및 궤조	1	10.29	10.28
0167	도료	1	10.37	10.37	0202	열간압연강재	1	10.29	10.27
0168	잉크	1	10.44	10.41	0203	강관(주철강관제외)	1	10.31	10.29
0169	접착제 및 젤라틴	1	10.43	10.41	0204	냉간압연강재	1	10.31	10.29
0170	화약 및 불꽃제품	1	10.37	10.46	0205	주철물	1	10.39	10.41
0171	전자기기용기록매체	1	10.36	10.33	0206	단조물	1	10.30	10.33
0172	사진용 화학제품	1	10.39	10.47	0207	표면처리강재	1	10.33	10.32
0173	기타 화학제품	1	10.42	10.39	0208	기타 철강1차제품	1	10.40	10.43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5	1998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5	1998
0209	동괴	1	10.41	10.22	0244	금형 및 주형	1	10.32	10.29
0210	알루미늄괴	1	10.34	10.37	0245	제지 및 인쇄용기계	1	10.51	10.55
0211	연 및 아연괴	1	10.35	10.42	0246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1	10.39	10.39
0212	금은괴	1	10.40	10.30	0247	발전기 및 전동기	1	10.38	10.39
0213	기타 비철금속괴	1	10.39	10.42	0248	변압기	1	10.32	10.39
0214	동1차제품	1	10.38	10.28	0249	기타전기변환장치	1	10.32	10.35
0215	알루미늄1차제품	1	10.36	10.38	0250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1	10.33	10.37
0216	기타 비철금속1차제품	1	10.42	10.46	0251	전선 및 케이블	1	10.34	10.31
0217	건물용금속제품	1	10.33	10.34	0252	전지	1	10.43	10.43
0218	금속구조물	1	10.27	10.26	0253	전구 및 조명장치	1	10.39	10.42
0219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1	10.35	10.31	0254	기타 전기장비	1	10.41	10.45
0220	금속포장용기	1	10.31	10.32	0255	전자관	1	10.38	10.35
0221	공구류	1	10.37	10.33	0256	기타전자표시장치	1	10.63	10.38
0222	나사제품	1	10.37	10.33	0257	개별소자	1	10.43	10.36
0223	철선제품	1	10.33	10.28	0258	집적회로(IC)	1	10.21	10.25
0224	부착용금속제품	1	10.32	10.32	0259	저항기 및 축전기	1	10.35	10.33
0225	금속처리	1	10.33	10.28	0260	전자코일 및 변성기	1	10.39	10.35
0226	가정용금속제품	1	10.33	10.33	0261	인쇄회로기판	1	10.28	10.24
0227	기타금속제품	1	10.34	10.35	0262	기타전자부품	1	10.53	10.53
0228	엔진 및 터빈	1	10.40	10.38	0263	TV	1	10.48	10.44
0229	밸브	1	10.29	10.26	0264	VTR	1	10.38	10.40
0230	베어링,기어 및 전동요소	1	10.31	10.32	0265	음향기기	1	10.47	10.48
0231	산업용운반기계	1	10.33	10.36	0266	기타영상음향기기	1	10.61	10.63
0232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장비	1	10.31	10.33	0267	유선통신기기	1	10.48	10.45
0233	보일러	1	10.35	10.38	0268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1	10.50	10.39
0234	난방 및 조리기기	1	10.40	10.39	0269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10.50	10.45
0235	펌프 및 압축기	1	10.36	10.37	0270	사무용기기	1	11.04	10.82
0236	공기 및 액체여과청정기	1	10.37	10.39	0271	냉장고	1	10.40	10.51
0237	기타 일반목적용기계	1	10.34	10.35	0272	세탁기	1	10.39	10.53
0238	금속절삭가공기계	1	10.32	10.35	0273	선풍기	1	10.37	10.51
0239	금속성형처리기계	1	10.39	10.42	0274	가정용 전열기기	1	10.36	10.53
0240	농업용기계	1	10.37	10.37	0275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1	10.45	10.55
0241	건설 및 광물처리기계	1	10.36	10.38	0276	의료기기	1	10.56	10.51
0242	음식품가공기계	1	10.41	10.44	0277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1	10.77	10.79
0243	섬유기계	1	10.36	10.41	0278	측정 및 분석기기	1	10.81	10.66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5	1998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5	1998
0279	촬영기 및 영사기	1	10.75	10.85	0314	기타주택	1	10.35	10.33
0280	기타 광학기기	1	10.51	10.46	0315	철근철골조비주택	1	10.29	10.25
0281	시계	1	10.63	10.54	0316	기타비주택	1	10.34	10.36
0282	승용차	1	10.33	10.41	0317	건축보수	1	10.29	10.25
0283	승합차	1	10.43	10.52	0318	도로시설	0	5.74	4.52
0284	화물차	1	10.37	10.43	0319	철도시설	0	7.94	6.36
0285	특장차	1	10.46	10.46	0320	지하철시설	0	7.31	6.45
0286	자동차용엔진	1	10.42	10.58	0321	항만시설	0	5.48	4.91
0287	자동차부분품	1	10.31	10.35	0322	공항시설	0	7.11	4.54
0288	트레일러 및 콘테이너	1	10.35	10.34	0323	하천사방	0	5.44	5.44
0289	강철제선박	1	10.35	10.27	0324	상하수도시설	0	6.47	5.71
0290	기타선박	1	10.41	10.23	0325	농림수산토목	1	10.23	10.23
0291	선박수리 및 부분품	1	10.45	10.37	0326	도시토목	1	10.25	10.25
0292	철도차량	1	10.39	10.41	0327	전력시설	1	10.32	10.32
0293	항공기	1	10.49	10.44	0328	통신시설	1	10.30	10.35
0294	모터싸이클	1	10.35	10.37	0329	기타건설	1	10.24	10.25
0295	자전거 및 기타수송장비	1	10.42	10.42	0330	도매	1	10.31	10.32
0296	목재가구	1	10.36	10.40	0331	소매	1	10.26	10.24
0297	금속가구	1	10.42	10.43	0332	음식점	1	10.25	10.24
0298	기타가구	1	10.36	10.49	0333	숙박	1	10.32	10.31
0299	장난감 및 오락용품	1	10.37	10.32	0334	철도여객운송	0	2.82	2.72
0300	운동 및 경기용품	1	10.83	10.55	0335	철도화물운송	1	10.25	10.34
0301	악기	1	10.39	10.43	0336	도로여객운송	0	3.71	4.02
0302	문방구	1	10.46	10.39	0337	도로화물운송	1	10.22	10.20
0303	귀금속 및 보석	1	10.55	10.40	0338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0	5.21	5.42
0304	모형 및 장식용품	1	10.48	10.42	0339	외항운송	0	8.08	7.89
0305	기타 제조업제품	1	10.45	10.46	0340	항공운송	1	10.38	10.35
0306	수력	1	10.21	10.25	0341	육상운수보조서비스	1	10.16	10.16
0307	화력	1	10.27	10.26	0342	수상운수보조서비스	1	10.33	10.35
0308	원자력	1	10.19	10.19	0343	항공운수보조서비스	1	10.22	10.23
0309	자가발전	1	10.21	10.21	0344	하역	1	10.34	10.32
0310	도시가스	1	10.21	10.10	0345	보관 및 창고	1	10.26	10.28
0311	열공급업	1	10.25	10.21	0346	기타 운수 관련 서비스	1	10.54	10.52
0312	수도	0	3.88	3.86	0347	우편	0	1.82	1.77
0313	철근철골조주택	1	10.28	10.25	0348	전신 · 전화	1	10.14	10.16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5	1998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5	1998
0349	부가통신	1	10.21	10.22	0376	연구기관(비영리)	0	3.07	2.63
0350	방송(비영리)	0	4.19	4.23	0377	연구기관(산업)	0	2.93	2.54
0351	방송(산업)	1	10.19	10.21	0378	기업내 연구개발	0	2.97	3.03
0352	통화금융기관	0	1.92	1.13	0379	의료 및 보건(국공립)	0	4.02	4.16
0353	비통화금융기관	0	2.16	2.85	0380	의료 및 보건(비영리)	0	4.67	5.06
0354	생명보험	0	1.87	1.68	0381	의료 및 보건(산업)	0	4.41	3.90
0355	손해보험	0	3.25	4.85	0382	사회복지사업(국공립)	0	2.47	5.19
035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0	2.65	2.18	0383	사회복지사업(비영리)	0	3.33	3.82
0357	주택소유	0	2.09	1.79	0384	위생서비스(국공립)	0	3.67	4.03
0358	부동산임대	1	10.16	10.16	0385	위생서비스(산업)	0	2.20	1.76
0359	부동산 관련 서비스	1	10.02	10.02	0386	문화서비스(국공립)	0	2.98	3.25
0360	법무 및 회계서비스	1	10.27	10.25	0387	문화서비스(기타)	0	4.20	4.03
0361	건축 및 토목공학서비스	1	10.22	10.23	0388	영화	1	10.39	10.37
0362	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1	10.30	10.29	0389	연극,음악 및 기타예술	1	10.31	10.29
0363	컴퓨터 관련 서비스	1	10.25	10.22	0390	운동 및 경기 관련 서비스	1	10.26	10.25
0364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1	10.17	10.18	0391	기타오락서비스	1	10.35	10.29
0365	광고	1	11.89	12.21	0392	산업 및 전문단체	0	4.25	4.04
0366	여론조사 및 뉴스공급	1	10.58	10.55	0393	기타사회단체	0	5.21	5.60
0367	청소 및 소독서비스	1	10.21	10.20	0394	자동차수리서비스	1	10.25	10.29
0368	농림어업서비스	1	10.26	10.31	0395	기타개인수리서비스	1	10.17	10.18
0369	기타사업서비스	1	10.26	10.25	0396	세탁	1	10.24	10.26
0370	중앙정부	0	4.45	4.65	0397	이용 및 미용	1	10.22	10.23
0371	지방정부	0	2.98	3.38	0398	가사서비스	1	10.19	10.20
0372	교육기관(국공립)	0	1.06	1.97	0399	기타 개인서비스	1	10.23	10.21
0373	교육기관(사립)	0	1.14	1.25	0400	사무용품	1	10.36	10.35
0374	교육기관(산업)	0	2.38	3.69	0401	가계외 소비지출	1	11.30	11.75
0375	연구기관(국공립)	0	2.89	1.79	0402	분류불명	1	10.90	11.19

주: 면세 여부에서 0=면세, 1=정상과세를 의미한다.

〈부표 5〉 기본부문별 유효 부가가치세율(1990년, 405개)

(단위: %)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0년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0년
0001	벼	0	1.25	0034	내수면양식	0	2.68
0002	맥류(밀제외)	0	2.64	0035	무연탄	0	3.53
0003	밀	0	3.31	0036	유연탄	1	10.00
0004	잡곡	0	3.22	0037	원유	1	10.00
0005	채소	0	1.75	0038	천연가스	1	10.00
0006	과실	0	2.19	0039	철광석	1	10.24
0007	콩류	0	1.96	0040	동광석	1	10.18
0008	감자류	0	1.29	0041	연 및 아연광석	1	10.27
0009	유지작물	0	1.25	0042	금 · 은광석	1	10.28
0010	섬유작물	1	10.12	0043	기타 비철금속광석	1	10.37
0011	기호작물	0	1.67	0044	건설용석재	1	10.18
0012	약용작물	0	1.14	0045	쇄석	1	10.21
0013	화훼작물	1	10.22	0046	모래 및 자갈	1	10.09
0014	천연고무	1	10.00	0047	석고 및 석회석	1	10.24
0015	기타작물	1	10.56	0048	요업원료광물	1	10.28
0016	종묘	1	10.24	0049	원염	0	4.01
0017	낙농	0	6.91	0050	기타비금속광물	1	10.24
0018	육우	0	8.87	0051	도축	0	7.78
0019	양돈	0	7.89	0052	가금육	0	7.94
0020	가금	0	8.78	0053	육가공품	1	13.01
0021	양봉	0	2.98	0054	우유	0	7.16
0022	기타축산	0	4.35	0055	유제품	1	13.26
0023	양잠	0	4.36	0056	아이스크림	1	12.39
0024	농업서비스	1	10.62	0057	어육 및 어묵	1	11.95
0025	영림	1	10.30	0058	수산통조림	1	11.68
0026	원목 및 용재	1	10.13	0059	수산냉동품	0	5.12
0027	식용임산물	0	0.43	0060	수산저장품	0	4.96
0028	신탄	0	0.62	0061	기타 수산식품	1	11.74
0029	기타임산물	0	1.29	0062	정미	0	1.57
0030	원양어획	0	5.46	0063	정맥	0	2.85
0031	연근해어획	0	3.50	0064	제분	0	3.69
0032	내수면어획	0	0.95	0065	원당	1	10.00
0033	해면양식	0	2.55	0066	정제당	1	10.11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0년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0년
0067	빵류	1	11.41	0102	면직물	1	10.35
0068	설탕과자	1	10.82	0103	모직물	1	10.94
0069	국수류	1	11.49	0104	마직물	1	10.36
0070	과실 및 채소가공품	1	10.84	0105	인견직물	1	10.44
0071	과실 및 채소저장품	1	10.98	0106	합성섬유직물	1	10.51
0072	동물성유지	1	12.61	0107	기타섬유직물	1	10.43
0073	식물성유지 및 식용유	1	11.15	0108	편조원단	1	10.53
0074	정제염	0	5.26	0109	섬유표백 및 염색	1	10.38
0075	발효조미료	1	10.43	0110	편직내의	1	10.35
0076	기타 조미료	1	11.08	0111	편직외의	1	10.52
0077	장류	1	11.08	0112	기타편직물	1	10.48
0078	전분	1	11.89	0113	끈, 로프 및 어망	1	10.42
0079	당류	1	11.20	0114	직물제품	1	10.59
0080	커피 및 차류	1	10.81	0115	기타섬유제품	1	10.39
0081	인삼식품	1	10.73	0116	의복 및 장신품	1	10.58
0082	누룩 및 맥아	1	11.95	0117	가죽	1	14.22
0083	두부	0	3.55	0118	가죽의복	1	12.76
0084	기타식료품	1	11.12	0119	가방 및 핸드백	1	11.12
0085	배합사료	1	11.66	0120	기타가죽제품	1	12.10
0086	주정	1	11.03	0121	가죽신발	1	12.17
0087	소주	1	10.59	0122	운동화 및 기타신발	1	11.01
0088	탁주 및 약주	1	11.22	0123	원모피(천연모피)	1	14.90
0089	맥주	1	10.29	0124	모피제품	1	12.28
0090	기타주류	1	10.31	0125	제재	1	10.25
0091	청량음료	1	10.62	0126	합판	1	10.31
0092	얼음	1	10.46	0127	강화 및 재생목재	1	10.52
0093	담배	1	10.30	0128	건축용목제품	1	10.33
0094	생사 및 견사	1	12.89	0129	목제용기	1	10.30
0095	면사	1	10.25	0130	기타 목제품	1	10.33
0096	모사	1	11.61	0131	목재가구	1	10.38
0097	마사	1	10.29	0132	펄프	1	10.27
0098	인견사	1	10.39	0133	신문용지	1	10.31
0099	합성섬유사	1	10.45	0134	인쇄용지	1	10.32
0100	연사 및 기타섬유사	1	10.65	0135	크라프트지	1	10.35
0101	견직물	1	11.55	0136	한지	1	10.68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0년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0년
0137	기타 원지 및 판지	1	10.32	0172	접착제 및 젤라틴	1	10.44
0138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1	10.36	0173	화약 및 불꽃제품	1	10.38
0139	종이용기	1	10.34	0174	기록매체 및 사진용화학제품	1	10.36
0140	문구용지	1	10.39	0175	카본블랙	1	10.24
0141	사무기계용지	1	10.36	0176	기타화학제품	1	10.41
0142	기타종이제품	1	10.37	0177	나프타	1	10.04
0143	신문	0	6.02	0178	휘발유	1	10.03
0144	출판	0	6.67	0179	등유	1	10.06
0145	인쇄	1	10.27	0180	경유	1	10.05
0146	방향족석유화학기초제품	1	10.20	0181	중유	1	10.04
0147	지방족석유화학기초제품	1	10.20	0182	액화석유가스	1	10.06
0148	방향족중간제품	1	10.27	0183	윤활기유	1	10.11
0149	지방족중간제품	1	10.31	0184	아스팔트제품	1	10.26
0150	가소제	1	10.37	0185	기타석유정제품	1	10.30
0151	석탄화합물	1	10.30	0186	연탄	0	4.58
0152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1	10.54	0187	기타석탄제품	1	10.11
0153	열경화성수지	1	10.36	0188	타이어 및 튜브	1	10.35
0154	열가소성수지	1	10.33	0189	산업용고무제품	1	10.26
0155	합성고무	1	10.32	0190	기타고무제품	1	10.27
0156	산업용가스	1	10.36	0191	플라스틱1차제품	1	10.32
0157	암모니아	1	10.18	0192	산업용플라스틱제품	1	10.33
0158	소다공업제품	1	11.07	0193	가정용플라스틱제품	1	10.33
0159	기타 기초무기화합물	1	10.44	0194	판유리 및 1차유리	1	10.38
0160	합성섬유	1	10.33	0195	산업용유리제품	1	10.30
0161	재생섬유	1	10.37	0196	유리섬유 및 동제품	1	10.26
0162	질소비료	1	10.28	0197	기타유리제품	1	10.27
0163	인산비료	1	10.32	0198	가정용도자기	1	10.26
0164	복합비료 및 기타화학비료	1	10.35	0199	산업용도기제품	1	10.25
0165	농약	1	10.56	0200	시멘트	1	10.24
0166	의약품	1	10.73	0201	레미콘	1	10.29
0167	화장품 및 치약	1	10.60	0202	콘크리트제품	1	10.32
0168	비누 및 세제	1	10.77	0203	내화요업제품	1	10.32
0169	염료, 안료 및 유연제	1	10.40	0204	건설용점토제품	1	10.26
0170	도료	1	10.37	0205	석회 및 석고제품	1	10.61
0171	잉크	1	10.38	0206	석제품	1	10.35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0년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0년
0207	석면 및 암면제품	1	10.38	0242	나사제품	1	10.33
0208	연마재	1	10.38	0243	철선제품	1	10.34
0209	기타 토석제품	1	10.36	0244	도금 및 열처리	1	10.44
0210	선철	1	10.23	0245	기타금속제품	1	10.38
0211	합금철	1	10.24	0246	보일러	1	10.28
0212	조강	1	10.27	0247	엔진 및 터빈	1	10.24
0213	열간압연강판	1	10.29	0248	펌프 및 압축기	1	10.31
0214	봉강	1	10.27	0249	산업용 운반기계	1	10.30
0215	형강	1	10.28	0250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장비	1	10.30
0216	기타 열연강재	1	10.27	0251	기타일반산업용기계 및 장치	1	10.33
0217	냉간압연강판	1	10.29	0252	밸브류	1	10.27
0218	표면처리강재	1	10.32	0253	기타일반산업용기계부품	1	10.27
0219	강관(주철강관제외)	1	10.29	0254	금속절삭가공기계	1	10.31
0220	주철물	1	10.27	0255	금속성형 및 처리기계	1	10.31
0221	주철강관	1	10.40	0256	금형 및 주형	1	10.25
0222	단조물	1	10.31	0257	농업기계	1	10.31
0223	동괴	1	10.25	0258	건설 및 광산기계	1	10.28
0224	알루미늄괴	1	10.42	0259	음식품가공기계	1	10.30
0225	아연괴	1	10.31	0260	재봉기	1	10.32
0226	금은괴	1	10.33	0261	섬유기계	1	10.36
0227	기타비철금속괴	1	10.40	0262	서비스산업기계	1	10.30
0228	동압연품	1	10.31	0263	화학기계	1	10.30
0229	알루미늄압연품	1	10.39	0264	기타산업기계	1	10.32
0230	비철금속압연품(銅,알루미늄제외)	1	10.38	0265	컴퓨터	1	10.39
0231	기타비철금속1차제품	1	10.44	0266	컴퓨터주변기기	1	10.35
0232	건축용금속제품	1	10.32	0267	사무용기계	1	10.37
0233	금속구조물	1	10.28	0268	발전기및전동기	1	10.27
0234	기타금속구조물	1	10.33	0269	변압기	1	10.28
0235	금속제콘테이너	1	10.35	0270	기타 전기변환장치	1	10.41
0236	금속포장용기	1	10.30	0271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1	10.38
0237	금속압단 및 압형제품	1	10.34	0272	전선 및 케이블	1	10.29
0238	금속가구	1	10.36	0273	전지	1	10.32
0239	가정용금속제품	1	10.32	0274	전구 및 조명장치	1	10.30
0240	도구류	1	10.31	0275	기타 전기장비	1	10.34
0241	부착용금속제품	1	10.34	0276	냉장고	1	10.32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0년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0년
0277	세탁기	1	10.36	0312	장난감 및 오락용품	1	10.42
0278	선풍기	1	10.37	0313	운동 및 경기용품	1	11.10
0279	가정용 전열기기	1	10.36	0314	악기	1	10.35
0280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1	10.39	0315	문방구류	1	10.45
0281	TV	1	10.33	0316	귀금속 및 보석류	1	10.37
0282	VTR	1	10.28	0317	기타 제조업제품	1	10.54
0283	음향기기	1	10.31	0318	수력	1	10.16
0284	유선통신기기	1	10.38	0319	화력	1	10.26
0285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1	10.32	0320	원자력	1	10.13
0286	전자관	1	10.32	0321	자가발전	1	10.15
0287	개별소자	1	10.33	0322	도시가스	1	10.24
0288	집적회로(IC)	1	10.30	0323	열공급업	1	10.19
0289	기타반도체	1	10.29	0324	수도	0	4.41
0290	저항기 및 콘덴서	1	10.33	0325	철근철골조 주택	1	10.28
0291	전자코일 및 변성기	1	10.30	0326	기타주택	1	10.29
0292	음향부품	1	10.31	0327	철근철골조 비주택	1	10.28
0293	기타전자부품	1	10.29	0328	기타비주택	1	10.35
0294	의료기기	1	10.38	0329	건축보수	1	10.26
0295	계측 및 시험분석기기	1	10.34	0330	하천사방	0	5.26
0296	광학기기	1	10.41	0331	도로	0	5.04
0297	시계	1	10.44	0332	상하수도	0	5.38
0298	승용차	1	10.26	0333	농림수산토목	0	4.46
0299	버스	1	10.31	0334	도시토목	0	4.53
0300	트럭 및 기타자동차	1	10.28	0335	항만시설	0	4.55
0301	자동차엔진	1	10.25	0336	공항시설	0	6.81
0302	자동차부분품	1	10.31	0337	전력시설	1	10.28
0303	강철제선박	1	10.38	0338	철도시설	0	6.42
0304	기타선박	1	10.46	0339	통신시설	1	10.30
0305	선박수리 및 부분품	1	10.48	0340	군납건설	0	6.47
0306	철도차량	1	10.32	0341	기타건설	1	10.26
0307	철도차량부분품	1	10.41	0342	도매	1	10.26
0308	항공기	1	10.39	0343	소매	1	10.26
0309	모터사이클	1	10.33	0344	음식점	1	10.23
0310	자전차	1	10.36	0345	숙박	1	10.34
0311	기타운수장비	1	10.29	0346	철도여객운송	0	3.57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0년	부문 번호	내용	면세 여부	1990년
0347	철도화물운송	1	10.16	0377	공공행정(지방)	0	2.77
0348	도로여객운송	0	3.81	0378	교육기관(국공립)	0	0.99
0349	도로화물운송	1	10.22	0379	교육기관(사립)	0	0.79
0350	연안및내륙수상운송	0	5.27	0380	교육기관(산업)	0	2.53
0351	외항운송	0	7.53	0381	연구기관(국공립)	0	3.36
0352	항공운송	1	10.29	0382	연구기관(비영리)	0	2.62
0353	철도 및 도로운수보조서비스	1	10.20	0383	의료 및 보건(국공립)	0	4.84
0354	수상운수보조서비스	1	10.53	0384	의료 및 보건(비영리)	0	5.14
0355	항공운수보조서비스	1	10.15	0385	의료 및 보건(산업)	0	4.45
0356	하역	1	10.32	0386	사회복지사업(국공립)	0	3.00
0357	보관 및 창고	1	10.25	0387	사회복지사업(비영리)	0	3.88
0358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1	10.54	0388	위생서비스(국공립)	0	5.07
0359	우편	0	2.12	0389	위생서비스(산업)	0	2.70
0360	전기통신	1	10.09	0390	산업 및 전문단체	0	4.37
0361	통화금융	0	2.07	0391	기타사회단체(비영리)	0	6.34
0362	비통화금융	0	2.98	0392	방송(비영리)	0	5.24
0363	생명보험	0	2.42	0393	방송(산업)	1	10.18
0364	손해보험	0	3.18	0394	문화서비스(국공립)	0	4.55
03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0	2.54	0395	영화	1	10.61
0366	주택소유	0	2.18	0396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1	10.60
0367	부동산임대	1	10.16	0397	운동및경기관련서비스	1	10.26
0368	부동산 관련 서비스	1	10.02	0398	기타문화오락서비스	1	10.29
0369	법무 및 회계서비스	1	10.32	0399	세탁 및 염색	1	10.31
0370	건축 및 공학 관련 서비스	1	10.32	0400	이발 및 미용	1	10.18
0371	컴퓨터관련서비스	1	10.19	0401	기타개인서비스 및 가사서비스	1	10.23
0372	기계 및 장비임대	1	10.17	0402	개인수리서비스	1	10.18
0373	광고	1	12.61	0403	사무용품	1	10.38
0374	여론조사,경영상담 및 뉴스공급	1	10.57	0404	가계외 소비지출	1	11.37
0375	기타 사업서비스	1	10.31	0405	분류불명	1	12.66
0376	공공행정 및 국방(중앙)	0	5.02				

주: 면세 여부에서 0=면세, 1=정상과세를 의미한다.

2.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별 유효 부가가치세율

〈부표 6〉 소비지출 항목별 유효 부가가치세율 추이

(단위: %)

항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소비지출							
01.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곡물							
멥쌀	0.016	0.013	0.017	0.021	0.029	0.029	0.031
찹쌀	0.016	0.013	0.017	0.021	0.029	0.029	0.031
맥류	0.029	0.030	0.031	0.017	0.029	0.029	0.031
두류	0.020	0.017	0.024	0.017	0.010	0.012	0.013
기타곡물	0.029	0.030	0.031	0.017	0.023	0.025	0.031
곡물가공품							
밀가루	0.037	0.041	0.041	0.042	0.038	0.035	0.038
국수류	0.115	0.115	0.116	0.112	0.113	0.114	0.116
라면류	0.115	0.115	0.116	0.112	0.113	0.114	0.116
당면	0.115	0.115	0.116	0.112	0.113	0.114	0.116
두부	0.036	0.032	0.033	0.037	0.010	0.012	0.013
기타 곡물가공품	0.111	0.112	0.112	0.114	0.115	0.116	0.118
빵 및 떡류							
케이크	0.111	0.110	0.110	0.109	0.113	0.114	0.115
식빵	0.114	0.114	0.114	0.111	0.113	0.114	0.115
기타 빵류	0.111	0.110	0.110	0.109	0.113	0.114	0.115
떡	0.114	0.114	0.114	0.111	0.113	0.114	0.115
육 류							
쇠고기	0.130	0.125	0.126	0.124	0.130	0.128	0.129
돼지고기	0.130	0.125	0.126	0.124	0.130	0.128	0.129
닭고기	0.130	0.125	0.126	0.124	0.130	0.128	0.129
기타 생육	0.043	0.040	0.039	0.036	0.066	0.071	0.071
육류가공품							
소시지	0.130	0.125	0.126	0.124	0.130	0.128	0.129
햄 및 베이컨	0.130	0.125	0.126	0.124	0.130	0.128	0.129
기타 육류가공품	0.130	0.125	0.126	0.124	0.130	0.128	0.129
신선수산동물							
갈치	0.035	0.041	0.050	0.058	0.052	0.052	0.055
명태	0.035	0.041	0.050	0.058	0.052	0.052	0.055

항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조기	0.035	0.041	0.050	0.058	0.052	0.052	0.055
고등어	0.035	0.041	0.050	0.058	0.052	0.052	0.055
꽁치	0.035	0.041	0.050	0.058	0.052	0.052	0.055
오징어	0.035	0.041	0.050	0.058	0.052	0.052	0.055
가자미	0.035	0.041	0.050	0.058	0.052	0.052	0.055
게	0.035	0.041	0.050	0.058	0.052	0.052	0.055
굴	0.026	0.033	0.050	0.045	0.052	0.053	0.055
조개류	0.030	0.037	0.050	0.052	0.052	0.053	0.055
기타 수산동물	0.030	0.037	0.050	0.052	0.052	0.053	0.055
염건수산동물							
북어	0.050	0.043	0.070	0.064	0.069	0.068	0.070
굴비	0.050	0.043	0.070	0.064	0.069	0.068	0.070
마른멸치	0.050	0.043	0.070	0.064	0.069	0.068	0.070
마른오징어	0.050	0.043	0.070	0.064	0.069	0.068	0.070
간고등어	0.050	0.043	0.070	0.064	0.069	0.068	0.070
기타 염건수산동물	0.050	0.043	0.070	0.064	0.069	0.068	0.070
기타수산동물가공							
어묵	0.119	0.118	0.123	0.117	0.126	0.127	0.128
맛살	0.119	0.118	0.123	0.117	0.126	0.127	0.128
수산동물통조림	0.117	0.118	0.124	0.122	0.126	0.127	0.128
젓갈	0.117	0.121	0.099	0.094	0.126	0.127	0.128
기타 수산동물가공품	0.117	0.121	0.128	0.124	0.126	0.127	0.128
유제품 및 알							
우유	0.072	0.057	0.069	0.058	0.060	0.065	0.066
분유	0.133	0.119	0.126	0.118	0.060	0.065	0.066
치즈	0.133	0.119	0.126	0.118	0.115	0.117	0.120
요구르트	0.133	0.119	0.126	0.118	0.115	0.117	0.120
두유	0.106	0.105	0.108	0.107	0.108	0.109	0.110
기타 우유가공품	0.133	0.119	0.126	0.118	0.115	0.117	0.120
알 및 알가공품	0.090	0.098	0.074	0.077	0.088	0.094	0.097
유지류							
참기름	0.112	0.110	0.113	0.110	0.116	0.116	0.117
들기름	0.112	0.110	0.113	0.110	0.116	0.116	0.117
기타 식물성식용유	0.112	0.110	0.113	0.110	0.116	0.116	0.117
버터	0.126	0.138	0.138	0.137	0.116	0.116	0.117
기타 유지류	0.111	0.112	0.112	0.114	0.116	0.116	0.117

항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과일 및 과일가공품							
사과	0.022	0.020	0.032	0.041	0.030	0.026	0.031
배	0.022	0.020	0.032	0.041	0.030	0.026	0.031
복숭아	0.022	0.020	0.032	0.041	0.030	0.026	0.031
포도	0.022	0.020	0.032	0.041	0.030	0.026	0.031
밤	0.022	0.020	0.032	0.041	0.030	0.026	0.031
감	0.022	0.020	0.032	0.041	0.030	0.026	0.031
감귤류	0.022	0.020	0.032	0.041	0.030	0.026	0.031
참외	0.022	0.020	0.032	0.041	0.030	0.026	0.031
수박	0.022	0.020	0.032	0.041	0.030	0.026	0.031
딸기	0.022	0.020	0.032	0.041	0.030	0.026	0.031
바나나	0.022	0.020	0.032	0.041	0.030	0.026	0.031
기타 과일	0.022	0.020	0.032	0.041	0.030	0.026	0.031
과일가공품	0.108	0.110	0.114	0.114	0.116	0.116	0.119
채소 및 채소가공품							
배추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상추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시금치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양배추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미나리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깻잎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부추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무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당근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감자	0.013	0.011	0.013	0.022	0.017	0.023	0.026
고구마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도라지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콩나물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버섯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오이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풋고추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호박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가지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토마토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파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양파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항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마늘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기타 채소	0.062	0.020	0.018	0.023	0.024	0.024	0.029
채소가공품	0.108	0.110	0.114	0.114	0.116	0.116	0.119
해조 및 해조가공품							
김	0.026	0.033	0.050	0.045	0.051	0.054	0.056
미역	0.026	0.033	0.050	0.045	0.051	0.054	0.056
기타 해조류	0.026	0.033	0.050	0.045	0.051	0.054	0.056
당류 및 과자류							
설탕	0.101	0.102	0.102	0.102	0.101	0.101	0.101
잼,꿀,조청	0.112	0.110	0.112	0.109	0.114	0.116	0.120
초콜릿	0.108	0.106	0.107	0.106	0.113	0.114	0.115
사탕 및 젤리	0.108	0.106	0.107	0.106	0.113	0.114	0.115
한식과자	0.108	0.106	0.107	0.106	0.113	0.114	0.115
껌	0.108	0.106	0.107	0.106	0.113	0.114	0.115
아이스크림	0.124	0.111	0.117	0.107	0.115	0.117	0.120
기타과자	0.114	0.114	0.114	0.111	0.113	0.114	0.115
조미식품							
말린고추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참깨 및 들깨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생강	0.018	0.018	0.023	0.030	0.033	0.030	0.034
소금	0.053	0.034	0.050	0.045	0.079	0.080	0.081
간장	0.111	0.109	0.110	0.109	0.114	0.114	0.116
된장	0.111	0.109	0.110	0.109	0.114	0.114	0.116
고추장	0.111	0.109	0.110	0.109	0.114	0.114	0.116
카레	0.111	0.111	0.112	0.112	0.114	0.114	0.116
식초	0.104	0.105	0.104	0.105	0.114	0.114	0.116
케첩	0.111	0.111	0.112	0.112	0.114	0.114	0.116
드레싱	0.111	0.111	0.112	0.112	0.114	0.114	0.116
혼합조미료	0.108	0.108	0.108	0.108	0.114	0.114	0.116
기타 조미식품	0.111	0.111	0.112	0.112	0.114	0.114	0.116
기타 식품							
죽 및 스프	0.111	0.112	0.112	0.114	0.115	0.116	0.118
이유식	0.111	0.112	0.112	0.114	0.115	0.116	0.118
김치	0.108	0.110	0.114	0.114	0.116	0.116	0.119
반찬류	0.111	0.112	0.112	0.114	0.115	0.116	0.118
즉석 · 동결식품	0.111	0.112	0.112	0.114	0.115	0.116	0.118

항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기타 미분류식품	0.111	0.112	0.112	0.114	0.115	0.116	0.118
커피 및 차							
커피	0.108	0.110	0.108	0.108	0.109	0.111	0.113
차	0.108	0.110	0.108	0.108	0.109	0.111	0.113
쥬스 및 기타음료							
과일 및 야채쥬스	0.106	0.105	0.108	0.107	0.108	0.109	0.110
생수	0.105	0.103	0.103	0.103	0.108	0.109	0.110
기능성음료	0.106	0.105	0.108	0.107	0.108	0.109	0.110
기타음료	0.106	0.105	0.108	0.107	0.108	0.109	0.110
02.주류 및 담배							
주류							
소주	0.106	0.105	0.104	0.103	0.104	0.109	0.109
과일주	0.103	0.104	0.105	0.105	0.105	0.107	0.107
맥주	0.103	0.103	0.103	0.103	0.103	0.109	0.109
탁주	0.103	0.104	0.105	0.105	0.105	0.107	0.107
증류주	0.103	0.104	0.105	0.105	0.105	0.107	0.107
기타 주류	0.103	0.104	0.105	0.105	0.105	0.107	0.107
담배							
담배	0.103	0.104	0.104	0.102	0.102	0.107	0.107
03.의류 및 신발							
직물 및 외의							
직물	0.107	0.106	0.105	0.104	0.105	0.106	0.106
남성용외의	0.115	0.113	0.114	0.110	0.110	0.111	0.111
여성용외의	0.115	0.113	0.114	0.110	0.110	0.111	0.111
남학생교복	0.105	0.105	0.105	0.104	0.104	0.105	0.105
여학생교복	0.105	0.105	0.105	0.104	0.104	0.105	0.105
와이셔츠	0.106	0.105	0.105	0.104	0.104	0.105	0.105
남방셔츠	0.106	0.105	0.105	0.104	0.104	0.105	0.105
블라우스	0.106	0.105	0.105	0.104	0.104	0.105	0.105
티셔츠	0.106	0.105	0.105	0.104	0.104	0.105	0.105
스웨터 및 조끼	0.105	0.105	0.104	0.105	0.104	0.105	0.105
운동복	0.106	0.105	0.105	0.104	0.104	0.105	0.105
아동용외의	0.112	0.111	0.114	0.110	0.110	0.111	0.111
기타 외의	0.112	0.111	0.114	0.110	0.110	0.111	0.111
내의							
남자내의 및 잠옷	0.105	0.105	0.105	0.104	0.104	0.105	0.105

항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여자내의 및 잠옷	0.105	0.105	0.105	0.104	0.104	0.105	0.105
아동용내의	0.105	0.105	0.105	0.104	0.104	0.105	0.105
기타의복							
양말 및 스타킹	0.106	0.104	0.104	0.103	0.105	0.106	0.106
모자	0.106	0.104	0.104	0.103	0.105	0.106	0.106
넥타이	0.106	0.104	0.104	0.103	0.105	0.106	0.106
실류	0.109	0.109	0.108	0.106	0.106	0.107	0.107
기타 의복관련품	0.106	0.104	0.104	0.103	0.105	0.106	0.106
의복관련서비스							
의복수선료	0.102	0.102	0.103	0.103	0.105	0.106	0.106
의복세탁료	0.103	0.102	0.103	0.103	0.103	0.104	0.104
기타 의복 관련 서비스	0.102	0.102	0.103	0.103	0.105	0.106	0.106
신발							
아동화	0.110	0.108	0.107	0.107	0.110	0.110	0.110
구두	0.122	0.115	0.112	0.111	0.110	0.110	0.110
운동화	0.110	0.108	0.107	0.107	0.110	0.110	0.110
기타신발	0.110	0.108	0.107	0.107	0.110	0.110	0.110
신발서비스							
신발 관련 서비스	0.102	0.102	0.103	0.103	0.105	0.106	0.106
04.주거 및 수도광열							
실제주거비							
월세	0.022	0.021	0.013	0.012	0.009	0.010	0.010
기타주거비	0.022	0.021	0.013	0.012	0.009	0.010	0.010
주택유지 및 수선							
벽지	0.104	0.104	0.104	0.104	0.106	0.106	0.106
바닥재	0.104	0.103	0.103	0.103	0.106	0.106	0.106
기타 주택유지 및 수선재	0.104	0.103	0.103	0.103	0.105	0.105	0.106
설비 · 수리서비스	0.102	0.102	0.103	0.103	0.105	0.106	0.106
세놓는 주택수선	0.102	0.102	0.103	0.103	0.105	0.106	0.106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상하수도료	0.050	0.047	0.043	0.039	0.050	0.052	0.050
쓰레기처리	0.039	0.029	0.033	0.034	0.041	0.046	0.038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공동주택관리비	0.027	0.062	0.064	0.066	0.057	0.057	0.057
기타 주거서비스	0.100	0.100	0.100	0.100	0.101	0.103	0.103
연료비							

항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전기료	0.102	0.102	0.102	0.102	0.104	0.105	0.105
도시가스	0.102	0.102	0.101	0.101	0.106	0.107	0.106
ＬＰＧ연료	0.101	0.101	0.101	0.101	0.106	0.108	0.108
등유	0.101	0.101	0.101	0.101	0.106	0.108	0.108
경유연료	0.101	0.101	0.101	0.101	0.105	0.107	0.107
연탄	0.046	0.071	0.051	0.085	0.087	0.046	0.052
공동주택난방비	0.102	0.102	0.102	0.101	0.104	0.104	0.104
기타 연료비	0.102	0.102	0.105	0.104	0.104	0.105	0.105
05.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가구 및 조명							
장롱	0.104	0.104	0.104	0.103	0.105	0.105	0.105
화장대	0.104	0.104	0.104	0.103	0.105	0.105	0.105
침대	0.104	0.104	0.104	0.103	0.105	0.105	0.105
장식장	0.104	0.104	0.104	0.103	0.105	0.105	0.105
소파	0.104	0.104	0.104	0.104	0.106	0.107	0.107
책상	0.104	0.104	0.104	0.104	0.106	0.107	0.107
의자	0.104	0.104	0.104	0.104	0.106	0.107	0.107
식탁 및 식탁의자	0.104	0.104	0.104	0.103	0.105	0.105	0.105
밥상	0.104	0.104	0.104	0.103	0.105	0.105	0.105
조명기구	0.103	0.104	0.104	0.103	0.105	0.105	0.106
기타가구	0.104	0.104	0.104	0.104	0.106	0.107	0.107
중고가구	0.104	0.104	0.104	0.104	0.106	0.107	0.107
실내장식							
카페트	0.106	0.104	0.104	0.103	0.106	0.106	0.106
기타실내장식품	0.103	0.104	0.104	0.104	0.105	0.106	0.106
가구 · 조명 및 장식서비스							
실내장식 관련 서비스	0.102	0.102	0.103	0.103	0.105	0.106	0.106
가정용섬유							
침구류	0.105	0.104	0.103	0.103	0.105	0.106	0.106
수건	0.105	0.104	0.103	0.103	0.105	0.106	0.106
커튼	0.105	0.104	0.103	0.103	0.105	0.106	0.106
기타 가정용섬유	0.105	0.104	0.103	0.103	0.105	0.106	0.106
가정용 섬유 관련 서비스	0.102	0.102	0.103	0.103	0.105	0.106	0.106
가전 및 가정용기기							
전기밥솥	0.104	0.104	0.104	0.104	0.107	0.107	0.107
가스 · 전자레인지	0.104	0.104	0.104	0.104	0.107	0.107	0.107

항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일반냉장고	0.103	0.104	0.104	0.104	0.106	0.107	0.107
김치냉장고	0.103	0.104	0.104	0.104	0.106	0.107	0.107
정수기	0.103	0.104	0.104	0.104	0.107	0.108	0.108
에어컨 및 선풍기	0.104	0.104	0.104	0.104	0.107	0.108	0.108
난로 및 온풍기	0.104	0.104	0.104	0.104	0.107	0.107	0.107
공기청정기 및 가습기	0.104	0.103	0.103	0.103	0.107	0.108	0.108
세탁기	0.104	0.104	0.104	0.104	0.107	0.108	0.108
식기세척기	0.104	0.104	0.104	0.104	0.107	0.108	0.108
진공청소기	0.104	0.104	0.104	0.104	0.107	0.108	0.108
전기다리미	0.104	0.104	0.104	0.104	0.107	0.108	0.108
기타 가정용기기 및 가전	0.104	0.104	0.104	0.104	0.107	0.108	0.108
중고가전 및 가정용기기	0.104	0.104	0.104	0.104	0.107	0.108	0.108
가전 관련 서비스							
가정용기기 및 가전서비스	0.102	0.102	0.103	0.103	0.104	0.105	0.105
가사용품							
식기류	0.103	0.103	0.104	0.104	0.108	0.109	0.109
컵 및 다기	0.103	0.103	0.105	0.105	0.106	0.106	0.106
솥	0.103	0.103	0.103	0.103	0.108	0.109	0.109
후라이팬	0.103	0.103	0.103	0.103	0.108	0.109	0.109
냄비	0.103	0.103	0.103	0.103	0.108	0.109	0.109
칼 및 수저류	0.103	0.103	0.103	0.103	0.108	0.109	0.109
기타 주방용품	0.103	0.103	0.103	0.103	0.107	0.107	0.107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정용 전동공구	0.103	0.104	0.104	0.103	0.108	0.109	0.109
설비 관련 기구	0.103	0.104	0.104	0.103	0.108	0.109	0.109
건전지	0.103	0.104	0.105	0.104	0.105	0.105	0.105
기타 소형공구 및 가사용품	0.103	0.104	0.104	0.103	0.108	0.109	0.109
가사소모품							
세탁용세제	0.108	0.107	0.108	0.106	0.106	0.107	0.107
세탁 · 청소용구	0.103	0.103	0.103	0.103	0.106	0.106	0.106
전구	0.103	0.104	0.104	0.103	0.105	0.105	0.106
주방 및 청소용세제	0.108	0.107	0.108	0.106	0.106	0.107	0.107
살충약품 및 용품	0.104	0.104	0.104	0.104	0.106	0.107	0.107
기타 가사소모품	0.103	0.103	0.103	0.103	0.106	0.106	0.106
가사서비스							
식품 관련 서비스	0.102	0.102	0.102	0.103	0.100	0.100	0.100

항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가사사용인급료	0.102	0.102	0.102	0.103	0.100	0.100	0.100
기타 가사서비스	0.102	0.102	0.102	0.103	0.100	0.100	0.100
06.보건							
의약품							
조제양약	0.045	0.044	0.054	0.042	0.052	0.053	0.053
판매양약	0.107	0.106	0.108	0.108	0.105	0.106	0.106
한약 및 한약재	0.107	0.106	0.108	0.108	0.105	0.106	0.106
인삼	0.107	0.105	0.108	0.108	0.109	0.110	0.111
영양보조제	0.111	0.112	0.112	0.114	0.109	0.110	0.111
기타 의약품							
보건의료소모품	0.107	0.106	0.081	0.075	0.105	0.106	0.106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안경 및 콘택트	0.104	0.105	0.105	0.105	0.104	0.105	0.105
기타 보건의료기구	0.104	0.106	0.105	0.104	0.105	0.105	0.105
외래의료서비스							
일반병의원외래비	0.050	0.043	0.041	0.045	0.051	0.049	0.049
한방병원외래비	0.050	0.043	0.041	0.045	0.051	0.049	0.049
치과서비스							
치과외래비	0.050	0.043	0.041	0.045	0.051	0.049	0.049
기타 의료서비스							
기타 보건의료서비스	0.050	0.043	0.041	0.045	0.051	0.049	0.049
입원서비스							
병원입원치료비	0.050	0.043	0.041	0.045	0.051	0.049	0.049
07.교통							
자동차구입							
신차구입	0.103	0.103	0.104	0.104	0.105	0.106	0.106
중고차구입	0.103	0.103	0.104	0.104	0.105	0.106	0.106
기타운송기구구입							
오토바이	0.103	0.104	0.104	0.103	0.106	0.107	0.108
자전거등	0.104	0.104	0.104	0.104	0.106	0.107	0.107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부품 및 관련용품	0.103	0.103	0.103	0.103	0.107	0.107	0.108
유지 및 수리비	0.102	0.103	0.103	0.103	0.105	0.106	0.106
운송기구연료비							
휘발유	0.100	0.100	0.100	0.101	0.104	0.108	0.108
경유	0.101	0.101	0.101	0.101	0.105	0.107	0.107

항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LPG	0.101	0.101	0.101	0.101	0.106	0.108	0.108
기타 연료	0.103	0.103	0.102	0.102	0.107	0.108	0.108
기타 개인교통서비스							
운전교습비	0.025	0.024	0.033	0.027	0.033	0.034	0.037
주차료	0.102	0.102	0.102	0.101	0.104	0.104	0.105
통행료	0.038	0.037	0.041	0.039	0.052	0.054	0.054
기타 개인교통	0.103	0.104	0.104	0.103	0.106	0.107	0.107
철도운송							
기차	0.036	0.028	0.040	0.038	0.043	0.041	0.040
지하철	0.036	0.028	0.040	0.038	0.043	0.041	0.040
육상운송							
시내버스	0.038	0.037	0.041	0.039	0.052	0.054	0.054
시외버스	0.038	0.037	0.041	0.039	0.052	0.054	0.054
택시	0.105	0.105	0.104	0.105	0.107	0.107	0.107
기타운송							
항공요금	0.103	0.104	0.104	0.104	0.106	0.107	0.107
교통카드이용	0.038	0.037	0.041	0.039	0.052	0.054	0.054
기타 여객서비스	0.105	0.105	0.104	0.105	0.107	0.107	0.107
기타 교통관련서비스							
화물운송 및 보관	0.102	0.102	0.103	0.107	0.104	0.104	0.105
08.통신							
우편서비스							
우편서비스	0.021	0.018	0.015	0.036	0.020	0.019	0.024
통신장비							
일반전화기기	0.102	0.103	0.103	0.104	0.105	0.105	0.105
이동전화기기 등	0.103	0.105	0.103	0.106	0.104	0.104	0.104
통신서비스							
일반전화요금	0.101	0.101	0.102	0.104	0.105	0.106	0.106
이동전화요금	0.101	0.101	0.102	0.104	0.104	0.105	0.105
인터넷 이용료	0.101	0.102	0.104	0.104	0.104	0.105	0.105
기타 통신 관련 비용	0.101	0.102	0.103	0.106	0.105	0.106	0.106
09.오락 · 문화							
영상음향기기							
텔레비전	0.103	0.105	0.105	0.105	0.105	0.105	0.105
기타 영상음향기기	0.103	0.106	0.105	0.105	0.105	0.105	0.105
사진광학장비							

항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사진 및 광학장비	0.104	0.106	0.105	0.105	0.104	0.105	0.105
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기기	0.104	0.105	0.104	0.104	0.104	0.105	0.104
기록매체							
기록용매체	0.104	0.104	0.104	0.104	0.105	0.105	0.105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영상 및 정보처리서비스	0.102	0.102	0.103	0.103	0.105	0.106	0.106
오락문화내구재							
오락 및 운동내구재	0.111	0.108	0.106	0.105	0.105	0.106	0.106
악기기구							
악기	0.104	0.104	0.104	0.104	0.105	0.105	0.105
오락문화내구재유지 및 수리							
오락문화내구재서비스	0.102	0.103	0.103	0.103	0.106	0.107	0.107
장난감 및 취미용품							
장난감	0.104	0.104	0.103	0.104	0.105	0.105	0.105
게임 및 취미용품	0.104	0.104	0.103	0.104	0.105	0.105	0.105
캠핑 및 운동 관련 용품							
등산낚시사냥용품	0.111	0.108	0.106	0.105	0.105	0.106	0.106
운동용품	0.111	0.108	0.106	0.105	0.105	0.106	0.106
캠핑 및 운동용품서비스	0.102	0.103	0.103	0.103	0.106	0.108	0.108
화훼관련용품							
원예용품	0.103	0.104	0.104	0.103	0.107	0.108	0.108
애완동물 관련 물품							
애완동물관련품	0.117	0.114	0.116	0.112	0.115	0.115	0.118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애완동식물관련서비스	0.102	0.102	0.103	0.103	0.105	0.106	0.106
운동 및 오락서비스							
운동시설이용	0.103	0.103	0.103	0.103	0.104	0.105	0.105
노래방이용	0.103	0.104	0.104	0.103	0.108	0.109	0.110
ＰＣ방이용	0.103	0.104	0.104	0.103	0.108	0.109	0.110
기타 오락시설이용	0.103	0.104	0.104	0.103	0.108	0.109	0.110
운동경기관람	0.103	0.103	0.103	0.103	0.104	0.105	0.105
오락용품대여	0.103	0.104	0.104	0.103	0.108	0.109	0.110
문화서비스							
공연및극장	0.106	0.103	0.103	0.103	0.103	0.103	0.104
관람시설이용	0.045	0.030	0.038	0.031	0.048	0.046	0.046

항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독서실이용	0.025	0.024	0.033	0.027	0.033	0.034	0.037
문화강습	0.008	0.042	0.052	0.042	0.031	0.105	0.035
컨텐츠	0.045	0.042	0.052	0.042	0.031	0.105	0.035
방송수신료	0.077	0.072	0.077	0.078	0.075	0.075	0.076
기타 문화서비스	0.074	0.036	0.045	0.036	0.039	0.076	0.041
복권							
복권구입	0.045	0.030	0.038	0.031	0.048	0.046	0.046
서적							
유아용학습교재	0.067	0.064	0.075	0.069	0.069	0.070	0.070
초등학생학습교재	0.067	0.064	0.075	0.069	0.069	0.070	0.070
중고생교재	0.067	0.064	0.075	0.069	0.069	0.070	0.070
중고생참고서	0.067	0.064	0.075	0.069	0.069	0.070	0.070
기타서적	0.067	0.064	0.075	0.069	0.069	0.070	0.070
기타 인쇄물							
신문	0.060	0.057	0.075	0.072	0.074	0.073	0.074
잡지	0.067	0.064	0.075	0.069	0.069	0.070	0.070
기타인쇄물	0.067	0.064	0.075	0.069	0.069	0.070	0.070
문구							
종이문구류	0.104	0.104	0.104	0.103	0.105	0.105	0.105
필기 및 미술용품	0.105	0.105	0.104	0.103	0.105	0.105	0.105
기타문구류	0.105	0.105	0.104	0.103	0.105	0.105	0.105
단체여행비							
국내단체여행비	0.067	0.065	0.069	0.068	0.074	0.075	0.076
국외여행비	0.051	0.052	0.052	0.052	0.053	0.053	0.054
10.교육							
정규교육							
초등교육							
유치원	0.009	0.011	0.013	0.015	0.025	0.026	0.026
초등학교	0.014	0.015	0.020	0.019	0.028	0.029	0.030
중등교육							
중학교	0.014	0.015	0.020	0.019	0.028	0.029	0.030
고등학교	0.014	0.015	0.020	0.019	0.028	0.029	0.030
고등교육							
전문대학	0.014	0.015	0.020	0.019	0.028	0.029	0.030
국공립대학	0.010	0.011	0.014	0.016	0.027	0.027	0.029
사립대학	0.017	0.018	0.023	0.021	0.028	0.030	0.030

항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대학원	0.014	0.015	0.020	0.019	0.028	0.029	0.030
학원 및 보습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성인미포함)							
입시 및 보습	0.025	0.024	0.033	0.027	0.033	0.034	0.037
음악학원	0.025	0.024	0.033	0.027	0.033	0.034	0.037
미술학원	0.025	0.024	0.033	0.027	0.033	0.034	0.037
운동학원	0.025	0.024	0.033	0.027	0.033	0.034	0.037
직업준비학원	0.025	0.024	0.033	0.027	0.033	0.034	0.037
방문학습지	0.025	0.024	0.033	0.027	0.033	0.034	0.037
체험교육	0.025	0.024	0.033	0.027	0.033	0.034	0.037
기타 학원교육비	0.025	0.024	0.033	0.027	0.033	0.034	0.037
개인과외비	0.025	0.024	0.033	0.027	0.033	0.034	0.037
성인학원교육							
성인직업학원	0.025	0.024	0.033	0.027	0.033	0.034	0.037
외국어학원	0.025	0.024	0.033	0.027	0.033	0.034	0.037
운동 및 교양교육	0.025	0.024	0.033	0.027	0.033	0.034	0.037
기타 교육							
학교보충교육비	0.014	0.015	0.020	0.019	0.028	0.029	0.030
평생교육원	0.017	0.018	0.023	0.021	0.028	0.030	0.030
국내교육연수	0.014	0.015	0.020	0.019	0.028	0.029	0.030
국외연수비	0.014	0.015	0.020	0.019	0.028	0.029	0.030
11.음식 · 숙박							
식사비							
일반식당	0.102	0.102	0.113	0.116	0.117	0.119	0.119
배달음식	0.102	0.102	0.113	0.116	0.117	0.119	0.119
이동식음식점	0.102	0.102	0.113	0.116	0.117	0.119	0.119
단체제공식	0.102	0.102	0.113	0.116	0.117	0.119	0.119
패스트푸드	0.102	0.102	0.113	0.116	0.117	0.119	0.119
주점 · 커피숍	0.102	0.102	0.113	0.110	0.112	0.115	0.115
숙박비							
호텔,여관,콘도	0.103	0.103	0.103	0.103	0.103	0.104	0.104
기타 숙박시설	0.103	0.103	0.103	0.103	0.103	0.104	0.104
12.기타 상품 및 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목욕료	0.102	0.102	0.103	0.103	0.104	0.105	0.105
이미용료	0.102	0.102	0.103	0.103	0.104	0.105	0.105

항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기타이미용서비스	0.102	0.102	0.103	0.103	0.105	0.105	0.105
이미용기기							
이미용기기	0.104	0.104	0.104	0.104	0.107	0.108	0.108
위생 및 이미용용품							
칫솔	0.103	0.103	0.103	0.103	0.106	0.106	0.106
치약	0.106	0.105	0.107	0.105	0.106	0.107	0.107
세면비누	0.108	0.107	0.108	0.106	0.106	0.107	0.107
샴푸 및 린스	0.108	0.107	0.108	0.106	0.106	0.107	0.107
화장지	0.104	0.104	0.105	0.104	0.106	0.106	0.106
화장품	0.106	0.105	0.107	0.105	0.105	0.106	0.106
기타 이미용용품	0.104	0.104	0.104	0.104	0.106	0.107	0.107
시계 및 장신구							
손목시계	0.104	0.106	0.106	0.104	0.105	0.105	0.105
장식용시계	0.104	0.106	0.106	0.104	0.105	0.105	0.105
장신구	0.104	0.106	0.104	0.103	0.105	0.106	0.105
기타 개인용품							
가방	0.111	0.109	0.108	0.107	0.107	0.108	0.108
종교용품	0.103	0.103	0.103	0.103	0.106	0.106	0.106
혼례 및 장제례용품	0.103	0.103	0.103	0.103	0.106	0.106	0.106
기타 개인용품	0.103	0.103	0.103	0.103	0.106	0.106	0.106
개인용품서비스	0.102	0.102	0.103	0.103	0.105	0.106	0.106
사회복지							
산후조리원	0.045	0.044	0.054	0.042	0.042	0.043	0.043
보육료	0.009	0.011	0.013	0.015	0.025	0.026	0.026
기타사회복지	0.034	0.029	0.039	0.027	0.046	0.048	0.049
보험							
생명보험	0.024	0.019	0.022	0.024	0.048	0.053	0.054
화재보험	0.032	0.033	0.039	0.034	0.051	0.053	0.050
연금보험	0.032	0.033	0.039	0.034	0.051	0.053	0.050
운송 관련 보험 등	0.032	0.033	0.039	0.034	0.051	0.053	0.050
기타금융							
금융수수료	0.025	0.027	0.013	0.017	0.025	0.039	0.048
기타서비스							
자가 관련 부동산수수료	0.100	0.100	0.100	0.100	0.101	0.103	0.103
기타 부동산수수료	0.100	0.100	0.100	0.100	0.101	0.103	0.103
일반수수료	0.103	0.103	0.102	0.103	0.104	0.104	0.105

항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음식료	0.102	0.102	0.103	0.103	0.105	0.106	0.106
혼례 및 장제례비	0.057	0.053	0.060	0.052	0.066	0.067	0.068
기타서비스	0.102	0.102	0.103	0.103	0.105	0.106	0.106
유흥비	0.103	0.103	0.109	0.105	0.109	0.111	0.111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분석과 정책방향

박 명 호 · 정 재 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실태와 그 변화요인을 유효 부가가치세율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Gottfried and Wiegard (1991)의 유효세율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여 세부 산업부문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를 통해 추정하고, 그 결과를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면세제도 중 비중이 큰 4가지 면세유형(미가공식료품, 교육용역, 의료 · 보건용역, 금융 · 보험용역)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후 부가가치세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능력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은 낮은 소득분위에서 높고, 높은 소득분위에서 낮은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을 소비를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세부담의 역진적인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논쟁은 경제적 능력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소득 1분위에 속한 고령가구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소득보다는 소비가 생애주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향후 특정시점에서의 경제적 능력 및 생활수준을 더욱 잘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유효 세부담 분포는 특정 연도에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석 기간에 걸쳐 관찰되었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모든 소득분위 및 소비분위에서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이 10%로 고정되어 왔고, 면세제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비중이 낮아지는 전반적인 소비구조 변화와 더불어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고령가구 비중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고령가구의 비중이 저소득 및 저소비 분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옴에 따라 저분위의 유효 세부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면세유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바 미가공식료품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는 세부담 비율뿐만 아니라 세부담 경감 규모 측면에서도 저소득 및 저소비 계층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교육용역이나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교육용역의 경우 소득분위 및 소비분위가 올라갈수록 세부담 경감액 규모는 커지면서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액 비율의 감소폭도 대체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면세제도를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정비한다면 미가공식료품이나 의료·보건용역보다는 교육용역이나 금융·보험용역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세수증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금융·보험용역보다는 교육용역의 정상 과세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Distribution of the Effective VAT Burden in Korea, 1990-2012

Myung-Ho, Park · Jaeho, Cheung

This study examines the distribution of the effective VAT burden in Korea during 1990 to 2012. In Korea, VAT is imposed at a uniform rate of 10 percent on all taxable supplies of goods or services since the VAT system has been introduced. For a variety of reasons, however,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goods or services in Korea are exempt from VAT taxation. The suppliers of such goods or services do not charge VAT on their sales, but also are not credited for VAT paid on inputs used in their production. The presence of exemptions may thus make effective rates of VAT may greatly different from the statutory rate of VAT.

First, this study estimates, by the use of an Input-Output approach suggested and applied by Gottfried and Wiegard(1991) and Marks(2003), the extent of variation in the effective VAT burden falling on different basic sectors of the Korean economy. By matching basic sectors of the Input-Output tables with consumption items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this study then analyzes households' effective VAT burden shares by income and expenditure deciles.

This paper shows that VAT may be regressive since the VAT burden paid as a percentage of household income falls most heavily on the

poorest decile. However, it also shows that, when considering deciles based on households' consumption expenditure, poorer households pay a smaller proportion of their spending in VAT than do richer households. This implies that the VAT burden is generally either proportional or progressive. This paper argues that consumption expenditure is a better proxy variable in representing households' economic abilities because incomes are volatile and spending can represent lifetime earnings. In addition, ageing households' share in the poorest income group are getting larger as the Korean population is ageing rapidly. Spending may become a better proxy variable than incomes in terms of households' economic abilities.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four types of exemptions - unprocessed foodstuffs, education services,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s, medical services. Exemptions introduced to support the poor such as exemption for unprocessed foodstuffs provide as large a tax saving to the poorest. However, exemptions introduced for social good or other purposes such as exemption for education services provide a vastly greater tax saving for the rich than the poo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removing exemptions for education,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s can increase progressivity in the VAT system and also raise substantial revenue, but that the reverse is true for exemption for unprocessed foodstuffs.

저자약력

박 명 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정 재 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김평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안승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14-05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분석과 정책방향

발 행	2014년 12월 31일
저 자	박명호 · 정재호
발 행 인	옥동석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전 화	(044)414-2114(代)
홈 페 이 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1-466호
정 가	8,000원
조판 및 인쇄	(주)정인I&D (02)3486-6791~6
I S B N	978-89-8191-735-7 9332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